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024. 8.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김사우

목 차

I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1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2. 세입 결산	2
3. 세출 결산	3
가. 총괄 내역	3
나. 이월·불용 내역	6
다. 이용·이체·전용 내역	7
라. 예비비 사용	8
4.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주요 검토내용	9
가. 총괄검토	9
□ 남북 교류협력 및 대화·협상능력 유지 필요	9
□ 시설물 등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방안 검토 필요	11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개최실적 제고 등	16
나. 일반회계	19
다. 남북협력기금	24
II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별 검토	26
1. 세 입	26
□ 제재부가금 계정신설 및 부과·징수 강화 필요	28
2. 통일정책(1000 프로그램)	33
가. 개 요	33

나. 세부사업별 검토	34
1) 통일정책추진(1031-300)	34
□ 정책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필요	35
□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운영 실적 제고 필요 등	39
2)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42
□ 통일+센터 구축 사업의 연례적 이월,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44
□ 당초 계획에 없던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의 신규 추진	49
3)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51
□ 적정 예산과목 편성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52
3. 북한정세분석(1500 프로그램)	54
가. 개 요	54
나. 세부사업별 검토	55
1)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1533-302)	55
2) 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	57
3)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1533-502)	59
4)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308)	61
5)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	62
□ 부지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면밀한 사업추진 필요	63
4. 인도적 문제해결(2100 프로그램)	67
가. 개 요	67
나. 세부사업별 검토	68
1)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2133-302)	68
2)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	69
□ 억류자에 대한 정의 등 관련자 보상을 위한 법률 보완 필요	70
3)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2133-505)	73
4)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74
□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집행 관리 필요	75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강화 필요	77

5)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	80
□ 계획에 없던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한 전용 등 부적절	81
6)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	85
□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필요	86
7)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2135-501)	88
8)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2137-301)	89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2300 프로그램)	90
가. 개 요	90
나. 세부사업별 검토	92
1)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92
□ 예산이 없던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의 전용을 통한 추진	97
2)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2331-500)	100
□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 필요	101
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2337-301)	105
□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07
4)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109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	110
1) 결산 개요	110
2) 사업별 검토	112
6.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	113
가. 개 요	113
나. 세부사업별 검토	115
1)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3031-300)	115
□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 관련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 필요	116
2)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3032-303)	119
3)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3032-506)	120
4)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3036-312)	121

7. 남북회담(4000 프로그램)	123
가. 개 요	123
나. 세부사업별 검토	124
1) 남북회담 추진(4031-300)	124
□ 남북회담문서 공개사업의 열람 방식 확대·개선 필요	125
2)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4032-302)	127
8. 통일교육(5000 프로그램)	129
가. 개 요	129
나. 세부사업별 검토	131
1)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131
□ 통일교육 AR앱의 체계적 관리와 홍보강화 필요	133
2)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136
□ 교직원 및 대학(원)생 대상 통일논문 등 공모사업 활성화 노력 필요	137
3)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5031-309)	140
4)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5033-308)	143
9. 통일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144
가. 개 요	144
나. 세부사업별 검토	145
1)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00)	145
□ 계획에 없던 행정인턴 채용 사업을 전용을 통해 추진 부적절	146
2)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148
3) 정책연구개발(R&D)(7031-300)	149
□ 정책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비공개 보고서 공개방안 마련 필요	150
4) 통일업무지원(7032-303)	154

III. 2023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결산 개요 155

1. 남북협력기금 결산 총괄 155

가. 기금 총괄 155

나. 수입 결산 156

다. 지출 결산 157

2. 남북협력기금 수입 결산 검토 160

가. 건물대여료 160

나.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금회수 161

□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 위해 민간에 대출한 채권의 부실화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 165

다. 기타재산이자수입 169

라. 기타경상이전수입 170

마. 기타잡수입 173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숙박 연수생 유치에 노력할 필요 175

바.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178

3. 남북협력기금 지출 결산 검토 179

가. 통일정책 179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181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 장비·시스템 최신화 필요 182

나. 남북사회문화교류 185

1) 남북사회문화교류 186

다. 인도적 문제해결 188

1) 이산가족교류지원 189

2) 대북인도적지원 190

□ 성과지표 ‘대북 인도적 지원(반출승인) 실적’ 개선 필요 194

라.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196

1)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197
□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개선 사업 공사비 등 사고이월 관련 체계적 집행 관리 필요	200
2) 개성공단 조성	207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부채상환을 위한 장단기 방침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	209
마.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213
바. 기금간 거래	214
사. 여유자금 운용	217

IV.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218

1. 재정상태 분석	218
가. 자 산	219
나. 부 채	220
다. 순자산	221
2. 재정운영 분석	222
가. 프로그램순원가	223
나. 관리운영비	224
다. 비배분비용	224
라. 비배분수익	224
3. 순자산변동 분석	225
가. 기초순자산	225
나. 재정운영결과	225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25
라. 조정항목	226

V.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조치 결과 227

I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023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 29.3% 감소한 19억 3,700만원이 수납되었고, 예산액 20억 600만원 대비 96.5%가 수납되었음.

2023년도 세출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2,562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3,274억 4,700만원 대비 78.3%가 집행되었음.

남북협력기금전출금(예산 572억원 집행) 제외 시 일반예산은 1,990억 4,7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2,233억 4,000만원 대비 89.1%가 집행되었음.

<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 대비 증감율
	예산현액(A)	결산액(B)	수납률 또는 집행률(B/A)		
세 입	2,006	1,937	96.5	2,739	△29.3
세 출	327,447	256,247	78.3	296,757	△13.7
-일반예산	227,447	256,247	78.3	196,757	1.2
-기금전출금	100,000	57,200	57.2	100,000	△42.8

자료: 통일부

2. 세입 결산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9.9% 증가한 20억 6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21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9% 감소하였음.

2023년도 수납액은 19억 3,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8.6%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억 4,900만원임.

< 2023년도 세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23년	2,006	2,185	1,937	96.5	88.6	-	249
2022년	1,673	2,910	2,739	163.7	94.1	-	171
증감률	19.9	△24.9	△29.3	-	-	-	45.6

자료: 통일부

3. 세출 결산

가. 총괄 내역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은 3,233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41억 7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3,274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이 중 집행액은 2,562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8.3%임.

< 2023년도 세출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23,340	327,447	256,247	79.3	78.3	110	71,090
-일반예산	223,340	227,447	199,047	89.1	87.5	110	28,290
-기금전출금	100,000	100,000	57,200	57.2	57.2	-	42,800
2022년	329,911	331,889	296,757	90.0	89.4	4,107	31,025
증감율	△2.0	△1.3	△13.7	△10.7	△11.1	△97.3	129.1

자료: 통일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작년에 비해 11.1%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남북 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원 중 572억원만 자금 배정되어 428억원의 불용이 발생한 것에 주로 기인함. 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의 집행률은 전년보다 4.3%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권이 계획 대비 저조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2300) 프로그램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액(108억 9,500만원 불용)과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비(18억 9,000

만원 불용)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부지변경에 따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지연으로 북한정세분석(1500) 프로그램의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59억 5,600만원 불용)에서 불용이 발생함.

< 2023년도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1000 통일정책	15,774	1,312	17,086	15,537		1,549
1031 평화통일기반조성	15,774	1,312	17,086	15,537		1,549
1500 북한정세분석	16,228	2,736	18,964	12,203		6,761
1533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4,274	2,407	6,681	5,900		781
1535 북한자료센터 운영	11,954	330	12,284	6,303		5,981
2100 인도적 문제해결	6,735		6,735	6,048		687
2133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1,181		1,181	1,125		56
2135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4,081		4,081	3,521		560
2137 전신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1,473		1,473	1,402		71
230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8,372		88,372	74,960		13,412
2331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54,767		54,767	54,140		627
233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33,605		33,605	20,820		12,785
3000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5,117		5,070	4,391		679
3031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3,224		3,224	2,961		263
3032 개성공단 사업 지원	883		836	747		89
3036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1,010		1,010	683		327
4000 남북회담	2,516		2,438	2,246		193
4031 남북회담 추진	354		276	147		130
4032 남북회담본부 운영	2,162		2,162	2,099		63
5000 통일교육	23,507		23,507	22,337		1,170
5002 국립통일교육원 인건비	5,546		5,546	5,075		471
5018 국립통일교육원 기본경비	1,257		1,257	1,233		24
5031 통일교육추진	15,202		15,202	14,596		606
5033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1,502		1,502	1,433		69
7000 통일행정지원	65,216	58	65,274	61,328	110	3,946
8400 회계기금간거래	100,000		100,000	57,200		42,800
합 계	323,340	4,107	327,447	256,247	110	71,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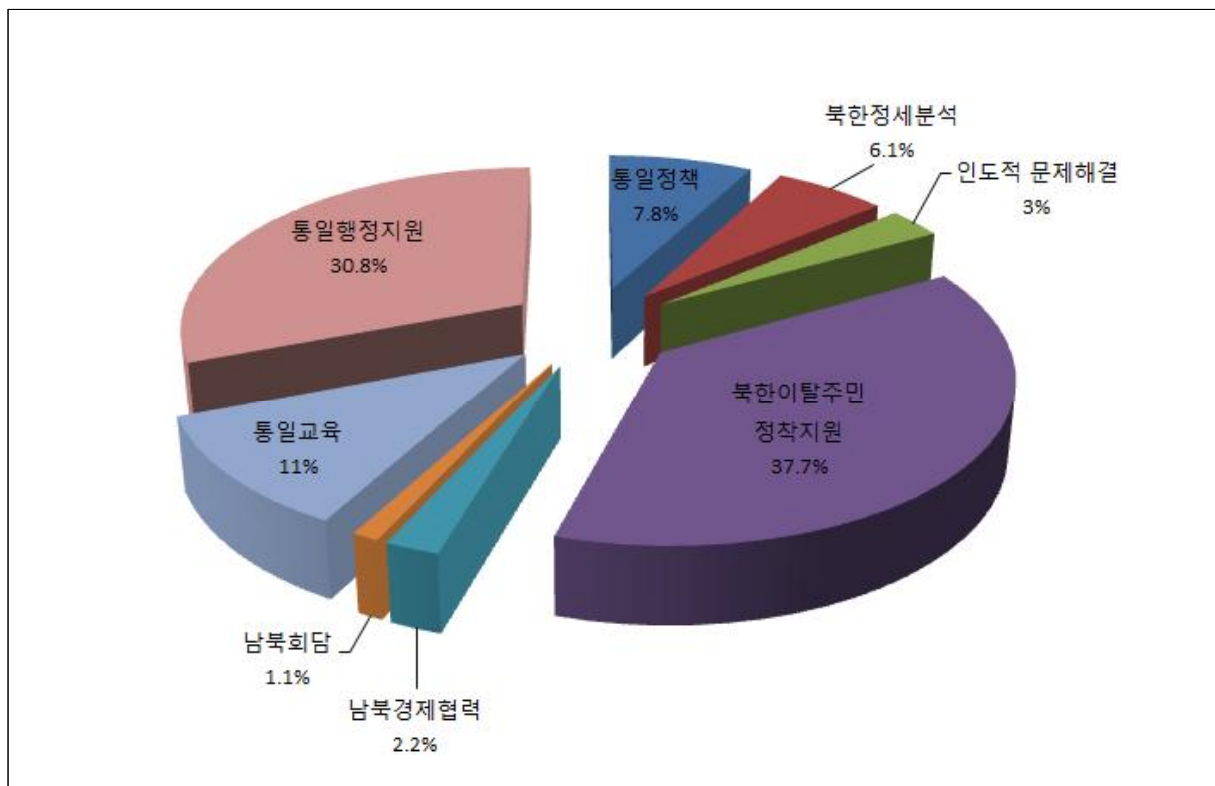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일반예산에서 각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약 3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이 약 30.8%,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약 11.2%의 비중이며, 통일정책 프로그램이 약 7.8%,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예산의 총 지출액에서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 남북회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1~3% 내외임.

<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 >



자료: 통일부

나. 이월·불용 내역

2023년도 이월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 경비등의 이월에 따른 것임.

< 2023년도 주요 이월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내 역	이월액
합 계		110
총액인건비 대상·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 이월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5% 범위 내 이월 가능)	110

자료: 통일부

2023년도 불용액은 710억 9,000만원으로, 주요 불용 내역은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자금 미배정액 428억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집행잔액 108억 9,500만원,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집행잔액 18억 9,000만원,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59억 5,6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38억 2,500만원 등임.

< 2023년도 주요 불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불용액
합 계		71,090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자금 미배정	42,800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주거지원금 등 각 분야 정착금 지급액 감소	10,895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하나원 교육생 구호교정비 등 관련 교육훈련비	1,890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통일정보자료센터	5,956
북한인권재단 운영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전액	475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	686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 사업 집행잔액	8,388

자료: 통일부

다. 이용·이체·전용 내역

2023년도 이용은 1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체 내역은 없었으며, 전용액은 9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600만원(35.1%)이 증가하였음.

< 2023년도 이용·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감(A-B)	증감률
이 용	합 계	125	-	125	-
	일반회계	125	-	125	-
전 용	합 계	910	674	236	35.1
	일반회계	910	674	236	35.1

자료: 통일부

주요 전용 내역은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등 2억 3,000만원, 조직 개편에 따른 폐지부서 기본경비 부내 재조정 4억 1,600만원 등임.

< 2023년도 주요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전용액
합 계		910
통일정책추진	사회적대화 의제개발 및 운영방식 설계 일반연구비	65
이산가족문제해결 지원	2023년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 일반용역비	18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등	230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2023북한인권보고서 발간비 관련 일반수용비	22
통일교육 지원체계 및 구축	재외동포 어린이용 도서 발간 교재개발 관련 일반연구비	13
기본경비	행정인턴 채용 관련 기관운영 기본경비 부족, 12월 고용부담금 및 퇴직연금	146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 기본경비 부내 재조정 등	416

자료: 통일부

라. 예비비 사용

2023년도 예비비 사용 실적은 없음.

4. 202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주요 검토내용

가. 총괄검토

□ 남북 교류협력 및 대화·협상능력 유지 필요

통일부의 2023년도 일반예산의 지출액 중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43억 9,100만원, 남북회담 프로그램 22억 4,600만원으로, 총 지출액에서 남북 교류협력 및 대화·협상능력 유지에 필요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2.3%, 1.1%에 불과한 실정임.

<최근 10년간 남북교류협력 / 남북회담 관련 예산 변동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일반회계 예산액					비고 (남북협력기금 교류협력 사업 계획금액)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북회담 관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5년	229,983	3,288	1.4	3,222	1.4	465,367
'16년	243,072	4,051	1.7	5,905	2.4	498,363
'17년	244,762	2,701	1.1	6,769	2.8	267,957
'18년	227,498	2,807	1.2	2,360	1.0	357,511
'19년	219,875	3,310	1.5	3,958	1.8	524,897
'20년	218,569	3,371	1.5	3,156	1.4	577,945
'21년	229,355	4,747	2.1	3,250	1.4	586,301
'22년	230,881	6,043	2.6	2,425	1.1	613,412
'23년	223,340	5,117	2.3	2,516	1.1	476,454
'24년	222,027	4,399	2.0	2,355	1.1	278,145

자료: 통일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기본 임무와 역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2024년 3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되었으며, 북한은 지난 2023년 4월 이후 남북 통신연락 채널을 통한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선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킨 후 통일을 추구하는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1990년 8월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역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남북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대화의 단절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임에는 분명한바,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교류협력 및 대화·협상능력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용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왔던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및 대화·협상능력을 유지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시설물 등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방안 검토 필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은 시설물 및 부지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코로나19로 시설물들의 이용이 통제되거나 제한되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외부활동 증가에 따라 시설물 이용 및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통일부 및 소속기관 소유 시설물 및 부지 현황 >

기관명	시설물·부지명	용 도	이용현황	비 고
통일부 (남북통합 문화센터)	남북통합문화센터	전시시설 및 업무시설	방문인원('23년 기준) : 연 6만7천여명	서울시
통일부 (국립6.25 전쟁납북자 기념관)	기념관 전시동·사무동	전시시설 및 업무시설	방문인원('23년 기준) : 연 36,684명	파주시
남북 관계 관리단	남북관계관리단 청사·회담장	업무시설 및 회담장	업무시설 각종 회의 개최	서울시
	전방사무소·자유의집 등	업무시설, 남북연락망운용	업무시설 판문점 견학지원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경의선)	출입심사시설, 물류시설	업무시설 철도역(도라산역) 물류창고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동해선)	출입심사시설, 물류시설	업무시설 철도역(제진역) 물류창고	고성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교육관(본관)	행정지원시설	행정지원시설	안성시
	교육동(하나둘학교)	교육시설	교육시설	안성시
	제2교육관(훈련과)	교육시설	교육시설	안성시
	직업교육관	교육시설	교육시설	안성시
	생활관	합숙시설	합숙시설	안성시

기관명	시설물·부지명	용도	이용현황	비고
	숙소동	합숙시설	합숙시설	안성시
	봉사관	행정지원시설	직원봉사관	안성시
	체육관	체육시설	교육생 체육시설	안성시
	환경실	위생시설	정화조 시설	안성시
	면회실	복지시설	면회실	안성시
	관사	관사	관사	안성시
	제2하나원 교육관	교육시설	교육시설	화천군
	제2하나원 체육관	체육시설	체육시설	화천군
국립 통일 교육원	국립통일교육원 청사	교육연구시설	교육인원('23년 기준) : 1,500명	서울시
	오두산전망대	관광휴게시설	방문인원('23년 기준) : 연 243,332명	파주시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	통일관	사무실 및 통일체험연수시설	대강당, 모듬방 등	연천군
	미래관	통일미래체험관	체험연수시설	연천군
	한반도관(A관, B관)	생활관	합숙시설	연천군
	어울림관	체육관, 구내식당	체험연수시설 및 식당	연천군
	야외시설	한반도투어링장,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야영장 등	체험연수시설 및 체육시설	연천군
	관사	직원숙소	직원 숙소	연천군

자료: 통일부

이를 고려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지도교사에 대한 우울증 예방 및 치료 등 보유한 시설물 및 부지를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교육생 감소에 따른 시설물의 효율적 활

용을 위해 수료교육생 대상 심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인사 대상 방문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3년 11월 18일에는 북한이탈 주민 300여 명을 하나원에 초청하여 탈북민들의 ‘제2의 고향, 친정집’ 방문 행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제2하나원의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개소함으로써 탈북 과정 및 우리 사회 정착지원 과정에서 겪는 탈북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2014년 개관 이래 2023년까지 총 228,457명을 대상으로 체험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체험연수를 재개하여 2023년 한해 28,891명을 대상으로 체험연수를 진행하였고,

효율적인 체험연수 진행을 위해 대강당 대형 LED 설치, 노후 CCTV 24대 교체, 야외 홍보용 전시구조물 설치 등 기반시설 개선·확충 사업과 보도블럭 보수, 오수처리시설 보강, 한반도투어링장 하천 경사면 복구 등 시설안전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음.

< 통일부와 소속기관의 시설물 활용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	2023년 결산액	사업내용	활용내역 (시설물, 부지)
통일부 (남북통합 문화센터)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3,324	전시관, 프로그램 및 행사 통합문화 콘텐츠 창작지원 상담센터 평화통일 도서관 등 운영	공연장, 강의실, 체험관, 상담센터, 도서관, 사무실 등
통일부 (국립6.25)	6.25전쟁납북자 기념관 운영	1,402	전시·교육 운영, 유물 수집·관리, 시설 운영 등	전시동, 사무동

기관명	사업명	2023년 결산액	사업내용	활용내역 (시설물, 부지)
전쟁납북자 기념관)				
남북 관계 관리단	남북출입사무소 유희부지 활용 및 건학	-	물류시설 국유재산 사용허가 출입심사시설 건학 지원	물류시설 출입심사시설 및 도라산역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북한인권기록센터 인권조사	-	기초교육생 대상 인권실태조사	제2교육관
	사회적응교육 기획	122	외부인사 방문 및 홍보	교육관
	초기정착지원	20	교육생 정착지원 준비 및 정착지원 상담	교육관, 제2교육관
	초기정서안정지원	103	교육생 대상 정서안정프로그램 운영	제2교육관
	사회적응기본교육	284	대상별 분별교육 및 정보화 교육	제2교육관
	진로지도 프로그램	626	기초교육생 및 심화교육생 직업교육	직업교육관
	우리사회체험교육	177	주말프로그램, 홈커밍데이, 친정집나들이 등	제2교육관, 체육관
	하나들학교 운영	103	하나들학교 분반수업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동
	하나의원 운영	158	교육생 진료 및 하나의원 운영	교육관
	교육생 지원	766	교육생 숙식 등 지원	생활관, 교육관
	경비업무	2,858	특수경비업체 사무실 및 숙소	봉사관
	제2하나원 직무교육	27	보호담당관 과정, 재외공관탈북민담당관 과정, 탈북학생지도교사 과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협의회 과정, 지자체 공무원 과정 등 운영	교육관
	제2하나원 사회적응교육 및 초기정착지원	97	교육프로그램운영, 심리정서안정, 멘토링프로그램 등 운영	교육관
	제2하나원 진로지도프로그램	156	기초직업훈련, 진로상담, 기타직업 체험교육, 직종특화교육 등 운영	교육관

기관명	사업명	2023년 결산액	사업내용	활용내역 (시설물, 부지)
	제2하나원 우리사회체험교육	65	현장체험학습, 보충프로그램운영, 주말프로그램운영, 생활관리, 수료총무단 네트워크 구축관리 등 운영	교육관, 체육관
	제2하나원 하나의원 운영	32	교육생 외부병원진료 및 하나의원 일반운영	교육관
	제2하나원 힐링프로그램운영	89	탈북민 대상 힐링프로그램 운영	교육관, 체육관
	제2하나원 교육생지원	225	교육생 생활지원, 교육생 행사지원, 탈북민 인식개선 등 교육생지원	교육관
국립 통일 교육원	통일교육 운영	-	초중등교사, 공무원, 유관단체 등 통일교육 전문성 향상	교육관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	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924	기획 및 홍보 프로그램개발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	통일관, 미래관, 한반도관, 어울림관, 야외시설 등
	미래센터 시설관리 운영	2,433	통일미래체험관 운영 시설관리(공무직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등)	센터시설 전체

자료: 통일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은 보유한 시설물 및 부지를 활용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추후 운영 예정인 프로그램들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프로그램간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이 보유한 시설물 및 부지의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개최실적 제고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행정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와 자문 위원회로 구분되고,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위원회는 반드시 법률로,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통일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중임.

< 통일부 소속 행정위원회 현황 >

(단위: 회, 천원)

행정기관위원회명	설치 근거 법령	회의 개최 실적	2023년도	
			예산액	집행액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2	14,760	4,849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법 제5조	0	20,100	0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7조	3	7,400	2,600
남북피해자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4	9,000	9,000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5	-	15,399

자료: 통일부

이 중 법령상 국회의 위원 추천이 필수인 2개 위원회(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 국회의 위원 미추천 및 추천 지연으로 2023년에 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하거나 지연 구성·운영됨.

먼저,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2023년 6월 20일 국회의 추천으로 하반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출석 대면으로 한 차례 개최(10.18.)하고,¹⁾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23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안)을 심의함.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는 2023년에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2023년 11월 2일 개최한 대면 회의에서 ‘억류자 가족’을 남북피해자로 처음 인정하였으며, 이후 서면 회의(11.21.~22.)를 추가로 개최하여 억류자 가족(5명)에 위로금을 총 8,900만원 지급하였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경우 그 구성·운영이 외부적 요인(국회의 위원 미추천)에 기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의 개최가 서면 3회에 불과함.

한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재단 출범 전까지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²⁾를 통일부훈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음.

1) 2023년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실무위원회 제외

2)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통일부훈령 제651호, 2023.3.6. 제정)

제2조(기능)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준비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
2.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 공감대 확산
3.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과제 발굴
4. 시민사회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5. 그 밖에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 위원회는 정례(분기별) 및 수시 회의, 현안 자문, 언론 기고 등 운영을 통해 북한 인권 증진 민간협력 및 공감대 확산 방안 논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2023년에 5차례 개최하였고, 편성예산이 없으나 1,540만원을 집행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간의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출석·대면회의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서면(비대면)회의 보다는 시간 활용 및 거리 제약 등을 고려하여 화상회의(웨백스 등)를 활용하여 개최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행정기관의 장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부령에 근거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해 성별·지역별·직능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이 균형 있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³⁾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부문) 조직 지표에서 비수도권 위원 위촉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일부 소속 행정위원회(4개)의 비수도권 위원 위촉비율은 8.3%, 여성위원 위촉비율의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13%,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경우 8%에 불과함.

여성대표성이나 지역대표성은 위원 위촉 시 상대적으로 반영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는 바, 통일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 공정성 및 신중성을 제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나. 일반회계

(1)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사업(4억 1,8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총 41건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수행되었으며, 비공개 비율은 20% 이상인바, 통일부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경쟁을 통한 과제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11억 8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출범한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는 바, 회의 개최 실적을 제고하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도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51억 3,8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2023년 9월 첫 통일센터로 호남권 센터(목포)를 개관하였으나 강원·경기·충청 통일센터 신설 사업의 추진이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바, 통일+센터 설치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체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사업(8,0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으나 일반용역비 1억원을 조성하고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용역 관련 비용으로 8,000만원을 집행한 바,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통일인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충실한 사업계획을 통해 정규 예산에 편성하고 기재부의 예산안 심사 및 국

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5)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15억 5,4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2030세대 통일공공외교 활동 지원’에서 1억 3,200만원 등 일반수용비 1억 5,000만원이 불용됨. 정부부처 간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가 반영되지 못한 채 예산이 확정됨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바, 통일부는 향후 필요한 적정 예산과목의 반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50억 2,2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부지변경 요구('23.11)로 부득이 착공 등 사업 일정이 연기되었는데, 통일부는 향후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7)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1억 1,3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납북피해자’ 위로금 지급을 위해 9,500만원을 편성하고 재북 억류자(6명)를 「전후납북자법」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인정하여 그 가족들에게 8,900만원을 지급한 바, 앞으로도 ‘억류자’를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향후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류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8)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사업(9,9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당초 이 사업에는 임차료가 편성되지 않았지만 통일부는 동 세부사업 내 조정을 통해

800만원을 조성하고,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인권영 화 다시보기’를 위한 장소 임차료로 집행한 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 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9) 조사결과 활용 사업(1억 1,7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당초 『2023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전용 및 세목 조정 등을 통해 집행함. 동 사업은 국회의 예산 심사 및 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업에 과도한 전용 등을 통해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과도한 전용 등을 통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충실한 사업 계획을 통해 필요한 사업비를 정규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0)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4억 7,500만원 전액 불용)과 관련하여, 「북한인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동 재단이 이사 구성 지연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바,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어 예산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범 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1)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사업(2억 1,0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2023년도 11월 말에 예산을 전용하여 12월에 사업을 집행한 사업으로, 향후 국회의 예산 심사 및 승인을 받지않는 방식의 단기적 관점의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12)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11억 4,9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동 사업 예산의 집행을 계기로 정보화사업의 성과 달성도를

측정함이 바람직하고, 그 경우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의 이용자 변동 추이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1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100억 8,6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현액 209억 8,100만원 중 100억 8,600만원을 집행하여 48.1%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였는데,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향후 국제정세 및 북한의 동향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4)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 중 경의선 옥외전광판 교체 사업(1억 4,700만원)을 취소하고 해당 예산 전액을 조정하여 안전시설 보강 공사 등의 용도로 집행하였음. 향후 통일부는 출입사무소 관련 시설·설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임의로 사업을 취소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안전·보안 관리 사업은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

(15) 분야별 회담 추진 사업(1억 7,000만원 집행) 관련, 남북회담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30년이 경과된 남북회담문서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열람 건수가 저조함. 통일부는 열람 장소를 확대하고, 전자적 열람 방안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6) 통일교육 자료 개발 보급 사업(29억 2,200만원 집행) 관련, 증강현실 (AR)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공급하고 있는데, 공급자 명의를 통일부

또는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일원화하고 미사용 앱을 삭제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범용성 확장과 홍보 확대 등을 통해 AR 앱의 다운로드 수를 늘려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7)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사업(4,200만원 집행)과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 홍보 영상 공모 사업(4,400만원 집행)의 응모 및 입상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 응모·입상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상금을 올리고,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예비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입상 후 연계활동을 개발하는 등 응모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8) 정책연구개발 사업(2억 9,2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총 43건 중 32건(74.4%)을 수의계약에 의해 수행하였으며, 비공개 비율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향후에는 정책연구과제의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비공개 보고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주요 내용 공개와 부분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다. 남북협력기금

(1) 남북협력기금 수입과 관련하여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출한 금액 중 대출원금은 ‘기타민간 융자원금 회수사업(52억 8,000만원 수입)’을 통해 상환처리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기타민간 이자수입(14억 4,000만원 수입)’에서 수입처리하고 있으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매년 만기도래금액 대비 3~5% 수준임. 향후 대출 부실화 위험에 주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채권 회수 계획의 수립 및 관리가 요구됨. 또한, 이자 상환유예조치는 원금상환유예와 달리 이자액이 누적·증가하여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므로 보다 상환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기타잡수입(2,800만원 수입)의 주요 수입액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자 연수비 및 숙박비임. 2023년 총 체험연수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의 72%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에 비해, 이용료 수입액은 21%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숙박 체험연수자 수의 회복이 더디기 때문임. 보다 심도깊은 통일체험과 연수과정을 제공하여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또는 지자체와 협력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숙박체험연수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3)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33억 5,7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동센터가 2014년에 개관하여 체험 시스템·장비 등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체험시설은 연수자들이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들을 실

제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과 도구를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함. 따라서 체험시설을 최신화하여 체험자의 감정 이입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사업(2억 7,000만원을 집행)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내 10년 이상 노후화된 CCTV 등 시설 및 장비를 교체하려는 사업이나 32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음. 이월 사유를 보면, 계약 및 협의절차 지연과 세목변경을 위한 계획변경 절차 진행에 의한 것임. 향후 통일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세부절차간 혼선을 피하고 사고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5) 개성공단 운영대출 사업(20억 2,700만원을 집행)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비를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동 재단은 2024년 3월 해산을 결정하였는데, 남북협력기금에서 재단에 지원한 대출액 중 788억원과 157만 달러의 미상환금이 남아있는 상황임. 대출상환을 위해 재단 자산의 매각·양도가 필요한 상황이나 주요 자산이 북한 개성공단에 있어 평가액 산정과 현금화가 어려운바, 통일부는 대출상환을 위한 장단기 방침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고정적인 이자 부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별 검토

1. 세 입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20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9% 감소한 21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9억 3,700만원이 수납(징수결정액 대비 88.6% 수납)되었으며, 2억 4,900만원은 미수납됨.

< 2023년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23	2,006	2,185	1,937	96.5	88.6	-	249
2022	1,673	2,910	2,739	163.7	94.1	-	171
증감율	19.9	△24.9	△29.3	-	-	-	45.6

자료: 통일부

수납액 세부내역은 건물대여료 등 재산수입 3억 3,3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경상이전수입 11억 9,800만원, 오두산통일전망대 입장료수입 등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4억 500만원임.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지자체 국고보조금 반납절차 지연 등 2억 4,900만원임.

< 2023년도 세입 미수납액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명		내 용	미수납액
경상이전 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보조금 등 발생이자	2
	과태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6
	가산금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1
	기타경상이전수입	소송비용 및 지자체 국고보조금 반납절차 지연	240
합 계			249

자료: 통일부

□ 제재부가금 계정신설 및 부과·징수 강화 필요

통일부의 2023년도 징계부가금 세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1,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되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공무원의 징계에 따른 징계부가금 400만원과 사인(私人)에 부과된 제재부가금 1,300만원으로, 제재부가금을 위한 별도의 계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불가피하게 징계부가금 계정에 포함시킨 것임⁴⁾.

< 2023년 징계부가금 부과 내역 >

구 분	납부자(단체)	금 액	사유
징계부가금	○○○	400만원	부당지시 등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제재부가금	사단법인 ○○○○○센터	1,300만원	간접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자료: 통일부

< 최근 4년간 징계부가금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20	-	-	-	-	4	4	-	100.0	-	-
'21	-	-	-	-	-	-	-	-	-	-
'22	-	-	-	-	-	-	-	-	-	-
'23	-	-	-	-	17	17	-	100.0	-	-

자료: 통일부

4) 제재부가금 수입처리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이 없어 각 부처별로 징계부가금 계정, 과징금 계정, 과태료 계정 등에 포함하는 등 상이한 상황임.

“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⁵⁾에 따라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게 징계 외에 수수 또는 횡령·유용한 금전의 5배내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고,

“제재부가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⁶⁾에 따라 거짓이

- 5)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제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결정을 취소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등의 경우, 반환받는 보조금의 5배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것임.

징계부가금 부과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에 따라 각 기관에서 인사혁신처 또는 기관내 징계위원회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 후 각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은 이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 및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사업부서)은 부정수급심의회 의결을 거쳐 제재부가금을 결정하고 이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음.

< 세입 과목 구분 >

관	항	목	내역
경상 이전 수입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벌금 및 과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몰수금 및 추징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 물품, 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
		과태료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등(법령상 이행강제금 포함)
		징계부가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징계부과금 등
		과징금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징금 등

자료: 기획재정부(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2023년도에 부과된 제재부과금은 2023년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23.1.30.~2.24.)에서 보조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에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 유류비를 환수 조치하면서 환수액의 3배인 1,3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는데,

통일부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의 위법성·고의성 등을 확인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제재부가금 부과 요건을 충족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이며 이는 2016년 제재부가금 부과 제도 도입 이후 통일부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함.⁷⁾

< 2023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23.1.30.~2.24.) 결과 >

기관명	연번	지적 내용	처분
VVV 센터	1	- o 센터장 활동비 집행 부적정 - (직원선물 지급 부적정) aa센터, bb센터는 '21.2.~9. 설·추석·연말에 센터장 활동비(업무추진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하나센터 내부 직원 선물을 구입하는데 집행 - (월별 한도액 초과집행) cc센터 등 13개 센터는 센터장 활동비를 업무매뉴얼상 월별 한도액 30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	주의 주의
	2	- o 업무용 차량 관리 부적정 -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 WWW센터 센터장은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 • XXX센터 센터장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 - (업무용 차량 보험료 지출 부적정)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센터 명의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차량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dd센터 등 5개 센터에서 법인 차량에 대해 보험료 지급	주의 시정 주의

7) 통일부는 이 건은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해당 감사담당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고 설명함.

기관명	연번	지적 내용	처분
	3	o 사무실 임차료 지급 부적정 - 업무매뉴얼에 사무실 임차료 규정이 없음에도 YYY센터는 사무실 임차료로 지출	주의
ZZZ 학교 (1건)	1	o 급식 업무처리 부적정 - (계약업무 부적정) • '21년 (주)ㄱㄱㄱ과 '22년 (주)ㄴㄴㄴ과 각각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별로 계약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 또한 '21년 (주)ㄱㄱㄱ는 위탁급식 계약이 2천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체결	주의
		- (위탁급식비 정산 부적정) • 학생들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교직원들 급식비에 지출	시정
ㄷㄷㄷ협회 (1건)	1	o 선물구입 부적정 - 전체 보조금의 42%에 해당하는 햄살을 구입, 특별한 행사 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등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집행	주의

자료 통일부

우선 정부는 민간에 대한 제재부가금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통해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관련 내용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부는 통일 사업의 특성상 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당 민간단체로 하여금 위탁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바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8) 통일부는 2023년도에 통일정책,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협력 기반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등과 관련하여 19개의 보조사업(예산 230억원)을 실시하였음.

2. 통일정책(1000 프로그램)

가. 개 요

통일정책 프로그램은 통일 및 통합 대비 정책 개발·연구, 북핵·평화구축 정책 수립 등 통일대비 중장기 통일정책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국민·국제사회 대상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반사업 추진 등 국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화통일기반조성 1개 단위사업에 3개 세부사업(통일정책추진, 국내통일기반조성, 국제통일기반조성)으로 이루어져 있음.

< 2023년도 통일정책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12,869	15,774	15,774	17,086	15,537	14,788
□평화통일기반조성(1031단위사업)	12,869	15,774	15,774	17,086	15,537	14,788
○ 통일정책추진(300)	1,953	3,878	3,878	3,823	3,090	2,049
○ 국내통일기반조성(301)	8,365	8,735	8,735	10,147	9,726	10,144
○ 국제통일기반조성(302)	2,551	3,161	3,161	3,116	2,721	2,595

자료: 통일부

평화통일기반조성 단위사업에서 각 세부사업이 차지하는 결산 지출액 비중을 보면,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이 62.6%,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이 17.5%, 통일정책추진 사업이 19.8%를 차지하고 있음.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통일정책추진(1031-300)

통일정책추진 사업은 남북 통합을 위한 중장기적 통일정책을 마련하고, 통일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8억 2,300만원 중 30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고, 7억 3,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통일정책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878	3,878	-	△55	3,823	3,090	733	79.6	80.8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통일 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사업에 7억 500만원,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에 12억 7,700만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에 11억 8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통일정책추진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통일정책추진	3,878	3,878	△55	3,823	3,090	733
· 통일 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	809	809	△55	754	705	49
·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운영	1,569	1,569	-	1,569	1,277	292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1,500	1,500	-	1,500	1,108	392

자료: 통일부

□ 정책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필요

내역사업인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사업’은 향후 통일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통일 이후 통합까지 미리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및 분야별 제도·법제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23년도 정책연구비(260-02목)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억 900만원 중 4억 200만원이 집행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사업 정책연구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책연구비 (260-02목)	409	409	-	409	402	-	7

자료: 통일부

2023년도 정책연구비 집행에 따른 연구용역의 세부 내역을 보면, 과제별로 최대 7,000만원에서 최소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11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였는데, 11건의 연구과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9)에 따른 비공개 대상 연구과제는 총 5건이었음.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 수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과제명	집행액	계약 방식	수행 기간	수행 기관	공개 여부	비공개 기한
글로벌 통일 이니셔티브 추진방안	16	수의	2023.4.~8.	통일연구원	공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개편안 연구	33	수의	2023.4.~9.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비공개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가칭) 제정안	20	수의	2023.4.~7.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비공개	2년
통합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 방안 연구	37	수의	2023.4.~12.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공개	
지정학적 불이익 극복을 위한 소 다자주의 협력 모델 시사점	30	수의	2023.6.~11.	한국세계지역 학회	비공개	
탈북민 수기를 바탕으로한 지역 사회 통일공감 문화확산 연구	30	수의	2023.8.~12.	숭실대 산학단	공개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통일 문제 연구	70	수의	2023.9.~12.	한국국가전략 연구원	비공개	
북한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	46	수의	2023.10.~12.	육군3사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	
유엔사의 한반도 통일에서의 역할 및 협력방안 연구	30	수의	2023.10.~12.	한국국가전략 연구원	비공개	
기존 통일법제 연구성과 분석·평가 및 향후 활용 방안 마련	50	수의	2023.10.~1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	
정부 내 통일준비인력 육성·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40	수의	2023.10.~12.	한국행정연구원	공개	
합 계	402					

자료: 통일부

또한, 최근 3년간의 수의계약 및 비공개 과제 현황을 보면, 총 과제 건수 36건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수행하였으며, 11건을 비공개 함에 따라 비공개 비율은 30% 이상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비공개 과제 현황 >

구 분	과제 건수	수의계약 건수(비율)	비공개 건수(비율)
2021년도	12건	12건	3건(25%)
2022년도	13건	13건	3건(23.1%)
2023년도	11건	11건	5건(45.5%)
합 계	36건	36건(100%)	11건(30.5%)

자료: 통일부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0)의 연구용역비(260목) 공통지침에 따르면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11)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따라 계약하여야 하고,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또는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 등에 관해서는 예외적

10)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87 연구용역비(260목) 공통지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한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됨.

통일부의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1억원 이하의 계약으로, 일부 과제들은 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11건 모두 수의계약에 따라 과제를 선정함에 따라 일반경쟁에 따른 과제선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정책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을 통한 정책연구과제 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운영 실적 제고 필요 등

내역사업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통일 미래전략 구상·수립,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통일미래 관련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현액 15억원 중 11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9,200만원이 불용됨.

< 2023년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통일정책추진	3,878	3,878	△55	3,823	3,090	733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1,500	1,500	-	1,500	1,108	392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3년 1월 업무보고를 통해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신설 추진을 보고하고, 이후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경험 등을 중심으로 부 내외 추천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위원을 인선하였음.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2023.2.28., 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르면,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통일기획관이 간사가 되며, 위원 임기는 1년(연임 가능)이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 분야의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¹²⁾

< 2023년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

회의		일자	참석위원	안건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3.15.	위원장 등 30명	· 통일미래 청사진 수립 방향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계획 등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정치·군사	3.30.	분과위원장 등 8명	· 분과별 통일미래 청사진 수립 방향 · 공론화 사업 추진방향 등
	경제	3.31.	분과위원장 등 7명	
	사회·문화	3.29.	분과위원장 등 6명	
	인도·인권	4. 4.	분과위원장 등 5명	
	국제협력	3.31.	분과위원장 등 5명	
특별위원회 회의		3.31.	특별위원장 등 8명	· 통일미래 청사진 수립 방향
위원장단 회의		4. 5.	위원장 등 7명	· 통일미래 청사진 수립 방향 · 공론화 사업 추진방향 등
특별위원회 회의		4.21.	특별위원장 등 8명	· 통일미래 청사진 수립 방향
위원장단 회의		5. 3.	위원장 등 7명	· 공론화 사업 추진방향 ·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통일부-위원회 원탁회의		5. 3.	위원장 등 12명	· 통일미래 청사진 기본방향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정치·군사	4.27.	분과위원장 등 8명	· 통일미래 청사진 기본방향
	경제	5. 1.	분과위원장 등 7명	
	사회·문화	4.24.	분과위원장 등 5명	
	인도·인권	4.26.	분과위원장 등 4명	
	국제협력	5. 1.	분과위원장 등 5명	
위원장단 회의		6.20.	위원장 등 10명	· 통일미래 청사진 기본방향 · 공론화 사업 추진경과 등
위원장단 회의		8. 2.	위원장 등 6명	· 통일미래 청사진 구상안 경과보고 · 위원회 하반기 운영계획 등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8. 9.	위원장 등 28명	· 통일미래 청사진 구상안 경과보고 · 위원회 하반기 운영계획 등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정치·군사	9. 4.	분과위원장 등 6명	·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 통일 공론화 사업 등
	경제	9. 1.	분과위원장 등 6명	
	사회·문화	8.18.	분과위원장 등 5명	
	인도·인권	8.21.	분과위원장 등 5명	
	국제협력	9. 1.	분과위원장 등 5명	

12)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관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등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 또는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회의		일자	참석위원	안건
위원장단 회의		9.15.	위원장 등 11명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하반기 운영계획 등
특별위원회 회의		10.23.	특별위원장 등 5명	· 통일미래 청사진 수립 방향
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정치·군사	10.20.	분과위원장 등 5명	· 분과별 공론화 중점사업
	경제	10.17.	분과위원장 등 7명	
	사회·문화	9.26.	분과위원장 등 4명	
	인도·인권	10.12.	분과위원장 등 4명	
	국제협력	10. 5.	분과위원장 등 4명	
위원장단 회의		11.14.	위원장 등 10명	· 전체회의, 국제협력대화 등 계획
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사회·문화	11.15.	분과위원장 등 8명	· 사회문화분과 공론화 사업 등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12.20.	위원장 등 23명	· 통일 담론 연구용역 결과 토론 ·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

자료: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분기별 개최하도록 규정한 전체회의를 2023년에 3차례, 매월 개최하도록 규정한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당 4차례(사회·문화의 경우 5차례)만 개최하여 동 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출범한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실적이 다소 부진하였는 바, 법령에 규정된 회의 운영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여 회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통일 미래전략 구상·수립,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통일부장관 직속의 민간 자문기구인 만큼,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¹³⁾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13)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688호, 2024. 5. 9. 타법개정, 연혁 2008. 4.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정책의 수립·발전 및 북한의 제반실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협력 등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도적 대북지원,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5. 남북회담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정책의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관이 요청하는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에 응할 수 있다.

2)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은 통일정책 홍보 및 의견수렴, 지역사회 통일관련 서비스 종합지원 및 민간-정부 간 소통·협력 거점 마련,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및 통일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01억 4,700만원 중 97억 2,6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2,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8,735	8,735	1,312	+100	10,147	9,726	-	421	111.3	95.9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에 25억 2,000만원, 통일+센터 설치·운영에 38억 2,600만원,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에 9억 1,900만원, 통일문화진흥에 10억 6,900만원,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에 8,0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국내통일기반조성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내통일기반조성	8,735	8,735	+100	10,147	9,726	421
·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2,696	2,696	+3	2,699	2,520	179
· 통일+센터 설치·운영	3,877	3,877	-1	5,188	5,138	51
·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1,002	1,002	-	1,002	919	83
· 통일문화진흥	1,160	1,160	-2	1,158	1,069	89
·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	-	+100	100	80	20

자료: 통일부

□ 통일+센터 구축 사업의 연례적 이월,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내역사업인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종합적인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을 권역별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역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확보하되 센터 건립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5 : 5로 매칭하는 보조금 사업임.

통일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총 7개 지방자치단체에 권역별 통일+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인 바, 인천 통일+센터(송도) 시범운영을 토대로 권역별 거점이 되는 모델을 마련하였고, 2023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첫 통일+센터로 9월 8일 호남권 통일+센터(목포)를 개관하였음.

< 통일+센터 설치 현황 및 계획 >

2018.9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시범센터 1개소(인천) 개관·운영	■ 인천지역 협업체계 구축	■ 인천센터 운영성과 평가(3 ~ 5 월)	■ 인천센터 확대운영 추진						
		■ 신규센터· 예산확보	■ 신규 설치 (호남센터)		■ 신규 운영 (호남센터)				
			■ 신규 설치 (강원센터)			■ 신규 운영 (강원·충 청·경 기 센터)			
			■ 신규센터 예산확보		■ 신규 설치 (충청·경기센터)				
							■ 신규센터 예산확보		■ 신규 설치 (2개소)
1개소 개소..운영 [인천 시범센터]					1개소 신설 [총 2개소]	3개소 신설 [총 5개소]		2개소 신설 [총 7개소]	

자료: 통일부

< 통일+센터별 운영주체, 건립예산, 진행 현황 등 >

연번	센터	공모시기	설치착수	운영주체	건립예산 ^{주)}			개소(예정)	추진현황
					국비	지방비	총액		
시범	인천(송도)	-	'18년	통일부	* 1개층 일부임차			'18.9.10.	운영중
1	호남(목포)	'20년	'21년	전남도	31.5억	31.5억	63억	'23.9.8.	운영중
2	강원(춘천)	'20년	'21년	강원도	32.5억	32.5억	65억	'24.10월	'23.3.27. 착공
3	경기(의정부)	'21년	'22년	경기도	40억	40억	80억	'25.6월	'24.5.30. 본공사 착공
4	충청(홍성)	'21년	'22년	충남도	40억	60억	100억	'25.10월	'24. 8월 착공 예정

자료: 통일부

주) 건립예산은 국비:지방비 1대1 매칭(단 충남은 자체적으로 도비 추가 편성)

< 2023년도 통일+센터 건립 등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목	세목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330	01	전라남도	200	200	200	200	-	200	186	200	186	-	14	93
330	03	전라남도	300	300	300	300	-	300	299	300	299	-	1	99.8
330	03	강원도	-	-	812	812	2,210	3,022	3,022	812	812	-	-	-
330	03	충청남도	1,600	1,600	1,600	1,600	400	2,000	356	1,600	-	1,644	-	-
330	03	경기도	1,000	1,000	1,500	1,500	1,457	2,957	202	1,000	-	2,755	-	-

자료: 통일부

강원권 통일+센터(춘천)의 경우 2023년에 신규 편성된 국비 예산은 없었으나, 강원도 기준으로 전년도에 사업지연 등으로 통일부가 교부하지 아니한 8억 1,200만원을 교부받고 전년도 이월예산(22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2,200만원(국비)을 금년 상반기 준공을 예정으로 하여 집행 완료하였음.

현재 남은 공사는 지방비로 집행 중이며, 동절기 공사중단기간 발생 등으로 인해 일정이 계획보다 다소 지연(8월 준공 예정)되었지만, 통일+센터 개관은 당초 계획대로 2024년 10월 개관 예정임.

경기권 및 충청권 센터 역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경기권 통일+센터(의정부)의 경우, 2023년도에 전년도 이월액 14억 5,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억 5,700만원 중 2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충청권 통일+센터(홍성)의 경우, 2023년도에 전년도 이월액 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억원 중 3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음.

경기권 통일+센터의 경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치 실현,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일정이 지연되었고, 공사입찰 과정에서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하는 등 공사계약 절차가 지연되었지만,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진행하여 2024년 1월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였으며, 2024년 5월 본계약 체결을 통해 본공사로 전환되어 12월말 준공, 2025년 6월 개관 예정임.

< 통일+센터별 건립 추진 현황 등 >

연번	센터	당초 계획 (’21년 9월 기준)	2023년 12월말 기준	2024년 6월말 기준
사범	인천	인천 센터 2018년 9월부터 시범운영 중		
1	호남	호남센터(목포) 개관(2023년 9월)·운영 중		
2	강원	- (2021.3 ~ 8) 건축기획 용역 - <u>(2021.9 ~ 11)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u> - (2021.11. ~ 2022.6.) 설계 - (2022.6. ~ 2023.9.) 공사	- (2021.10 ~ 12)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 (2022.1. ~ 2023.2.) 설계 - (2023.3. ~) 착공, 공사	2024년 10월 개관 예정 - (~ 2024. 8.) 공사 완료 - (2024. 8~10.) 개관 준비
3	경기	- (2021. ~ 4) 건축기획 용역 - <u>(2022 ~ 4)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u> - (2022.5. ~ 10.) 설계 - (2022.11. ~ 2024.6.) 공사	- (2021. ~ 5) 건축기획 용역 - (2022 ~ 2023)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 (2023.5. ~ 12.) 설계	2025년 6월 개관 예정 - (2024. 1. ~ 12.) 공사 *우선시공분 1월 착공, 본공사 5월 착공
4	충청	- (2021. ~ 4) 건축기획 용역 - <u>(2023 ~ 5)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u> - (2022.5. ~ 12.) 설계 - (2023.1. ~ 2024.6.) 공사	- (2022 ~ 12) 건축기획 용역 - (2023. ~ 12)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 (2023.1. ~) 설계공모및 용역	2025년 10월 개관 예정 - (~ 2024. 6.) 설계 - (2024.8 ~ 2025.10.) 공사

자료: 통일부

충청권 통일+센터의 경우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공공건축물 건립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 발생하였고, 설계용역 중 공사비 정밀 계산에 따라 건립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립계획 조정 검토를 위한 절차와 설계용역 재반영에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통일부는 금년 6월 중 설계가 완료되고 7월 공사 발주, 8월 착공 및 2025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추가적인 지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통일부는 균형 있는 통일행정 서비스의 제공, 지역사회 통일 거점의 확보

및 통일미래 역량 강화, 통일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통일+센터 건립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당초 계획에 없던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의 신규 추진

내역사업인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변경 집행을 통해 일반용역비(210-14) 1억원을 조성¹⁴⁾하여 신설한 사업으로,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탈북민 토크콘서트)’ 용역 관련 비용으로 8,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0	0	-	100	100	80	-	20	1,226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연두업무보고('23.1.27.) 시 대통령의 지시('우리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에 따라, 2023년 9월 통일인식확산팀을 신설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의 연내 이행을 위해 동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역별로 전국의 5개 도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없는'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개최 횟수를 최소화하고 기존사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소요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설명함.

14) 통일정책추진(1031-300)의 일반용역비(210-14)에서 5,500만원,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의 일반수용비(210-01)에서 4,500만원을 각각 내역변경(2023. 8.29.)하여 1억원을 조성함.

< 2023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행사 개최 >

날짜	장소	강연자	내 용	참석자	세부내역
9.20	서울	정○○(방송인), 정○○(대학생)	▪ 젊은 탈북민들이 말하는 생생한 북한의 실상	장마당 세대, 청중 100여 명	용역사업비 (210~14) 80백만원 * 무대 설치, 행사운영비, 홍보비 등
10.6	부산	조○○(영화감독), 박○○(영화감독)	▪ 탈북민 출신 영화인들의 북한인권 이야기 ▪ 부산국제영화제, 동네방네비프 협업(인권영화‘타인의 삶’상영)	지역주민 50여 명	
11.3	대전	정○○(방송인), 정○○(대학생)	▪ 장마당 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하는 책에 없는 북한이야기	민주평통 대전 청년자문위원 등 100여 명	
11.25	목포	김○○(한의사)	▪ 북한 의료인이 겪은 무상의료제도의 허상	지역주민 70여 명	
12.6	춘천	강○○(통일전담 교육사), 엄○○(통일교육원 교수)	▪ 북한 무상교육의 실태와 사교육 현실 등	지역주민, 대학생 등 70여 명	

자료: 통일부

그러나 내역변경 통해 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긴급성에 대해서는 의문시되는 바,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통일인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충실한 계획을 통해 정규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봄.¹⁵⁾

15)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토크콘서트 확대(17회) 추진을 위해 2024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을 정규예산에 편성하였음.

3)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현액 31억 1,600만원 중 27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 9,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161	3,161	-	△45	3,116	2,721	395	86.1	87.3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에 4억 1,800만원,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에 15억 5,400만원,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에 7억 4,9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제통일기반조성	3,161	3,161	△45	3,116	2,721	395
·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	431	431	-	428	418	10
·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1,860	1,860	△45	1,818	1,554	264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870	870	-	870	749	121

자료: 통일부

□ 적정 예산과목 편성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2023년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는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형성에 1,200만원, 대북정책 설명에 7,400만원, 국제회의 및 통일공공외교 활동에 2억 5,100만원 등 총 3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국내통일 기반조성(1031-301)의 ‘2023 방방곡곡 北스토리’ 사업 용역(210-14)을 위해 4,500만원을 내역변경하고, 국제사회통일공감대 사업 관련 임차료 충당에 2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예산현액은 2억 9,000만원임.

이 중 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을 불용함.

< 2023년도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 일반수용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본예산	추경(A)						
337	337	-	△47	290	140	-	149

자료: 통일부

일반수용비 불용의 주요 내용은 ‘국제회의 및 통일 공공외교 활동’ 내 ‘해외여론주도층 활동 지원’에서 1,800만원, ‘2030세대 통일공공외교 활동 지원’에서 1억 3,200만원임.

당초 2023년 통일부의 사업예산 편성시 국외업무여비(220-02)와 업무추진비(240-01)를 포함하여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나, 예산 협의 과정에서 해당 과목들이 제외되고 일반수용비(210-01) 2억 3,500만원과 국내여비(220-01) 1,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음.

사업의 취지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회의 참가, 글로벌 캠페인 개최·참여, 현장견학 워크숍 등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고 이에 필요한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함께 편성되었어야 했지만,

정부 제출 예산안에 해당 예산과목들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일반수용비가 불가피하게 불용되었다는 설명임.

통일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¹⁶⁾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적정 예산과목을 반영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6) 통일부는 2024년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과목(일반용역비)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인 바, 낙찰차액 외에는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임.

3. 북한정세분석(1500 프로그램)

가. 개 요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1500)은 북한정세분석 체계구축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적시성과 실효성 있는 정세분석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대북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역량 강화’, ‘북한자료센터 운영’ 등 2개의 단위 사업과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정세분석 역량 강화, 북한자료센터 운영, 통일정보자료센터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13,928	16,228	16,228	18,964	12,203	13,998
□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1533 단위사업)	10,513	4,274	4,274	6,681	5,900	4,159
○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302)	376	360	360	360	348	-
○ 정세분석 역량 강화(307)	1,415	1,846	1,846	1,846	1,764	2,282
○ 북한 종합 DB 운영(정보화)(501)	532	-	-	-	-	-
○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502)	8,190	2,068	2,068	4,475	3,789	1,877
□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 단위사업)	3,416	11,954	11,954	12,284	6,303	9,839
○ 북한자료센터 운영(308)	641	1,307	1,307	1,307	1,281	1,011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310)	2,774	10,647	10,647	10,977	5,022	8,828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1533-302)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표준화된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경제활동·주민생활·주민의식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공개 보고서 발간 등 조사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용역 사업임.

<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 내용 >

과업	내용
공개용 보고서 발간	- 탈북민 대상 2013~2022년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
파일럿 설문 조사	- 기존 설문문항 개편 및 관련 파일럿 설문조사 실시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3억 6,000만원으로, 이 중 96.7%인 3억 4,8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 900만원, 집행잔액 300만원 등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60	360	-	-	360	348	12	96.7	96.7

자료: 통일부

예산 집행 상세내역을 보면 조사 수행을 위한 인건비 1억 3,500만원, 면접 사례비·조사원 수당·면접수집활동비 등의 경비 1억 5,100만원 등이 집행됨.

< 2023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비목(세목코드)	예산편성내역(연구비 산출근거 포함)		세부집행내역	
	내 용	금액	내 용	금액
일반수용비(210-01)	자문·평가사례비, 회의준비비 등	11	자문·평가사례비, 회의준비비 등	9.8
국내여비(220-01)	면접수행 및 업무협약	1.8	면접수행 및 업무협약	0.1
사업추진비(240-01)	업무협약 등 간담회비	3.2	업무협약 등 간담회비	3.2
일반연구비(230-01)	북한 심층정보 수집 용역비	344	북한 심층정보 수집 용역비	335
	인건비(연구팀·조사팀)	170	인건비(연구팀·조사팀)	135
	경비(여비·조사사례비·잔차관리비 등)	119	경비(여비·조사사례비·잔차관리비 등)	151
	기타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등)	55	기타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등)	49
합 계		360		348

자료: 통일부

2) 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은 국내외 북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공개정보관리실(舊 북한공개정보센터) 및 정보상황실 운영, 북한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정리·분석 등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18억 4,600만원 중 95.6%인 17억 6,4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 900만원, 집행잔액 7,300만원 등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846	1,846	-	±18	1,846	1,764	82	95.6	95.6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정보상황실 운영’, ‘위성정보센터 운영’, ‘통일·북한연구 신진학자 양성’,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사업이 있음.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에 1억원, ‘공개정보관리실 운영’에 3억 300만원, ‘정보상황실 운영’에 8억 9,200만원, ‘위성정보센터 운영’에 7,200만원, ‘통일·북한연구 신진학자 양성’에 8,000만원,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에 3억 1,6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정세분석 역량 강화	1,846	1,846	±18	1,846	1,764	82
·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133	133	-	133	100	33
·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舊 북한공개정보센터)	290	290	+14.5	290	303	2
· 정보상황실 운영	919	919	△17.7 +1.7	919	892	10
· 위성정보센터 운영	74	74	+1.5	74	72	3
· 통일·북한연구 신진학자 양성	80	80	-	80	80	-
·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350	350	-	350	316	34

자료: 통일부

3)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1533-502)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사업은 북한정보 자료수집 확대 및 정보제공의 다양성 필요에 따라 1차 사업은 내부 분석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은 내부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대국민포털 개편사업으로 진행됨. 내부적으로 북한정보 관련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체계를 구축하며, 「북한정보포털」개편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북한정보서비스를 확충함. 2023년도에는 본예산(유지관리) 20억 6,800만원 및 이월액(구축) 24억 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4억 7,500만원이었으며, 4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8,600만원이 불용됨.

< 2023년도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68	2,068	2,407	-	4,475	3,789	-	686	183.2	84.7

자료: 통일부

2023년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북한정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고도화 △북한정보포털 개편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등임.

< 2023년 예산안 상세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안 상세 편성내역	비목	상세 집행내역	불용액
① AI·빅데이터 구축(이월) : 2,407 - 인프라 증설 - 인공지능 모델 개발 - AI·빅데이터 기반 대국민 포털 구축 - 빅데이터 정비·관리	자산취득비 (430-01) 일반연구비 (260-01) 관리용역비 (210-15)	2,407	-
② AI·빅데이터 유지관리 : 1,964 - 분석시스템·북한정보포털 유지관리	관리용역비 (210-15)	1,284	680
③ 기타운영(감리비 등 기타) : 104 - 국내 데이터 거버넌스 등 : 104 * 각종 수수료(조달수수료 등) 92백만원 * 업무추진비 12백만원	일반수용비 (210-01) 사업추진비 (240-01)	98	6
합 계		3,789	686

자료: 통일부

4)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308)

북한자료센터 운영사업은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관리하여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북한정세분석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3억 700만원 중 98.0%인 12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및 사업 낙찰차액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307	1,307	-	±8	1,307	1,281	26	98.0	98.0

자료: 통일부

2023년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북한자료 디지털화, 파본 북한자료 복원·수리, 통일·북한 관련 원문 DB 구축 등이 있고, 센터 소장 도서·영상 등 자료 지원과 센터 내 견학 및 촬영 지원을 추진하였음.

< 2023년도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 추진 실적 >

사업 내용	추진 실적
북한자료 디지털화 사업	‘조선신보’ 등 마이크로필름자료 12,181점 393,272면
파본 북한자료 복원 및 수리 사업	‘붓나무’ 등 69권 5,702면
통일 및 북한관련 원문 DB 구축 및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통일부 발행도서 10종 2,509면 DB화
북한 전자자료 구입 사업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등 전자자료 5,389점

자료: 통일부

5)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서초)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하기 위하여 직접 센터를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00억 6,470만원 중 47.1%인 50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고, 고양시의 부지변경 요청('23.11)으로 공사 일정이 순연('24.12월 착공 예정) 되면서 59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0,647	10,647	330	-	10,977	5,022	-	5,955	47.1	45.7

자료: 통일부

□ 부지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면밀한 사업추진 필요

동 사업은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을 통해 현재 공간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던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하고, 통일·북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9억원, 부지 6,600㎡(약 2,000평), 건축연면적 8,463㎡(약 2,560평) 규모로 고양시에 부지를 선정하여 2023년도에는 착공 및 공사를 시작하고 2025년도 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음.

< 기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계획 >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주요기능	△통일·북한도서관으로서의 핵심기능 강화(전문·대표도서관) △북한자료 디지털화 및 대국민 이용편의 제고(디지털도서관) △통일사료의 체계적 수집·보관·전시(통일사료관) - 주요시설 : 보존서고, 어린이열람실, 일반열람실, 북한·특수 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연구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사무공간, 강당, 전시관 등	
건립규모	△부지 6,600㎡(약 2,000평), △건축연면적 8,463㎡(2,557평) - 지하1·지상3층	
총사업비	△489억(보상비 201억, 공사비 252억, 설계비 11억, 감리비 25억, 부대비 0.6억)	
<사업 집행절차 및 일정> 신축 계획 협의 (부지 관할 지자체) (‘21. 1 ~ 12) → 기재부 예산 협의 (총사업비 관리 등) (‘21. 2~12) → 부지 계약 및 매입 (‘22. 9.) 개관 준비 (‘25년말) ← 공사 조달 발주·계약 / 착공·공사 (‘23. 10. / ‘23. 11. ~ ‘25.) ← 기본 및 실시설계 (‘22. 9. ~ ‘23. 9.) ↓		

자료: 통일부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조감도 >



자료: 통일부

그러나, 고양시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세차례의 부지변경 요청('22.9월/'23.6월/'23.11월)에 따라 고양시와 부지변경 계약을 체결('24.5.24)하였고 부득이 착공 등 사업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음.

부지변경 요청 사유로는 첫째,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에 인접한 곳이 국토교통부 사업인 K-UAM 수도권 2단계 실증노선 및 버티포트 구축지역¹⁷⁾으로 최종 확정('23. 5월) 됨에 따라 인접 부지개발에 따른 소음과 안전문제 발생우려를 제기하였고, 둘째, 해당 부지에 고양시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계약한 부지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이에 따른 착공 진행 불가에 따른 설계 중지로 설계비 기성금 잔액 5,000만원, 공사비 등 59억 500만원, 총 59억 5,500백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17)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K-UAM: Urban Air Mobility)은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륙과 착륙이 가능한 비행체이고, 정해진 이착륙장을 버티포트(vertiport)라고 함. 국토교통부는 '23년에 K-UAM 1단계 비도심 개활지 실증을 시작으로, '24년에는 2단계 도심 실증에 착수할 계획임.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기능·비목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 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 액	예산 액
	본예 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 액			
· 통일정보자료 센터 건립	10,647	10,647	330	-	10,977	5,022	10,647	4,742	-	5,955	8,828
- 건설보상비 (410-00)	4,742	4,742	-	-	4,742	4,742	4,742	4,742	-	-	4,662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109	-	109	109	-	-	-	-	-
- 실시설계비 (420-02)	-	-	221	-	221	171	-	-	-	50	-
- 공사비 (420-03)	5,445	5,445	-	-	5,445	-	5,445	-	-	5,445	3,776
- 감리비 (420-04)	435	435	-	-	435	-	435	-	-	435	373
- 시설부대비 (420-05)	25	25	-	-	25	-	25	-	-	25	17
합 계	10,647	10,647	330		10,977	5,022	10,647	4,742	-	5,955	8,828

자료: 통일부

현재 통일부는 2024년 내에 착공 및 공사가 시작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연된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계획을 조정하였음.

< 조정 후 사업계획 변경 주요내용 >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건립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7-1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6	부지 변경계약 체결 (24.5.24)
부지대금	186억원	162억 9,673만원	
건립규모	△부지: 6,600㎡(약 2,000평) △건축연면적: 8,463㎡(2,557평) - 지하1·지상3층	△부지: 4,120㎡(1,246평) △건축연면적: 8,463㎡(2,557평) - 지하1·지상3층	
총사업비	△489억 - 보상비 201억 - 공사비 252억 - 설계비 11억 - 감리비 25억 - 부대비 0.6억	△474억 - 보상비 177억 - 공사비 252억 - 설계비 19억 - 감리비 25억 - 부대비 0.6억	설계비 증액분 7.9억 고양시 부담
사업일정	△착공 '23.11. △준공 '25.10. △개관 '25.말	△착공 '24.12. △준공 '26.11. △개관 '27.상반기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부지변경에 따라 사업 지연이 발생한 것이 계약 상대방인 고양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변경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인도적 문제해결(2100 프로그램)

가. 개 요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이산가족, 납북피해자 문제, 북한인권개선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및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등 총 3개의 단위사업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3,798	6,735	6,735	6,735	6,048	10,254
□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2133 단위사업)	1,018	1,181	1,181	1,181	1,125	1,326
○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302)	414	422	422	422	412	504
○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306)	235	323	323	323	311	406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정보화)(505)	369	436	436	436	402	416
□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2135 단위사업)	1,337	4,081	4,081	4,081	3,520	7,509
○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302)	333	2,484	2,484	2,442	2,407	5,794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303)	602	722	722	764	717	860
○ 북한인권재단 운영(304)	0	475	475	475	0	475
○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501)	402	400	400	400	397	380
□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2137 단위사업)	1,443	1,473	1,473	1,473	1,402	1,419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301)	1,443	1,473	1,473	1,473	1,402	1,419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2133-302)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사업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를 운영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홍보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4억 2,200만원 중 4억1,200만원이 집행되고, 1,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22	422	-	±18	422	412	10	97.6	97.6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는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지원에 8,200만원, 이산가족 초청 행사 및 지원 사업에 3억 3,0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422	422	±18	422	412	10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지원	100	100	-18	82	82	-
· 이산가족 초청행사 및 위로사업	322	322	18	340	330	10

자료: 통일부

2)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은 남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피해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액 4억 6,000만원 중 2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51.1%) 되었고, 2023년도 예산액 3억 2,300만원 중 3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3%) 되었으며, 1,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23	323	-	-	323	311	12	96.3	96.3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전후남북자가족단체 지원 1억 8,500만원, 남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1억 1,300만원(남북자보상심의위 운영 등 지원 9,800만원, 귀환남북자 사회적응지원 용역 1,500만원),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에 1,3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323	323	-	323	311	12
· 전후남북자가족단체 지원	185	185	-	185	185	-
· 남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119	119	-	119	113	6
·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19	19	-	19	13	6

자료: 통일부

□ 억류자에 대한 정의 등 관련자 보상을 위한 법률 보완 필요

통일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남북자법’)에 근거하여 2023년에 ‘남북피해자’ 위로금 지급을 위한 기타 보전금(310-04)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고 이 중 8,900만원을 집행함.

< 2023년도 남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타 보전금(310-04)	95	95	-	95	89	6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남북피해자(「전후남북자법」에 따른 남북자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¹⁸⁾에게 정착금, 피해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법률상 남북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의미함.

북한에 현재 억류 중인 사람들 중에는, 입북(入北) 이후 구금, 체포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 중인 사람들이 있고, 통일부는 이를 실무적으로 “억류자”로 분류하였음.

18) 「전후남북자법」에 따르면, “남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이고,

- “귀환남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남북자(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이며,

- “남북피해자”란 “① 3년 이상 남북된 귀환남북자 ② 3년 이상 남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남북자의 가족과 ③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③ 남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남북자 중에서 남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통일부는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이후 총 3,835명이 납북되었고 이 중 3,319명(86.5%)이 귀환하여 현재 북한 내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66건을 접수하여 그 중 443건을 인정하여 피해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음.¹⁹⁾

< 전후납북자법에 따른 납북피해자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어부	KAL기	군·경	기타	
						국내	해외
피납자		3,835	3,729	50	30	6	20
귀환자	송환자	3,310	3,263	39	-	-	8
	탈북귀환자	9	9				
미귀환자(억류자)		516	457	11	30	6	12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억류자’도 「전후납북자법」에 따른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2023년 11월 2일(제58차), 21일~22일(제59차, 서면) 「전후납북자법」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종전까지 억류자로 분류되던 김정욱 선교사 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그 가족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였음.

통일부는 북한 당국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납북자’와 ‘억류자’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

19) 『2024 북한인권보고서』 p. 29.

러는 「전후납북자법」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억류자도 납북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결과 >

구분	성명 (생년)	억류시기	협의 (北주장)	北 재판결과	가족	피해위로금 ^주
제58차 (4명)	김정옥 (64년생)	'13.10.~	정보원 첩자	무기노동교화형 (‘14.5.30.)	아내, 아들 2명	총 89,284천 원
	김국기 (54년생)	'14.10.~	정보원 첩자	무기노동교화형 (‘15.6.23.)	아내	
	탈북민 김○○	'16. 3.~	-	-	재남 가족 (딸, 손녀2)	
	탈북민 박○○	'16. 3.~	-	-	재남 가족 (母)	
제59차 (1명)	최춘길 (59년생)	'14.12.~	정보원 첩자	무기노동교화형 (‘15.6.23.)	아들	

자료: 통일부(개인별 지급한 피해위로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한편, 국군포로²⁰⁾와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각각 개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지만, 억류자²¹⁾에 대한 지원은 ‘억류자가 납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²²⁾

따라서 통일부는 앞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억류자를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 등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억류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0) 국방부 소관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군포로송환법’)

21) 2013년 이후 현재 6명.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하여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 억류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 우리 국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음.

22) 억류자가 발생한 원인 자체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현실에 기인한다는 측면에서, 「전후납북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억류자 및 그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보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3)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2133-505)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은 이산가족 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4억 3,600만원 중 4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2%)되었고, 3,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36	436	-	-	436	402	34	92.2	92.2

자료: 통일부

4)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사업은 북한인권 정책 수립·추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국제사회 논의를 지원하고, 북한인권 실상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24억 8,400만원이고, 예산현액 24억 4,200만원 중 98.6%인 24억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3,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484	2,484	-	△42	2,442	2,407	35	96.9	98.6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 ‘북한인권 개선 정책기획 조정’ 사업에 4,000만원,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사업에 2억 6,800만원,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사업에 9,900만원,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에 20억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484	2,484	△42	2,442	2,407	35
·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55	55	△13	41	40	1
·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323	323	△28	296	268	28
·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105	105	△1	105	99	6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2,000	2,000	-	2,000	2,000	-

자료: 통일부

□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집행 관리 필요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은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북한인권 참고자료 개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환기 등 인식 조성을 위해 익숙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으로,

2023년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9,9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105	105		105	99	6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북한인권영화 다시 보기: 진실을 비추다’ (9.13.~15.) 사업을 추진하였음.

당초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사업에는 임차료(210-07)가 편성되지 않았지만, 동일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간 조정을 통해 총 800만 원을 조성하고 ‘북한인권영화 다시보기’를 위한 장소 임차료로 집행하였음.

콘텐츠 개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계획에도 없던 ‘북한영화 상영’을 위

한 장소를 임차하기 위한 임차료로 집행하였는 바, 상업성이 없는 영화 콘텐츠 제작하면서 영화상영 장소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통일부는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 조정을 최소화하고 집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 강화 필요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은 북한인권의 증진을 위한 인력양성, 문화행사, 공론화 등의 시민사회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20억 원을 편성하고 공모를 통하여 18개 민간단체(상반기 15개, 하반기 3개)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 2023년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320-01)	2,000	2,000		2,000	2,000	-

자료: 통일부

< 2023년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민간단체 공모현황 >

구 분	신청 단체 수	총 신청액	비고
상반기	36개	42억원	15개 단체 선정, 총 18.6억 원 교부
하반기	16개	9.8억원	3개 단체 선정, 총 1.4억 원 교부

자료: 통일부

< 2023년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선정 보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보조기관명	교부액	집행액	잔액	사업평가
1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120	119	1	미흡
2	(재)국제학술원	150	150	-	
3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92	76	16	미흡
4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28	27	1	

구분	보조기관명	교부액	집행액	잔액	사업평가
5	(사)북한인권	103	101	2	
6	북한인권개선과 자유 통일을 위한 모임	26	25	1	
7	(재)북한인권과 민주화실천운동연합	154	154	-	
8	(사)북한인권시민연합	250	249	1	
9	(사)북한인권정보센터	235	230	5	
10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183	183	-	
11	(사)세이프엔케이	139	139	-	
12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88	88	-	
13	통일맘연합회	30	30	-	
14	(사)통일아카데미	50	44	6	
15	평화한국	150	137	13	
16	(사)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	47	46	1	
17	피스브릿지	78	74	4	미흡
18	(사)휴먼아시아	77	62	15	
합 계		2,000	1,934	66	

자료: 통일부

2023년 신규사업인 동 사업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평가용역’을 진행하였음.

보조금사업 참여단체의 개별 사업 및 지원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환류, 민간단체 대상 교육·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 용역에서 대면·실사평가를 통해 사업평가(기본역량, 사업과정, 사업성과) 및 회계평가를 진행(최종평가 총 200점, 사업평가 100점, 회계평가 100점)하였음.

18개 보조금 단체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 (주)과거청산통합연구원, 피스브릿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3개 단체는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며, 교부액의 일부액(9~20%)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단체도 일부 발견됨.

< 2023년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 미흡 평가 >

수행기관명	사업평가 ¹⁾	회계평가 ²⁾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54.28(18위)	80.00(7위)
피스브릿지	56.32(17위)	80.00(6위)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61.00(15위)	70.00(18위)

자료: 통일부

주1) 사업평가: 기본역량, 사업과정 및 사업성과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

주2) 회계평가: 회계관리를 계량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산출

통일부는 2023년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평가용역’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보조기관(단체) 및 교부액의 일부액을 집행하지 못한 보조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조기관(단체)에 대한 사전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²³⁾

23) 통일부는 사업의 평가결과는 차년도 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5)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은 「북한인권법」 제13조²⁴⁾에 따라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및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기록하고,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수집·연구·보존·발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7억 2,200만원이고 예산현액 7억 6,400만원 중 93.8%인 7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722	722	-	±42	764	716	47	99.3	93.8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5억5,800만원,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사업에 4,200만원, ‘조사결과 활용’ 사업에 1억1,7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722	722	42	764	717	47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633	633	±33	602	558	44
·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43	43	△1	44	42	2
· 조사결과 활용	44	44	+74	118	117	1

자료: 통일부

24) 「북한인권법」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계획에 없던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한 전용 등 부적절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한 예산이 2023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전용 및 세목조정 등을 통해 총 1억 4,100만원을 집행함.

<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비용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발간비	감수비 번역비 포함	발송비	소계	총계
국문판 (3.30 발간)	44	8	7	59	141
영문판 (7.7 발간)	51	21	10	82	

자료: 통일부

당초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의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을 위한 예산(4,400만원) 중 자료 발간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는 2,0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2135-302)의 일반수용비에서 4,200만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의 국내여비, 일반연구비에서 2,250만원, ‘북한인권기록 운영’ 및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일반수용비에서 각각 3,500만원과 2100만원 등 총 1억 2,100만원을 마련하였음.

<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위한 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3.5.2.)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210-01	42	북한인권기록 센터 운영 (2135-303)	210-01	2023북한인권보고서 발간비
전용 (‘23.6.28.)	북한인권기록 센터 운영 (2135-303)	220-01	12.5	북한인권기록 센터 운영 (2135-303)	210-01	2023북한인권보고서 발간비
		260-01	10			
내역 사업간 조정	북한인권기록 센터 운영 (2135-303)	210-01	35.5	북한인권기록 센터 운영 (2135-303) 조사결과 활용	210-01	2023북한인권보고서 발간비
	북한인권기록 운영					
	북한인권기록 센터 운영 (2135-303) 조사수집 및 문헌조사	210-01	21			

자료: 통일부

이 외 총액인건비 비대상 북한인권기록센터 기본경비(7018-264)에서도
인권보고서 추가 인채를 위해 2,541만원을 집행한 바 있음.²⁵⁾

또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동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하여 북한인권알리기
토크콘서트(5.10), 독일 설명회(5.29.-6.2.), 주한 외국공관 대상 설명회 2회(1
0.19, 12.19) 등 『북한인권보고서』 홍보사업을 위해 2,242만원을 집행함.

25) 7011-257(인도협력국 기본경비) → 7018-264(센터 기본경비): 2,500만원 전용 등 포함

＜ 북한인권 실태 설명회 등 세부 집행내역 ＞

(단위: 천원)

행사명	집행액(예산과목별)	
북한인권알리기 토크콘서트(5.10.)	국내여비(220-01)	40
「2023북한인권보고서」 설명회 (독일, 5.29~6.2.)	임차료(210-07)	800
	국외여비(220-02)	14,111
	사업추진비(240-01)	1,906
	소계	16,817
주한 외국공관 대상 북한인권 실태 설명회 개최(1차 10.19)	일반수용비(210-01)	330
	국내여비(220-01)	70
	사업추진비(240-01)	207
	소계	607
주한 외국공관 대상 북한인권 실태 설명회 개최(2차 12.19)	일반수용비(210-01)	4,123
	국내여비(220-01)	116
	사업추진비(240-01)	715
	소계	4,954
합 계		22,418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사업추진 경과 설명자료 중 통일부장관의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2022. 8.17.)에서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바,²⁶⁾ 2023년도 예산안에 동 사업을 반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됨.

26) < 통일부의 사업추진 경과 설명자료 >

구 분	내 용
발간 목적	○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 - 그간 국회에 북한인권 관련 보고해 왔으나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추진 경과	○ 통일부장관,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표명(’22.8.17, 동아일보 인터뷰) * “북한 인권관련 여러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그 해의 북한인권 상황을 인권백서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 「(가칭)북한인권현황」 추진 방향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보고(’22.8월) ○ 「2023 북한인권보고서」 기초 자료 정리 및 초안 작성 ○ 전문가 감수·자문 * △북한인권 전문가 △탈북민 출신 전문가 △법률 전문가 감수 ○ 유관기관(법무부·외교부)·북한인권증진위원 대상 의견조회 실시 및 공개·발간 ○ 발간 계기 내신기자단 테마브리핑(3.30), 외신기자단 간담회(4.10) 등 실시
편집 방향	○ 일반 국민들이 북한인권 실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태’ 중심으로 기술 ○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17년~’22년) ○ ‘균형된’ 시각으로, 권리별 실태를 ‘객관적’으로 기술
자료 출처	○ ’17년~’22년 사이 북한인권 실상에 관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진술 * ’17년~’22년간 3,412명 조사

동 사업은 국회의 예산 심사 및 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업에 과도한 전용 등을 통해 추진한 측면이 있음.

통일부는 향후 세사업 추진에 있어서 과도한 전용 등 변경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충실한 사업 계획을 통해 필요한 사업비를 정규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6)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3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75	475	-	-	475	-	475	-	-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 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예산 세부 편성내역 및 합계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재단 사무실 설치	- 설치공사비(인테리어, 전기·소방·설비 등) 365 - 설계 및 감리·부대비 10	375	-	-
사무실 임대·관리비	2개월분 사무실 임대·관리비 100	100	-	-
합계		475	-	-

자료: 통일부

□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필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²⁷⁾에 근거, 법 시행일에 맞추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법 제12조²⁸⁾에 따른 재단 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5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800	800	-	800	-	-	-	800
2020	500	475	-	475	-	-	-	475
2021	475	475	-	475	-	-	-	475
2022	475	475	-	475	-	-	-	475
2023	475	475	-	475	-	-	-	475

자료: 통일부

27) 「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8)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에 따라 출범예정 연도인 2016년도 예비비 46억 7,600만원, 2017년도 117억 5,500만원, 2018년도 108억 5,800만원, 2019년 8억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4억 7,500만원 등의 예산액(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목적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어 예산 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범 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²⁹⁾

29) 참고로,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이사 추천 협조 요청 공문을 총 13차례 발송한 바 있으며,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에 따라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할 경우 재단 출범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임.

< 재단 이사추천 관련 통일부 공문발송(총 13회) >

2016년 4회(8.11, 10.5, 11.4, 12.15), 2017년 1회(8.24) 2018년 3회(3.2, 4.19, 11.9), 2019년 1회(8.28), 2020년 1회(3.27), 2022년 1회(7.25), 2023년 1회(8.30.), 2024년 1회(7.31.).

7)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2135-501)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각종 정보 및 북한인권 침해 사건을 기록·보존하기 위해 DB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북한인권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4억원 중 99.3%인 3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00	400	-	-	400	397	3	99.3	99.3

자료: 통일부

8)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2137-301)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사업은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0. 9. 27. 시행)에 근거하여 6.25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납북피해자에 대한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14억 7,300만원 중 14억 200만원이 집행되고, 7,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473	1,473	-	-	1,473	1,402	71	95.2	95.2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에 1억원, 기념관 운영에 13억 2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2023년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473	1,473	-	1,473	1,402	71
·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100	100	-	100	100	-
· 기념관 운영	1,373	1,373	-	1,373	1,302	71

자료: 통일부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2300 프로그램)

가. 개 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교육 강화, 자립·자활 기반 확충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 및 행정지원 등 2개의 단위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73,473	88,372	88,372	88,372	74,960	83,897
□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2331 단위사업)	53,183	54,537	54,537	54,767	54,140	52,838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300)	15,760	16,322	16,322	16,552	15,930	15,987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302)	36,913	37,061	37,061	37,061	37,061	36,273
○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500)	510	1,154	1,154	1,154	1,149	578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2337 단위사업)	20,290	33,835	33,835	33,605	20,820	31,059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301)	10,268	20,981	20,981	20,981	10,086	18,757
○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302)	10,022	12,854	12,854	12,624	10,734	12,302

자료: 통일부

202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집행액은 749억 6,000만원으로, 2023년 통일부 일반회계에서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572억원을 제외한 집행액 1,990억 4,700만원의 37.6%에 해당하는 금액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사용되고 있음.

각 세부사업별 결산 지출액 비중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49.4%,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1.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13.4%,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4.3%,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이 1.5% 순이며, 대부분의 예산이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 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등으로 집행되고 있음.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정부·지자체·민간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체계적인 정착지원 제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63억 2,200만원 중 97.6%인 159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6,322	16,322	-	230	16,552	15,930	622	97.6	96.2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에 3억 7,400만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에 45억 6,000만원,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에 33억 2,400만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5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71억 2,800만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에 1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6,322	16,322	230	16,552	15,930	622
·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167	167	230	397	374	23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4,827	4,827	-	4,827	4,460	367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3,549	3,549	-	3,549	3,324	225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500	500	-	500	500	-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7,128	7,128	-	7,128	7,128	-
·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151	151	-	151	14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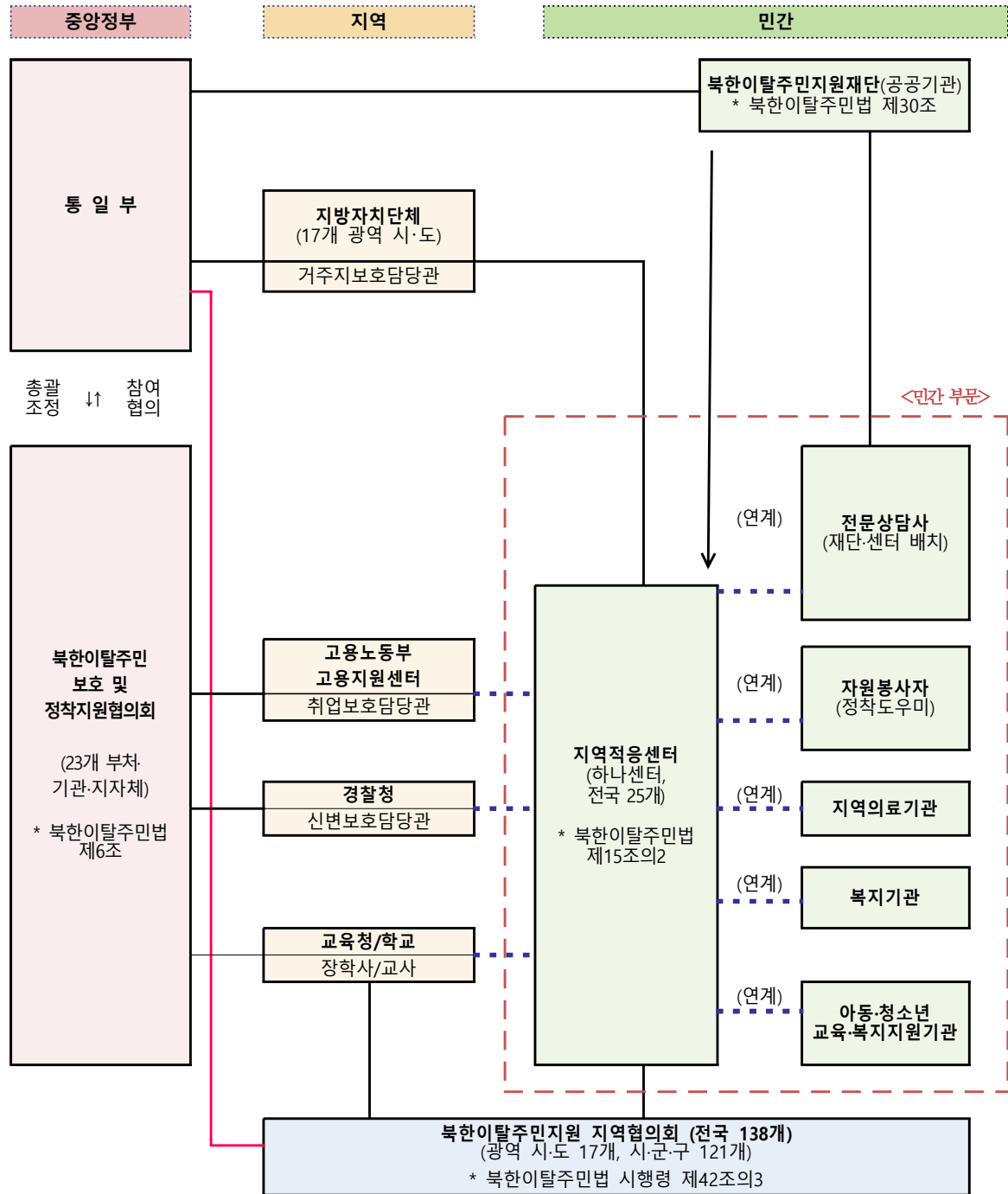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체계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지 차원³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함)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차원에서는 남북하나재단 및 지역적응센터가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음.

30) 거주지 차원에서는 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구성도 ＞



자료: 통일부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함)에
서는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2주간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을 비롯한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취업지원, 사회보장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게 됨.

<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주요 내용 >

구분	항목	내용
사회 적응 교육	기본교육 (하나원)	- 하나원 12주 400시간 교육 * 연령대·성별 7개반 운영(영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경로) * 우리사회 이해, 성평등·법정교육,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 탐색,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 등 5개 분야
	지역적응교육 (지역적응센터)	- 전국 지역적응센터 8일, 50시간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 * 지역사회 이해, 진로 및 취업지원, 사회적응, 정서안정 등
정착 금	기본금	1인 세대 1,000만원, 2인 세대 1,600만원, 3인 세대 2,100만원, 4인 세대 2,600만원, 5인 세대 3,100만원, 6인 세대 3,600만원, 7인 세대 이상 4,100만원 * 초기지급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분기별 분할 지급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계속 거주 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연령가산금(보호결정일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800만원 - 장애가산금 : 1,540만원(중증장애), 360만원(초) ※ 「장애인복지법」 내 장애 등급 폐지('19.7.1. 시행)로 장애가산금 지원 금액 변경, 중증은 기존 1~3급, 경증은 기존 4~6급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시) : 1개월에 80만원(최대 9개월분까지 지급)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 : 세대 당 400만원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만원
주거	주택알선	영구·국민·다세대 임대주택 알선(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변경 불가)
	주거지원금	1인 세대 1,600만원, 2인~4인 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2,300만원 * 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취업 장려금	3년간 취업 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새출발장려금	- 기존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절반 이하로 적게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24.1.1. 이후 신규취업하여 6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200만원씩 지급(3번까지 신청가능)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 임금의 1/2를 50만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 ※ 고용지원금은 20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 적용(24년 2분기 자연일몰예정)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립목적 :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기간 :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적용대상 :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 약정금액 : 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기타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 취업지원 바우처
사회 보장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
	학비 지원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 지원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예산이 없던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의 전용을 통한 추진

통일부는 2023년 12월 총 2억 1,000만원의 비용을 집행하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동 사업은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내의 일반수용비(210-01)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의 일반용역비, 일반수용비, 임차료로 전용하여 필요 예산을 마련하였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업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1103)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210-01	20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14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개최
전용 (231122)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210-01	3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01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개최 (210-01 15백, 210-07 15백)
					210-07	

자료: 통일부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업 집행 내역 >

세목	집행금액(원)	내역
210-14 (일반용역비)	30,046,500	일자리박람회 행사장 사용비
	109,999,000	홍보물 제작, 광고비, 인건비, 개막식 및 행사 운영경비
	55,000,000	전시부스 설치 및 장비 사용비
소계	195,045,500	
210-07 (임차료)	4,000,000	일자리박람회 참석인원 (서울, 경기) 수송경비
	1,595,000	일자리박람회 참석인원 (충청) 수송경비

세목	집행금액(원)	내역
	4,530,000	일자리박람회 참석인원 (경북, 경남) 수송경비
	99,000	일자리박람회 물품 이송 차량 임차비
소계	10,224,000	
210-01 (일반수용비)	1,000,000	일자리박람회 안내책자 인쇄 및 제본비
	358,400	일자리박람회 행사 물품 구입비
	165,000	일자리박람회 행사 진행 아나운서 경비
	1,250,000	정착 성공사례 발표자 사례비
	1,495,000	일자리박람회 현수막 설치 및 철거비(서울, 인천)
	528,000	일자리박람회 감사서한 발송비
소계	4,796,400	
합계	210,065,900	

자료: 통일부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참가인원 >

(단위: 명)

총 참가인원	개인 등록자	단체 참가자(755명)		미등록 참가자
		하나센터 등	대안학교 등	
1,248	293	478	277	200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동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였고, 과거에 비해 중견기업 공기업 등 질 높은 일자리 기업 참여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탈북민의 적극적 참여, 구직활동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동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한다면, 국회의 예산 심사 및 승인을 받아 2024년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23년도 11월 말에 예산을 전용하여 12월에 사업을 집행한 것은 다소 급하게 사업이 추진된 측면이 있음.

통일부는 향후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사업과 같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의 예산 심사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방식의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2)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2331-500)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별 맞춤형, 생애 주기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입국 시부터 초기 정착지원과 이후 거주지 정착지원 등 전 과정에 걸친 현황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에는 위기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였음.

이에 따라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시스템 구축비 6억 2,800만원 등이 증가한 11억 5,400만원이 되었고 이 중 99.6%인 11억 4,9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인 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 도 이월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154	1,154	-	-	1,154	1,149	-	5	99.6	99.6

자료: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사업을 위한 성과평가 필요

통일부는 2023년도에 신규 세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에 7억 2,50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세부사업의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된 1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집행내역 >

세사업 명	예산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424백만원 -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421백만원 - 기타 운영지원 : 3백만원(기술평가수당 2백만, 본인인증서비스 1백만)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725백만원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유지보수 (97백만)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선(615백만), 개선사업 감리(13백만)

자료: 통일부

< 2020~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비 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추경 (A)									
2020	1,298	1,298	-	-	-	1,298	1,279	98.5	98.5	-	20
2021	324	324	-	-	-	324	324	69.1	69.1	-	7
2022	430	430	93	-	-	430	509	118.4	118.4	93	14
2023	1,154	1,154	-	-	-	1,154	1,149	99.6	99.6	-	5
2024	578	578	-	-	-	578	-	-	-	-	-

자료: 통일부

「전자정부법」 제68조제1항³¹⁾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202-25호) 제4조³²⁾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시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이에 통일부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대상에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및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이 포함되어 성과관리를 하고 있음.

이와 별개로 「국가재정법」 제85조의6³³⁾, 제85조의7³⁴⁾ 및 기획재정부

- 31) 「전자정부법」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3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대상사업) ① 사전협의 및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대상사업은 예산과목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전자정부사업
 - 가.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등 정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 나.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업무를 출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에 신규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등은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2. 시,도는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계속사업
 3. 시,군,구는 사업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계속사업
 4.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유지관리·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매·임대·설치, 회선 증설·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콘텐츠 제작 사업
- 33)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정보화예산이 10억 이상인 경우 성과평가 수립 및 성과지표 관리가 필요한데,

통일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에 관하여 2021년도 3억 2,400만원, 2022년도 5억 900만원을 집행하여 각각 10억 원 미만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유지관리·운영 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2023년도에는 전체 1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제85조의7 및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0~‘24년도 성과예산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스템 운영 종합평가점수 (정보화)(점)	목표	96.7	-	-	-	-	-	해당년도의 전체 개선요청건수 대비 요청기한 내 개선완료 건수를 측정 종합평가점수 = (요청기한 내 개선완료 건수/총 개선요청건수) * 100점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내에 '시스템 개선요청방', 시스템 증적자료 작성
	실적	96.7	-	-	-	-			
	달성도	96.7	-	-	-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스템 만족도(정보화) (점)	목표	-	60	-	-	-	-	정착지원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점수 (‘21년부터 변경)	설문조사
	실적	-	86	-	-	-			
	달성도	-	143.3	-	-	-			

자료: 통일부

34) 「국가재정법」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을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성과 달성도를 측정함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보화사업에 대해 임의적으로 성과관리를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2337-30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의지 제고를 위해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209억 8,100만원 가운데 48.1%인 100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108억 9,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981	20,981	-	-	20,981	10,086	10,895	48.1	48.1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는 주거지원금 38억 6,600만원, 정착장려금 47억 3,300만원으로 주로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20,981	20,981	-	20,981	10,086	10,895
· 정착기본금	3,721	3,721	-	3,721	895	2,826
· 주거지원금	10,228	10,228	-	10,228	3,866	6,362
· 정착장려금	5,907	5,907	-	5,907	4,733	1,174
· 보로금	937	937	-	937	426	511
· (정착)가산금	163	163	-	163	158	5
· 고용지원금	25	25	-	25	8	17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동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의 지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인원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입국인원 및 입소·수료인원 >

(단위: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입국인원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입소인원	1,311	1,528	1,352	1,189	1,167	437	73	59	176
수료인원	1,297	1,444	1,367	1,111	1,371	538	87	50	144

자료: 통일부

□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내역사업은 예산 현액 209억 8,100만원 중 100억 8,600만원을 집행하여 48.1%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 기간인 2021~2022년도와 유사한 집행률을 기록한 것임.

<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4년 예산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 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 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추경 (A)									
2020	39,321	29,334	-	-	-	29,334	24,315 [24,315]	82.9	82.9	-	5,019
2021	33,865	33,865	-	△1,655	-	32,210	14,823 [14,823]	43.8	46.0	-	17,387
2022	28,005	28,005	-	-	-	28,005	10,268 [10,268]	36.7	36.7	-	17,737
2023	20,981	20,981	-	-	-	20,981	10,086 [10,086]	48.1	48.1	-	10,895
2024	18,757	18,757	-	-	-	-	-	-	-	-	-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동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2023년도 예산은 탈북민 550명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실제 탈북민 입국인원이 196명에 불과하였고, 코로나19 영향 및 국경폐쇄의 지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인원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입국인원 ＞

(단위: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입국인원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자료: 통일부

북한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탈북민 입국인원 추계의 정확성 부족³⁵⁾으로 인해 예산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것인바, 향후 국제 정세 및 북한의 동향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³⁵⁾ 2023년도 예산요구안 작성시 2022년 3월말 기준 입국인원 11명, 6월말 기준 입국인원 19명

4)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고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중 2억 3,000만원 자체전용을 포함한 예산현액 126억 2,400만원 가운데 85%인 107억 3,4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2,854	12,854		-230	12,624	10,734	-	1,890	83.5	85.0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하나원 교육훈련’은 82억 9,300만원, ‘제2하나원 교육훈련’은 24억 4,1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2,854	12,854	△ 230	12,624	10,734	-	1,890
· 하나원 교육훈련	9,832	9,832	168 △ 394	9,606	8,293	-	1,313
· 제2하나원 교육훈련	3,022	3,022	20 △ 24	3,018	2,441	-	577

자료: 통일부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

1) 결산 개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³⁶⁾’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임.

< 2023년도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예산	증감	예산현액			
총 계(A+B)	39,358	443	39,801	37,319	2,482	93.8
정부예산(A)	38,407	424	38,831	36,633	2,198	94.3
1. 사업비	27,776	-	27,776	25,879	1,897	93.2
가.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3,593	△76	3,517	3,513	4	99.9
나. 자립·자활지원	4,663	△279	4,384	4,315	69	98.4
다. 교육개발 및 지원	2,758	△8	2,750	2,727	23	99.2
라.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1,543	403	1,946	1,929	17	99.1
마.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2,262	△40	2,222	2,210	12	99.4
바. 정착금 지급	12,957	-	12,957	11,185	1,772	86.3
2. 인건비	9,051	-	9,051	8,786	265	97.1
3. 경상비	1,580	-	1,580	1,556	24	98.5
4. 예비비*	-	424	424	412	12	97.2
기부금(B)	951	19	970	686	284	70.7

자료: 통일부

주1) 2023년도 정부예산(38,831백만원) = 출연금 37,061백만원 + 결산잉여금 1,770백만원

주2) 예비비 424백만원은 경영평가성과금 충당 비용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재단이 아닌 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재단이 대외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재단은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 사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내부 사용지침을 제정하고, 「상표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업무표장 등록을 거쳐 별칭을 사용하고 있음.

2010년 3월 26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남북하나재단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년 9월 27일에 설립됨. 이후 6차에 걸친 조직 개편을 거쳐 2024년 6월 현재는 2실 4부 1팀(정원 171명, 현원 170명)으로 운영 중임.

남북하나재단의 2023년 수입·지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06억 7,000만원 중 373억 1,900만원이 집행되어 정부출연금 8억 4,000만원, 결산잉여금 13억 5,800만원과 기타수입 8억 6,900만원 및 기부금 집행잔액 2억 8,400만원을 합하여 총 33억 5,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수입·지출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내역	출 연 금 예 산	소계	39,276	424	39,700	36,633	3,067
		정부출연금	37,061	-	37,061	36,221	840
		결산잉여금	1,346	424	1,770	412	1,358
		기타 수입 ³⁷⁾	869	-	869	-	869
	기부금		951	19	970	686	284
	계			443	40,670	37,319	3,351

자료: 통일부

37) 출연금 환입 552백만원, 이자수입 302백만원, 기타수입 15백만원

2) 사업별 검토

2023년 남북하나재단의 사업비(예산현액 기준)는 277억 7,600만원으로, 이 중 93.2%인 258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 9,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사업별	예산액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27,776	-	27,776	25,879	1,897	93.2
1.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3,593	△76	3,517	3,513	4	99.9
2. 자립·자활지원	4,663	△279	4,384	4,315	69	98.4
3. 교육개발 및 지원	2,758	△8	2,750	2,727	23	99.2
4.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1,543	403	1,946	1,929	17	99.1
5.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2,262	△40	2,222	2,210	12	99.4
6. 정착금 지급	12,957	-	12,957	11,185	1,772	86.3

자료: 통일부

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35억 1,300만원, 자립·자활지원 사업에 43억 1,500만원, 교육개발 및 지원 사업에 27억 2,700만원,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사업에 19억 2,900만원,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사업에 22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정착금 지급 사업에 111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음.

사업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정착금 지급 46.7%, 자립·자활 지원 16.8%,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12.9%, 교육개발 및 지원 9.9%,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8.1%,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5.6% 순으로 나타남.

6.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

가. 개 요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은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개성공단 사업지원’,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3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은 철도·도로 관련 출입시설 및 물류센터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임. ‘개성공단 사업지원’ 사업은 개성공단 중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성공단 기업 지원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남북간 통행 발생시 원활한 통행 지원을 위한 남북전자출입 종합지원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한 사업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사업은 민간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남북공동 경제발전계획 추진기반 마련 등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이 중 ‘개성공단 사업지원’은 2020년까지 별도 프로그램이던 ‘개성공단 지원’(3200) 프로그램이 2021년부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5,677	5,117	5,117	5,070	4,391	4,399
☐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3031 단위사업)	3,909	3,224	3,224	3,224	2,961	3,417
○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300)	3,909	3,224	3,224	3,224	2,961	3,417
☐ 개성공단 사업지원 (3032 단위사업)	818	883	883	836	747	733
○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303)	527	592	592	545	458	453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506)	291	291	291	291	289	280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3036 단위사업)	950	1,010	1,010	1,010	683	249
○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312)	950	1,010	1,010	1,010	685	249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3031-300)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은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및 물류센터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이는 청사시설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용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의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남북 출입경 역량을 유지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특구 등 북한 내 남북협력지구로의 통행 재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관리가 요구됨.

2023년 예산액 32억 2,400만원 중 91.8%인 29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224	3,224	-	±1	3,224	2,961	263	91.8	91.8

자료: 통일부

□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 관련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 필요

세부사업인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은 출입사무소의 시설운영,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옥외전광판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32억 2,400만원 중 29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3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3,224	3,224	-	±1	3,224	2,961	-	263	3,417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경의선 출입사무소의 옥외전광판 교체를 위해 공사비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을 위해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조정하여 안전시설보강과 옥상 방수 공사 등의 시설 보수 공사비로 집행하였음.

< 내역사업 조정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사업 조정 (’23.10)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3031-300)	420-03 (공사비)	147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3031-300)	420-03 (공사비)	안전시설보강, 방수 등 시급한 시설 보수에 충당

자료: 통일부

이러한 사업집행 방식에 대해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경의선 출입사무소 옥외전광판 교체공사는 2006년에 개성공단 출입 지원을 위해 설치한 옥외전광판이 노후화로 작동하지 않아 고해상도 LED전광판으로 교체하려던 것으로 남북교류에 대비한 관련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옥외전광판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출입사무소를 관리되지 않는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바 사업의 취소가 적절하지 않아 보임.

둘째, 옥외전광판 교체공사 대신 실시한 안전시설 보강 공사, 옥상 방수 공사, 냉난방기 교체, CCTV 부분 교체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는 안전 및 보안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

중대재해 점검에 의해 지적받은 유류저장고 환기 시설 설치와 시설관리 직원의 요청에 의해 보완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보다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교체 대상인 CCTV 역시 2006년에 설치되어 17년이 경과한 만큼 교체 필요성에 대해 미리 검토하였어야 함.

< 안전시설보강 공사비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집행액	세부내역
경의선 안전시설 보강 공사	55	·중대재해 점검시 지적받은 유류저장고 환기시설 설치 ·수직사다리 등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경의선 C동 옥상 방수 공사	13	·공무직 상시근무시설(C동)의 지붕 누수에 따른 방수
경의선 철도출입시설 냉난방기 교체	45	·철도출입시설 냉난방기의 노후 고장으로 교체
경의선 철도출입시설 CCTV 부분 교체	34	·국정원 보안측정시 지적받은 노후 CCTV 교체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추진 중 안전 및 보안문제의 시급성이 대두되어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목적 내에서 내역사업을 변경하였다고 하지만, 경의선 옥외전광판 교체 사업을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하여 취소하고 해당 예산 전액을 편의적으로 집행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통일부는 출입사무소 관련 시설·설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임의로 사업을 취소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함. 아울러, 경의선·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는 2006년에 준공되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고 있으므로, 문제 발생 이후에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종합적인 시설관리방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의해 안전·보안관리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3032-303)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사업은 개성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개성공단 기업 지원 관련 후속조치와 경영정상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3년 예산액 5억 9,200만원 중 77.3%인 4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592	592	-	△47	545	458	87	77.3	84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개성공단 운영 체계화 4,400만원, 남북협력 지구발전기획단 운영 4억 1,4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592	592	△47	545	458	87
· 개성공단 운영 체계화	57	57	△6	51	44	7
·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535	535	△41	494	414	80

자료: 통일부

3)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3032-506)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사업은 RFID 및 차량번호판 자동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간 도로를 통한 통행·통관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남북간 통행 발생시 원활한 통행 지원을 위한 남북전자출입 종합지원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2023년도 예산액은 2억 9,100만원으로 이 중 99.3%인 2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91	291	-	-	291	289	-	99.3	99.3

자료: 통일부

4)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3036-312)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민간의 정책과정 참여 및 소통 확대, 지자체 교류협력 거버넌스 강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기반 마련, DMZ 통일걷기 지원,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10억 1,000만원 중 6억 8,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7.8%임.

<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010	1,010	-	-	1,010	683	327	67.8	67.8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500만원, ‘지자체 교류협력 거버넌스 강화’ 600만원,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기반 마련’ 1억 2,800만원, ‘DMZ 통일걷기 지원’ 3억 4,800만원, ‘남북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1억 4,6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 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1,010	1,010	-	1,010	683	327
·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133	133	-	133	55	78
· 지자체 교류협력 거버넌스 강화	11	11	-	11	6	5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기반 마련	181	181	-	181	128	53
· DMZ 통일건기 지원	385	385	-	385	348	37
·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300	300	-	300	146	154

자료: 통일부

7. 남북회담(4000 프로그램)

가. 개 요

남북회담 프로그램은 남북대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면서 남북 간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인도 분야별 남북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 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도 남북회담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 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1,947	2,516	2,516	2,438	2,246	2,355
1. 남북회담 추진 (4031 단위사업)	295	354	354	276	147	305
가. 남북회담 추진(300)	295	354	354	276	147	305
2.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4032 단위사업)	1,652	2,162	2,162	2,162	2,099	2,050
가.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302)	1,652	2,162	2,162	2,162	2,099	2,050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남북회담 추진(4031-300)

남북회담 추진 사업은 분야별 모의회담 개최, 회담역량 및 전문성 강화, 분야별 회담의제 개발 및 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수렴, 전략수립 및 운영 체계 개선 등을 통한 남북회담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3억 5,400만원 중 41.5%인 1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남북회담 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54	354	-	△78	276	147	129	41.5	53.3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분야별 회담 추진’ 8,000만원, ‘남북회담 역량 강화’ 400만원, ‘회담 운영 및 지원’ 6,3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 남북회담 추진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회담 추진	354	354	△78	276	147	129
· 분야별 회담 추진	241	241	△71	170	80	89
· 남북회담 역량 강화	38	38	△7	31	4	28
· 회담 운영 및 지원	75	75	-	75	63	12

자료: 통일부

□ 남북회담문서 공개사업의 열람 방식 확대·개선 필요

내역사업인 ‘분야별회담 추진 사업’은 북한과의 분야별 회담·접촉을 추진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2억 4,1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분야별회담 추진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41	241	-	△71	170	80	-	89	191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남북회담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제628호, 2022. 1. 1., 제정)을 제정하고 30년이 경과된 남북회담문서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실제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차례씩 남북회담 문서를 공개한 바 있음.

< 남북회담문서 공개 경과 및 현황 >

- 2022.1.1. 「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
 - 상·하반기 각 1회씩 남북회담문서를 공개
 - * '22년 두 차례('22.5.4., 12.30.), '23년 두 차례('23.7.6., 12.28.) 공개
- 2029년부터 30년 경과된 당해연도 사료 1년치씩 공개
- 2024년 상반기 공개 대상: '81.12월~'87.5월까지의 남북회담 문서

자료: 통일부

한편, 2022년과 2023년의 남북회담문서 자료 열람건수를 보면 각각 19건과 11건으로 열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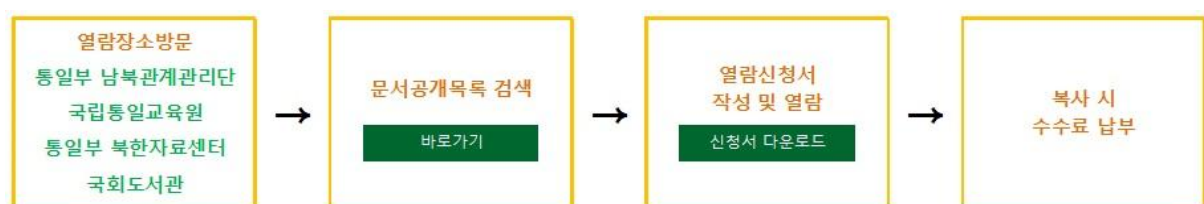
< 남북회담문서 공개 사업 문서 열람 건수 >

연도	남북관계관리단	북한자료센터	국립통일교육원	국회도서관	합계
2022년	10건	6건	0건	3건	19건
2023년	5건	5건	1건	0건	11건

자료: 통일부

열람 건수가 적은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남북회담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회도서관으로 숫자가 적을뿐더러 모두 수도권에 위치함. 또한 현재 전자적 방법으로는 공개문서 목록만 확인 가능하며, 실제 남북회담문서 자료는 상기 열람장소에 방문해야만 열람할 수 있어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 남북회담문서 열람 절차 >



자료: 통일부

따라서, 통일부는 남북회담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전자적 열람 방안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4032-302)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사업은 남북회담본부가 관리하는 자유의 집과 전방 사무소 등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남북회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남북 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21억 6,200만원 중 97.1%인 20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도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162	2,162	-	-	2,162	2,099	63	97.1	97.1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인 ‘남북통신망 운영’의 예산액은 9억 7,700만원이며, 전액을 집행하였음. 남북통신망 간 통화는 2020년 이후 세 차례(2020. 6. 9. ~ 2021. 7. 26., 2021. 8. 10. ~ 2021. 10. 3., 2023. 4. 7. ~ 현재) 중단되었음. 남북통신망은 남북회담에 대비한 상시 중요시설로 보안 및 통신시설로서의 중요성과 지속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도통신망에 준해 KT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경비로서 관리용역비 9억 7,700만원을 전액 집행함.

< 2023년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2,162	2,162	-	2,162	2,099	63
· 남북통신망 운영	977	977	-	977	977	-
· 청사시설 관리	1,075	1,075	-	1,075	1,018	57
· 자유의집 시설개선	47	47	-	47	46	1
·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운영	63	63	-	63	58	5

자료: 통일부

8. 통일교육(5000 프로그램)

가. 개 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교 및 사회의 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와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통일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주요 사업은 ‘통일교육 추진’ 및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의 2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이버통일교육센터운영(정보화)’,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통일교육 프로그램 결산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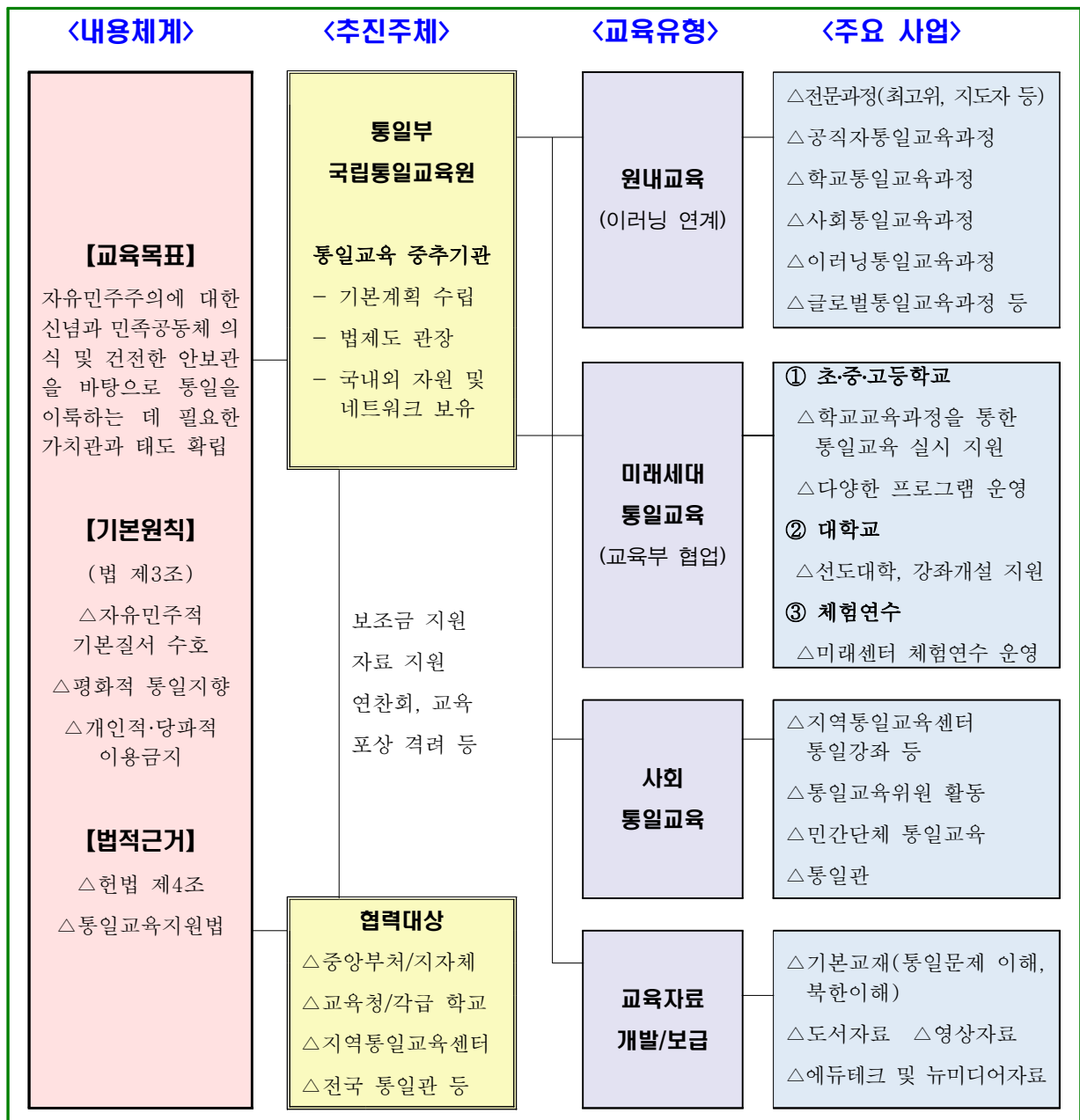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22,867	23,507	23,507	23,507	22,337	22,861
□ 국립통일교육원 인건비(단위사업 5002)	4,941	5,546	5,546	5,546	5,075	5,691
○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100)	4,941	5,546	5,546	5,546	5,075	5,691
□ 국립통일교육원 기본경비(단위사업 5018)	1,207	1,257	1,257	1,257	1,233	1,397
○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200)	237	250	250	254	243	250
○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250)	970	1,007	1,007	1,003	990	1,147
□ 통일교육추진(단위사업 5031)	14,298	15,202	15,202	15,202	14,596	14,308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304)	4,305	5,070	5,070	5,100	4,873	5,695
○ 학교 통일교육 강화(308)	4,655	4,895	4,895	4,865	4,685	4,412
○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309)	4,831	4,728	4,728	4,728	4,530	3,717
○ 사이버통일교육센터운영(정보화)(507)	508	509	509	509	508	484
□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단위사업 5033)	2,421	1,502	1,502	1,502	1,433	1,465
○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308)	2,421	1,502	1,502	1,502	1,433	1,465

자료: 통일부

정부 통일교육 추진체계를 보면, 통일부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등을 연계하여 학교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일부 및 국립통일교육원을 주축으로 지자체, 지역통일교육센터, 민간단체, 통일관 등과 연계하여 사회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통일교육 추진체계 >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적 차원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통일문제와 북한 관련 각종 자료를 발간·보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51억원 중 48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2억 2,7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5,070	5,070	-	365 △335	5,100	4,873	227	96.1	95.5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통일교육 원내과정’, ‘통일교육연구센터 운영’, ‘통일교육 자료개발 보급’, ‘통일교육 자료센터 운영’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3년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70	5,070	365 △335	5,100	4,873	227
·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340	340	±9	340	328	12
· 통일교육 원내과정	1,400	1,400	187 △157	1,430	1,341	89
· 통일교육연구센터 운영	230	230	±120	230	229	1
· 통일교육 자료개발 보급	3,044	3,044	±49	3,044	2,922	122
· 통일교육 자료센터 운영	56	56	-	56	53	3

자료: 통일부

□ 통일교육 AR앱의 체계적 관리와 홍보강화 필요

내역사업인 ‘통일교육 자료 개발 보급’은 통일문제와 북한에 관한 각종 자료를 발간·보급하는 사업으로 일반 교재 외에도 영상, AR 교재 등 다양한 사이버통일교육 콘텐츠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음.

2023년 예산액 30억 4,400만원 중 29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통일교육 자료 개발 보급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3,044	3,044	-	±49	3,044	2,922	-	122	2,006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2022년부터 증강현실(AR)³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는데, 2022년에 개발했던 통일봄 애플리케이션은 2023년에 개발한 알통(ArTong) 앱으로 통합·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통일교육원의 휴대폰 앱 제공 및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통일교육을 위한 앱의 제공자 명의를 통일부 또는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³⁹⁾.

³⁸⁾ 증강현실(增強現實, 영어: augmented reality, AR)은 가상현실(VR)의 한 분야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임.

통일교육원이 개발·공급하는 통일교육 앱은 국가의 일관된 통일관을 확인하고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명의를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제공자가 일원화되어야 잠재적 이용자들이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통일부의 다른 통일교육 앱들을 인지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둘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2022년의 통일봄 앱이 2024년 5월 기준으로 여전히 앱스토어에서 제공되고 있었음⁴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앱의 지속적인 노출은 사용자에게 혼선을 주고 최신 업데이트된 앱의 활용을 저해시키는데, 통일교육 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통일교육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공급 현황 >

연도	명칭	내용	제공자 명의		다운로드 수
			구글 스토어	애플 스토어	
2022	통일봄	○ 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민주시민 의식 고양과 통일교육 방법의 다각화를 위해 증강현실(AR)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 통일봄 앱은 2023년 알통 앱으로 대체되어 더 이상 활용하지 않음	국립통일교육원	Jeeheon Ryu	IOS: 확인불가 안드로이드: 1천회 이상
2023	알통 (ArTong)	○ 학생 대상의 카메라를 통한 이미지 인식 기반의 증강현실(AR) 통일교육 콘텐츠 뷰어 앱 ○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활용	국립통일교육원	Institute for Peace Affairs	IOS: 228건 안드로이드: 1,410건

자료: 통일부(2024.5. 기준, 통일봄 앱은 현재 알통 앱에 기능이 흡수·대체되어 정확한 다운로드 수 파악 곤란)

39)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앱스토어에서 2022년 통일봄의 제공자는 Jeeheon Ryu, 2023년 알통의 제공자는 Institute for Peace Affairs로 보여지고 있음

통일부는 앱 개발 당시 통일교육원측의 계정정보가 미비한 상황에서 앱스토어 등재 완료 시한을 맞추기 위해, 개발기관의 앱스토어 계정으로 등록한 이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조치중에 있음.

40) 이와 관련, 국립통일교육원은 2024. 6월 현재 구글 앱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통일봄 앱을 삭제하였음.

셋째, 2024년 5월 기준 현행 통일교육 앱인 알통(ArTong)의 다운로드 수가 IOS 228건, 안드로이드 1,410건으로 미흡한 상황임.

통일부는 통일교육 앱의 주요 용도가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교육용 도구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의 다운로드가 많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AR 앱 연동 교보재의 보급을 늘려 많은 학급에서 학생이 보다 자발적·능동적으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함. 나아가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AR 앱의 다운로드 수를 늘려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은 전국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48억 6,500만원 중 46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1억 8,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895	4,895	-	△30	4,865	4,685	180	95.7	96.3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은 ‘초·중·고 학교통일 지원’ 10억 4,500만원,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23억 6,900만원,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12억 7,100만원이 각각 집행됨.

<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학교 통일교육 강화	4,895	4,895	△30	4,865	4,685	180
·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	1,148	1,148	△10	1,138	1,045	93
·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2,415	2,415	△20	2,395	2,369	26
·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1,332	1,332	-	1,332	1,271	61

자료: 통일부

□ 교직원 및 대학(원)생 대상 통일논문 등 공모사업 활성화 노력 필요

내역사업인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사업은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우수한 통일수업 사례 발굴 및 보급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통일부·교육부 공동 주최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 홍보 영상 공모’ 사업은 대학생·대학원생의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통일과 한반도 발전 방안에 대한 관심 고취를 위해 1982년부터 시작한 사업임.

< 2023년도 공모사업별 집행액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64	64		64	42	22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 홍보 영상 공모	90	90	△20	70	44	26

자료: 통일부

먼저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액이 2021년 5,500만 원에서 2023년 4,20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응모 수는 74편에서 30편인 41% 선으로, 입상 수는 14편에서 6편으로 43%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최근 3년간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응모	입상
2021년	66	55	74편	14편
2022년	64	50	61편	12편
2023년	64	42	30편	6편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이 학교 통일교육 연구대회 응모와 입상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통일부는 교사들의 학교장·교감 승진에 대한 욕구 하락으로 입상시 연구평점 부여가 큰 유인책이 아니게 되었고,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저하 등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작 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음.

다음으로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 홍보 영상 공모 사업은 집행액이 2021년 8,900만원에서 2023년 4,40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으며, 통일 논문 응모 수와 입상 수가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반면 통일 홍보 영상의 응모 수와 입상 수는 최근 3년간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 홍보 영상 공모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응모	입상
2021년	97	89	논문 28편, 홍보영상 10편	논문 7편, 홍보영상 3편
2022년	90	78	논문 19편, 홍보영상 11편	논문 6편, 홍보영상 3편
2023년	70	44	논문 15편, 홍보영상 9편	논문 4편, 홍보영상 2편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홍보 시 통일·외교 관련 네트워크의 활용이 부족하였고, 북한 및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등에 의해 응모 실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렇게 응모·입상 수가 급감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부는 대회 입상자 대상으로 해외 통일현장 체험연수 참여 기회 부여 등 연구

대회 응모 동기를 지속 부여하고, 공모전 사이트 게시 등 기존의 홍보 외에 응모 가능성이 높은 유관 기관 구성원에 직접 전달 등 홍보 측면도 강화할 계획임.

일반적으로 응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상 인센티브를 높이고,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예비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거나, 입상 후 연계활동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응모·입상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상금을 올리는 한편, 논문 공모의 경우 우수·장려상은 학·석사 부문을 분리하여 시상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논문 제출 이후의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5031-309)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은 ① 사회통일교육 기관·단체 대상 통일교육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통일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②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③ 2030세대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사회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47억 2,800만원 중 45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9,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728	4,728	-	±146	4,728	4,530	-	198	95.8	95.8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21억 6,800만원,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에 21억 8,800만원,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에 1억 7,4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3년도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4,728	4,728	-	4,728	4,530	-	198
·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2,197	2,197	-	2,197	2,168	-	29
·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2,349	2,349	-	2,349	2,188	-	161
·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182	182	-	182	174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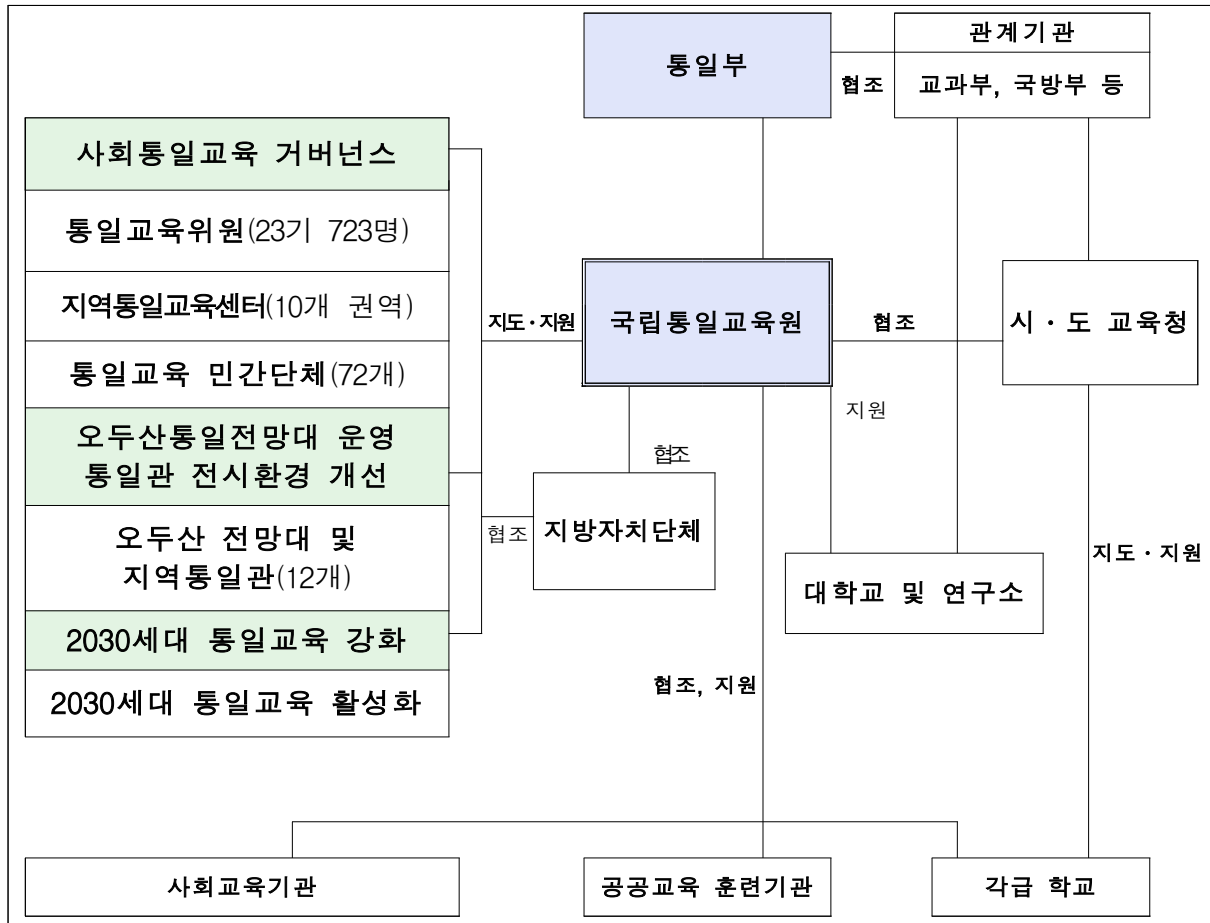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권역에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또한, 1987년부터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들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영역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통일교육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통일부는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일교육·전시 공간으로 오두산통일전망대와 전국에 12개 통일관을 운영 중이며, 동 세부사업의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 사회통일교육 사업체계 >



자료: 통일부

4)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5033-308)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사업은 국립통일교육원 청사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노후한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시설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5억 200만원 중 14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고, 6,9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502	1,502	-	-	1,502	1,433	69	95.4	95.4

자료: 통일부

9. 통일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가. 개 요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은 통일부 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여건 조성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통일부 직원 인건비, 본부 및 소속기관 기본경비 등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예산현액 651억 4,900만원 중 613억 3,2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2%임.

< 2023년도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62,219	65,091	65,091	65,274	61,328	66,562
☐ 인건비(7001 단위사업)	44,099	47,503	47,503	47,357	44,590	48,454
☐ 본부 기본경비(7011 단위사업)	4,966	5,056	5,056	5,343	5,075	5,360
☐ 소속기관 기본경비(7018 단위사업)	3,128	3,303	3,303	3,344	3,206	3,251
☐ 통일업무 R&D(7031 단위사업)	349	371	371	371	292	271
☐ 통일업무지원(7032 단위사업)	465	467	467	467	461	1,085
☐ 대북활동지원(7033 단위사업)	1,360	1,947	1,947	1,947	1,386	1,882
☐ 통일정보화(7034 단위사업)	2,948	1,986	1,986	1,986	1,914	1,837
☐ 본부 전산운영(7035 단위사업)	4,904	4,458	4,458	4,458	4,404	4,422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00)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기관운영 및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경비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9억 5,100만원 중 18억 5,500만원이 집행되고, 예산액 대비 100.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액은 3,000만원이며, 불용액은 6,600만원임.

< 2023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840	1,840	40	166 △95	1,951	1,855	66	100.8	95

자료: 통일부

□ 계획에 없던 행정인턴 채용 사업의 전용을 통한 추진 부적절

통일부는 2023년에 행정인턴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총액 인건비 대상 인건비 사업’에서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으로 1억 3,300만원을 전용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 행정인턴 채용을 위한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7001-100)	110-01 (보수)	△133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00)	110-04 (일용임금)	행정인턴 채용에 따른 기관운영기본 경비 부족분 충당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3년에 12명의 행정인턴을 채용하여 각 실국에 배치하였음. 부서와 담당업무는 아래 표와 같음.

< 행정인턴 채용 현황 >

연번	채용기간	배치부서	담당업무
1	‘23.5.1.~ 10.31.	통일정책실 통일미래추진과	○ 각종 회의 및 행사준비 지원 ○ 정책 관련 연구자료, 해외사례 등 정리 ○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지원
2	‘23.5.1.~ 10.31.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 남북협력기금 관리 업무 지원 ○ 예산·국회 관련 대내외 협조업무 지원
3	‘23.5.1.~ 10.31.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 통일방송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자료조사 ○ 통일방송 프로그램 제작 아이템 발굴 ○ 통일방송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 업무 지원 등
4	‘23.5.1.~ 10.31.	통일협력국 참여소통과	○ 통일+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 지원 ○ 국민 참여 사회적 대화 행사 지원
5	‘23.5.1.~ 10.1.	정보분석국 북한정보서비스과	○ 북한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고도화업무 지원 ○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전산시스템 관리 지원 ○ 소장자료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지원

연번	채용기간	배치부서	담당업무
6	'23.5.1. ~ 10.31.	정보분석국 북한정보서비스과	○북한 관련 해외 공개정보자료 조사·수집·관리 및 영어 번역 ○북한 관련 해외동향 분석 업무 지원
7	'23.5.1. ~ 10.31.	통일협력국 국제협력과	○통일 공공외교사업 지원 ○국제회의 등 각종 행사 지원
8	'23.5.1. ~ 10.31.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	○남북통합문화센터 전시관 기획·관리 ○남북통합문화센터 행사 지원 ○남북통합문화센터 SNS 채널 운영, 홍보 업무 ○남북통합문화센터 이용실적 통계 작성 등
9	'23.5.1. ~ 10.31.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통일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 지원 ○통일교육 교재개발 관련 인적 교류 경험 및 사업 추진 지원
10	'23.5.1. ~ 10.31.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통계 지원 ○기록물 이관 자료 및 자료실 자료 정리 등 ○그 외 기록센터 행정 업무 지원
11	'23.6.1. ~ 11.30.	인권인도실 북한인권기획과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세미나 기획운영 ○북한인권 관련 이슈 모니터링 및 국제사회 협력업무
12	'23.7.1. ~ 12.31.	국립통일교육원 스마트교육팀	○스마트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등 지원 ○메타버스, SNS 등 기반 디지털 통일교육 사업 추진 지원

자료: 통일부

행정인턴 사업은 청년들이 실무 경험과 관련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업임.

다만, 2023년의 행정인턴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을 전용을 통해 집행하여 「국가재정법」상 전용의 범위⁴¹⁾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음.

통일부는 2024년 이후 관련 예산을 반영·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2023년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41)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2)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기관운영 및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경비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8억 3,000만원 중 17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10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액은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500만원임.

< 2023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629	1,629	18	390 △207	1830	1725	25	105.9	94.2

자료: 통일부

3) 정책연구개발(R&D)(7031-300)

정책연구개발(R&D)은 통일 및 북한문제 등과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소 등의 외부전문가에게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통일·대북정책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3억 7,100만원 중 2억 9,2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7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7,900만원임.

< 2023년도 정책연구개발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71	371	-	-	371	292	79	78.7	78.7

자료: 통일부

□ 정책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비공개 보고서 공개방안 마련 필요

세부사업인 ‘정책연구개발(R&D)’에서는 전액을 외부 전문가에게 정책개발 관련 조사 및 분석,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액 3억 7,100만원 중 2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정책연구개발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371	371	-	-	371	292	-	79	271

자료: 통일부

2023년도 정책연구용역의 세부 내역을 보면, 과제별로 최대 4,9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원을 집행하면서 13건 중 12건을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⁴²⁾에 따른 비공개 대상 연구과제는 비공개 4건, 부분공개 1건이었음.

4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 수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과제명	집행액	계약 방식	수행 기간	수행 기관	공개 여부	비공개 기한
역류자 · 남북자 상징사업 추진방 안 연구	20	수의	'23.04 ~ '23.07	(주)브랜드메이저	비공개	'25.9.26
통일부 업무 발전 방향 : 지자체와 의 협력을 중심으로	20	수의	'23.08 ~ '23.11	한국행정학회	비공개	'25.11.30
대북통일정책 관련 효과적인 메시 지 기획관리 방안 연구	30	수의	'23.05 ~ '23.11	(사)한국매거 진미디어융합 학회	공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수요분 석 및 서비스 공급체계에 관한 연 구	49	경쟁	'23.06 ~ '23.11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	
김정은 시기 법 집행과 사회통제	17	수의	'23.04 ~ '23.09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	
북한 법령 신규비교를 통한 북한정 책 변화 연구	20	수의	'23.10 ~ '23.12	한국법제 연구원	공개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 이후 국제투 자 및 금융 지원 관련 사료 수집	20	수의	'23.06 ~ '23.12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공개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 이후 여성· 가족 분야 변천 과정 관련 사료 수 집	17	수의	'23.05 ~ '23.12	베트남 성별·개발 연구소	공개	
탈북민 경험 구술(생애사·주제사) 사업 설계를 위한 연구	20	수의	'23.07 ~ '23.11	통일연구원	부분 공개	'25.12.13
남북 산업기술 기반 협력사업 모델 발굴 및 실행전략	30	수의	'23.04 ~ '23.09	(주)이코노 바이저	비공개	'25.6.12
비교연구를 통한 통일교육 선도대 학 공통 평가지표 개발	20	수의	'23.06 ~ '23.09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	
청년세대 통일인식 심층조사를 통 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20	수의	'23.05 ~ '23.07	조원씨앤아이	공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계획	10	수의	'23.11 ~ '23.12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비공개	'26.12.31
합 계	292					

자료: 통일부

또한, 최근 3년간의 수의계약 및 비공개 과제 현황을 보면, 총 43건 중 32건(74.4%)을 수의계약에 의해 수행하였으며, 비공개 비율은 20% 이상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비공개 과제 현황 >

구 분	과제 건수	수의계약 건수(비율)	비공개 건수(비율)
2021년도	18건	11건(61.1%)	2건(11.1%)
2022년도	12건	9건 ⁴³⁾ (75%)	4건(33.3%)
2023년도	13건	12건(92.3%)	5건 ⁴⁴⁾ (38.5%)
합 계	43건	32건(74.4%)	11건(25.6%)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이 과도한 수의계약 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⁴⁵⁾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⁴⁶⁾에 따른 일반경쟁계약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⁴⁷⁾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3) 자체경쟁 후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에서 제외함.

44) 부분공개 1건 포함.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46)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87 연구용역비(260목) 공통지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한다.

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통일부는 통일·북한 문제와 관련한 다년간의 연구이력을 보유하고 독보적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전문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위탁하였기 때문에 수의계약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3년도에는 1건을 제외한 대부분을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경쟁을 통한 연구자 선정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가진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하며, 수의계약은 선정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또한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통일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일정부분 관여해야 하는 입장으로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반적인 주요 내용 공개, 부분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통일업무지원(7032-303)

통일업무지원 사업은 정부혁신·창의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요 역사기록관리 및 특수기록 보안성 확보를 통해 통일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자료 제작 및 합동 절차연습을 시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을 통한 안전보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며, 재난대응 태세 구축을 통해 유사시 정부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4억 6,700만원 중 4억 6,1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9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500만원임.

< 2023년도 통일업무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67	467	-	±31	467	461	5	98.7	98.7

자료: 통일부

Ⅲ. 2023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결산 개요

1. 남북협력기금 결산 총괄

가. 기금 총괄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지출 결산액은 6,629억원(전년 3,913억원)으로 계획현액(1조 8,004억원) 대비 36.8%임.

수입금 6,629억원 중 4,996억원을 사업비·기금운영비·공자기금예수금상환 등에 지출하고, 1,634억원은 여유자금⁴⁸⁾으로 운용하였음.

< 수입·지출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실 적 (B)	달 성 률 (B/A)
수입	합 계	1,800,388	1,800,388	662,924	36.8
	자 체 수 입	38,512	38,512	13,179	34.2
	정부내부수입	1,671,653	1,671,653	487,200	29.1
	여유자금회수	90,223	90,223	162,545	180.2
지출	합 계	1,800,388	1,800,388	662,924	36.8
	사 업 비	1,210,118	1,210,118	22,434	1.9
	기금운영비	2,356	2,356	2,256	95.7
	공자기금원리금상환	503,914	503,914	474,873	94.2
	여유자금운용	84,000	84,000	163,361	194.5

자료: 통일부

48) 기금 여유자금이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의미한다. 여유자금은 운용기간에 따라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으로 분류된다. 단기자산은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산으로서 연중 사업에 집행될 “사업대기성 자금”과 연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 유동성 자금”의 용도로 활용된다. 중장기자산은 장래 지출수요에 대비하거나, 기금의 향후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1년 이상 운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확정금리형, 채권형, 주식형, 대체투자 등의 자산군으로 구성된다.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2018. 10. 15. 기획재정부훈령 제396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가.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나. 수입 결산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총계는 6,629억원으로, 계획현액 1조 8,004억원 대비 36.8%임.

자체수입은 132억원(전년 95억원)으로 계획액 385억원 대비 34.2%이고, 전년대비 증가는 주로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증가 때문임.

정부내부수입은 4,872억원으로 계획액 1조 6,717억원 대비 29.1%이며, 여유자금회수는 1,625억원으로 계획액 902억원 대비 180.2%임.

< 수입 결산 세부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3당초계획	'23계획현액 (A)	실 적 (B)	달성률 (B/A)	비고
총 계	1,800,388	1,800,388	662,924	36.8	
자체수입	38,512	38,512	13,179	34.2	
○ 재산수입	6,225	6,225	4,793	77.0	
▪ 건물대여료	39	39	15	38.6	미래센터 임대료
▪ 기타민간이자수입	3,856	3,856	1,440	37.3	대출이자수입
▪ 기타재산수입	2,330	2,330	3,338	143.2	여유자금운용수입
○ 경상이전수입	10,956	10,956	3,078	28.1	
▪ 민간출연금	150	150	-	-	자발적 민간출연
▪ 기타경상이전수입	10,806	10,806	3,078	28.5	사업비 정산·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090	3,090	28	0.9	
▪ 기타잡수입	3,090	3,090	28	0.9	미래센터 연수비 등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8,241	18,241	5,280	28.9	
▪ 융자원금회수	18,241	18,241	5,280	28.9	대출원금 회수
정부내부수입	1,671,653	1,671,653	487,200	29.1	
○ 일반회계전입금	100,000	100,000	57,200	57.2	정부출연금
○ 공자기금예수금	1,571,653	1,571,653	430,000	27.4	경수로 차입금 상환
여유자금회수	90,223	90,223	162,545	180.2	운용기관예차원금회수

자료: 통일부

다. 지출 결산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총계는 6,629억원으로 계획현액 1조 8,004억원 대비 36.8%임.

사업비 집행액은 224억원(전년 779억원)으로 계획현액 1조 2,101억원 대비 1.9%이고, 기금운영비는 23억원으로 계획현액 24억원 대비 95.7%이며, 공자기금예수금원리금상환은 4,749억원으로 계획현액 5,039억원 대비 94.2%이며, 여유자금운용은 1,634억원으로 계획현액 840억원 대비 194.5%임.

전년 대비 사업비 집행액 555억원 감소('22년 779억원 → '23년 224억원)는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로 대북인도적지원 및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의 전반적인 집행 감소 때문임.

< 지출 결산 세부 현황 >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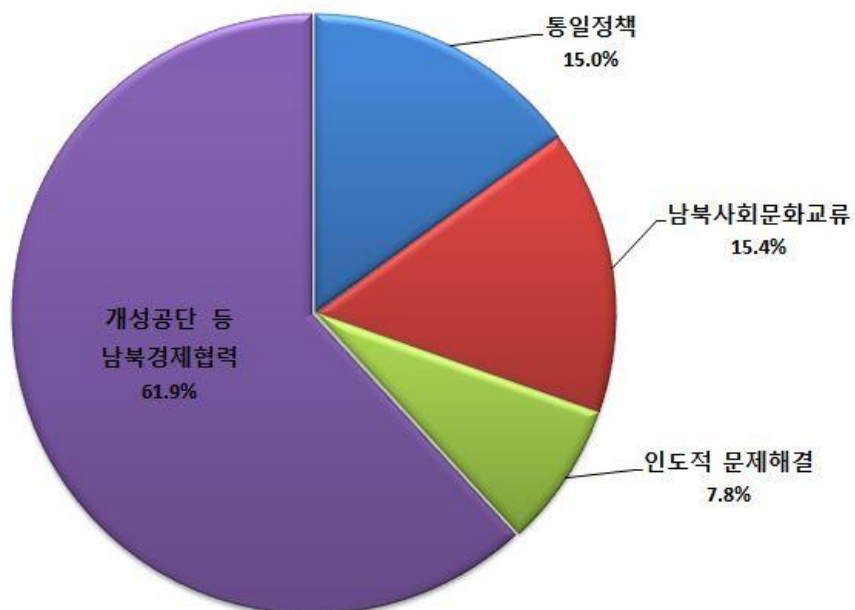
구 분		계 획			실적 (B)	달성률 (B/A)
		'23년 계획	전년도 이월	계획 현액(A)		
사업비	통 일 정 책	3,660	-	3,660	3,357	91.7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3,660	-	3,660	3,357	91.7
	남 북 사 회 문 화 교 류	21,520	-	21,520	3,456	16.1
	- 사회문화교류지원	21,520	-	21,520	3,456	16.1
	인 도 적 문 제 해 결	730,004	-	730,004	1,745	0.2
	- 이산가족교류지원	18,027	-	18,027	993	5.5
	- 구호지원	107,008	-	107,008	-	-
	- 민생협력지원	604,969	-	604,969	752	0.1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454,934	-	454,934	13,876	3.1
	- 경제교류협력보험	4,275	-	4,275	-	-
	- 경협기반(무상)	231,266	-	231,266	3,908	1.7
	- 경협기반(융자)	180,025	-	180,025	-	-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10,000	-	10,000	-	-
	- DMZ 평화적 이용	12,027	-	12,027	2,828	23.5

구 분		계 획			실적 (B)	달성률 (B/A)
		‘23년 계획	전년도 이월	계획 현액(A)		
	- 개성공단 운영 대출	8,282	-	8,282	2,027	24.5
	- 개성공단 기반조성	9,059	-	9,059	5,113	56.4
	소 계	1,210,118	-	1,210,118	22,434	1.9
기	금	2,356	-	2,356	2,256	95.7
공	자	503,914	-	503,914	474,873	94.2
자	금	84,000	-	84,000	163,361	194.5
여	유					
자	자					
금	금					
운	운					
용	용					
총	계	1,800,388	-	1,800,388	662,942	36.8

자료: 통일부

2023년 기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에서 각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비 총 지출액 224억 3,400만원 중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이 약 61.9%(138억 7,600만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남북 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약 15.4%(34억 5,600만원), 통일정책 프로그램이 약 15.0%(33억 5,700만원),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약 7.8%(17억 4,5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3년 결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중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 >



자료: 통일부

최근 3개년간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집행 현황을 분야별로 보면,

통일정책의 경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체험연수 운영과 시설관리 운영
경상경비 지출 등으로 3년간 평균 집행률은 85.9%[(‘21) 81.5% → (‘22) 84.
6% → (‘23) 91.7%]로 양호한 편임.

남북사회문화교류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으로 집행률은 16.4%를
기록하였고, 인도적 문제해결 및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경우 최근 3개년
모두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최근 3개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3년간 평균 집행률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통일정책	3,831	3,121	81.5	3,415	2,888	84.6	3,660	3,357	91.7	85.9
남북사회 문화교류	19,097	3,426	17.9	22,095	3,353	15.2	21,520	3,456	16.1	16.4
인도적 문제해결	653,645	3,989	0.6	661,489	4,393	0.7	730,004	1,745	0.2	0.5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567,594	20,645	3.6	595,278	67,282	11.3	454,934	13,876	3.1	6.0
합 계	1,244,168	31,179	2.5	1,282,277	77,916	6.1	1,210,118	22,434	1.9	3.5

자료: 통일부

2. 남북협력기금 수입 결산 검토

가. 건물대여료

‘건물대여료’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 및 시설 대관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 수입으로, 2023년도 계획액은 3,900만원이고, 실제 수납실적은 1,500만원임.

< 2023년도 건물대여료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39	-	39	15	15	-	38.6

자료: 통일부

전년(2백만원) 대비 수납률의 다소 증가는 '23년 상반기 엔데믹 전환 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내 시설물 외부 대여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계획액 대비 수납액은 저조함.

< 2023년도 건물대여료 수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구내식당 위탁운영	13	9	9	-
시설 대관	26	6	6	-
합 계	39	15	15	-

자료: 통일부

나.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재산수입 중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은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의 융자금으로부터 회수되는 이자수입으로, 2023년 계획액은 38억 5,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억 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억 4,0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37.3%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는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에 대한 대출원금 회수 수입으로, 2023년 계획액은 182억 4,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1억 7,800만원이며 수납액은 52억 8,0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28.9%임.

< 2023년도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기타민간 이자수입	3,856	-	3,856	3,604	1,440	2,164	37.3
기타민간 융자원금회수	18,241	-	18,241	32,178	5,280	26,898	28.9

자료: 통일부(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3.12월말 결산일 기준)

기타민간이자수입과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남북경협 중단 및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협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년마다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⁴⁹⁾를 실시하고 있는 바, 경협기업의 규모가 대체로 영세하며 최근에는 코로나19,

49)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환 유예와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 조정(예시: 2021년의 경우에도 21. 6. 10. 기준 기금대출 연체가 아니며, 금리가 1.5% 이상인 대출[264개사(중복제외), 394건 대출잔액 245,488 백만원]에 대해 0.5%p인하. 이자경감 규모는 연간 약 12억 3천만원, 2023년의 경우는 금리인하 조치 없음)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이자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원금 수납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계 획 액 (A)	징 수 결 정 액 (B)	수 납 액 (C)	수 납 률 (C/A)	수 납 률 (C/B)
기타민간 이자수입	2019	7,002	2,876	1,842	26.3	64.0
	2020	4,992	2,850	1,712	34.3	60.0
	2021	4,062	3,052	1,384	34.1	45.3
	2022	3,411	2,513	804	23.6	32.0
	2023	3,856	3,604	1,440	37.3	40.0

구 분	연 도	계 획 액 (A)	징 수 결 정 액 (B)	수 납 액 (C)	수 납 률 (C/A)	수 납 률 (C/B)
기타민간 융자원금 회수	2019	36,041	27,101	6,647	18.4	24.5
	2020	62,143	32,555	10,552	17.0	32.4
	2021	73,099	36,798	9,218	12.6	25.0
	2022	10,600	32,522	6,166	58.2	19.0
	2023	18,241	32,178	5,280	28.9	16.4

자료: 통일부

참고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남북경협 중단 지속으로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고려하여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228개 기업 1,414억원 규모임.

<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상환 유예 현황 >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개성공단	기업수	117	112	104	96	95
	금액	38,537	68,046	85,476	79,077	78,227
개성공단 외	기업수	155	154	144	135	135
	금액	84,650	99,797	149,798	48,216	63,181
합 계	기업수	268	264	247	229	228
	금액	123,187	167,843	235,274	127,293	141,408

자료: 통일부(중복 제외)

기타민간이자수입과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징수결정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원리금 만기가 도래한 금액으로,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에서 제외됨.

< 2023년 남북협력기금 융자 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23년 말 융자잔액	융자대상	2023년 만기도래액(원금)			
			계	상환액	상환유예	미상환액
경협기반(융자) ^{주1)}	271,415	조선무역은행	10,460	0	0	10,460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178,284	(주)아난티 등 193개	66,126	633	63,181	2,312
개성공단운영대출	184,174	재영솔루텍(주) 등 128개	125,148	4,647	119,849	652
계	633,873 ^{주2)}	308개 ^{주3)}	201,734	5,280	183,030	13,424

자료: 통일부

주1) 2007년 조선무역은행 앞 차관방식으로 제공한 경공업차관(북측의 의복,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자재장비차관(경의선, 동해선 북측구간 철도, 도로 및 역사 기자재관련 차관)

2) 미달러화 대출은 '23.12.29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1,289.40원) 적용하여 원화 환산

3) 중복 기업수 제외

2023년 결산일 기준 해당 회계연도에 원리금 만기가 도래한 금액 중 상환 유예 또는 만기 연장 경우 등을 제외한 징수결정액은 융자금 321억 7,800만원, 이자 36억 400만원이나, 이를 상환하지 못한 융자금 및 이자의 연체 규모는 56개 기업 290억 6,300만원임.

< 남북협력기금 원금 및 이자 연체내역 >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원금(A)		이자(B)		계(A+B)	
		기업	금액	기업	금액	기업	금액
경협대출		2	5,800	2	484	2	6,284
특별 대출	교역·경협·금강산	31	8,945	30	882	31	9,827
	개성공단	22	12,071	22	795	22	12,867
교역대출		2	82	2	3	2	85
합 계		56	26,898	55	2,164	56	29,063

자료: 통일부(중복기업 수 제외)

대출 원리금 연체 사유는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5.24조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경협·교역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 및 사업기반 약화임.

□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 위해 민간에 대출한 채권의 부실화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남한기업에 대출한 금액과 관련하여 대출원금은 ‘기타민간 용자원금 회수사업’을 통해 상환처리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기타민간 이자수입’에서 수입처리하고 있음.

먼저 민간에 대한 대출원금의 상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4년간 ‘기타민간 용자원금 회수사업’의 결산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최근 4년간 기타민간 용자원금 회수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연도말 채권 원금 잔액	만기도래 채권 원금 (A)	징수 결정액 (B)	만기도래 원금 대비 징수 결정액 비율(C/A)	수납액 (D)	만기도래 채권액 대비 원금상환액 (D/A)
'20	282,332	258,259	32,555	12.6	10,552	4.1
'21	273,278	303,073	36,798	12.1	9,218	3.0
'22	287,185	208,530	32,522	15.6	6,166	3.0
'23	기존대출	257,430	32,170	14.9	5,280	2.5
	'22년 신규대출 ⁵⁰⁾	24,220	8	100	-	-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남북경협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통일부 지침에 의거 1년 단위로 원금 및 이자에 대해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며, 원금 중 상환유예된 금액은 징수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그 결과 만기도래 채권 원금 대비 징수결정액의 비율은 12~16%의 범위에 있음.

2023년에는 기존 대출액의 만기도래 원금 2,152억원 중 14.9%인 321억 7,

50) 2022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에 따라 남북경협 중단 피해기업에 대해 특별대출을 지원하였으며, 78개사 앞 245억원 대출 집행

000만원에 대해 징수결정을 하였고 이 중 52억 8,000만원이 수납되었음. 징수결정액 중에서 수납액이 실제 원금 상환액이므로 만기도래 채권 원금 중 2.5%만이 상환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 비율은 2021, 2022년에도 3%에 불과하여 실제 원금 상환실적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 민간에 대한 대출원금의 이자 상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4년간의 ‘기타민간 이자수입’의 결산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최근 4년간 기타민간이자수입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연도말 채권 이자 잔액	만기도래 채권 이자액(A)	징수 결정액 (B)	만기도래 이자액 대비 징수 결정액 비율(C/A))	수납액 (D)	만기도래 이자액 대비 이자상환액 (D/A)
'20		34,087	9,300	2,850	30.6	1,712	18.4
'21		39,207	39,477	3,052	7.7	1,384	3.5
'22		41,762	14,216	2,513	17.7	804	5.7
'23	기존대출	43,417	23,969	3,434	14.3	1,270	5.3
	22년 신규대출	258	428	170	39.7	170	39.7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상환유예 지침에 따라 이자도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상환유예된 이자금액 역시 징수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023년에는 기존 대출액의 만기도래 이자액 239억 6,900만원 중 14.3%인 34억 3,400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였고 이 중 12억 7,000만원이 수납되어, 만기 도래 채권 이자액 중 5.3%가 상환되었음. 이 비율은 2021, 2022년에도 3~6%에 불과하여 실제 이자 상환실적 또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위와 같은 낮은 이자 상환실적은 원금 상환에 비해 보다 주의깊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자 상환유예조치는 이자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누적되어 대출총액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임.

한편, 손실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설정하는 대손충당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말 기준 채권잔액 대비 25.3%를 적립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점차 적립율이 높아지고 있음. 전입액은 차주의 재무상태, 연체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채권 상환가능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4년간 대손충당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채권 원금 잔액	대손충당금 잔액 (비율)	대손충당금 전입액	상계액	비고
'20	282,332	58,537 (20.7%)	797		
'21	273,278	62,384 (22.8%)	3,848		
'22	287,185	67,997 (23.7%)	5,613	4,245	
'23	281,650	71,334 (25.3%)	3,336		

자료: 통일부

주1) 연체 중인 이자(미수납액)는 미수수익 등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상 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계처리와 무관하여 원금에 대해서만 작성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

첫째, 원금 및 이자의 저조한 상환율은 향후 대출 부실화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채권 회수 계획의 수립 및 관리가 요구됨.

둘째, 이자 상환유예와 원금 상환유예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는 원금에 비해 보다 상환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통일부는 상환유예 결정은 원금과 이자가 아닌 기업의 경영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있으며, 남북경협 기업들 대부분이 영세한 기업으로 취약차주 보호 및 채권 회수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자 상환유예조치는 이자가 계속 누적되어 대출총액 증가와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세 기업의 재무 상황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기준을 달리 정하여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을 보다 독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장기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운용수익 등으로, 2023년도 계획액 23억 3,000만원의 143.2%인 33억 3,8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3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2,330	-	2,330	3,338	3,338	-	143.2

자료: 통일부

전반적인 이자율 상승 기조에 따라 단기 금융상품 운용수익률 상승으로 전년(수납액: 1,389백만원) 대비 수납액이 증가되었음.

라.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기금 무상사업비를 개산금⁵¹⁾으로 지급한 이후의 정산에 따른 환입금 수입 및 지난 2013년,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시 지급된 경협보험금 회수액으로, 2023년 계획액은 108억 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0억 7,800만원으로 수납률은 28.5%임.

<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B/A)
10,806	-	10,806	3,078	3,078	-	28.5

자료: 통일부

세부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환입금 수입으로 29억 500만원과 경협보험금 반납으로 1억 7,3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환입금 수입	2,432	2,905	2,905	-
경협보험금 환입	8,374	173	173	-
합 계	10,806	3,078	3,078	-

자료: 통일부

‘환입금 수입’ 29억 500만원은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사업 환입금 7억 5,000만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환입금 5억 5,500만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환입금 3억 8,200만원 등에서 발생하였음.

51) 개산금(概算給): 갚거나 주어야 할 돈의 액수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 금액을 미리 대강 계산하여 주는 일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환입금 수입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사업 환입금	750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환입금	55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환입금	382
북한 아동 콩기름 지원사업 환입금	350
북한 어린이 쌀 지원사업 환입금	350
긴급분유지원사업 환입금	230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사업 환입금	145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사업 환입금	48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사업 환입금	17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사업 환입금	17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환입금	14
대북 콩기름 지원사업 환입금	10
기 타(대북협력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사업 환입금 등)	36
합 계	2,905

자료: 통일부

한편, ‘경협보험금 환입수입’은 당초 계획액을 83억 7,400만원으로 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억 7,3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2.1%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중단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기업들이 반납해야 하는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경협보험금 환입관련 현황을 보면 약관⁵²⁾에 따라 경협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이를 남북협력기금의 세입으로 회수하고 있음.

52)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27조의2(대위권 등의 행사) ③ 기금은 대위권 등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반납기한을 정하여 보험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4월 개성공단 사업 중단 후 지급된 59개 기업대상 보험금 1,761억원에 대해서는 같은 해 9월 개성공단 재개 이후 총 1,311억원을 자산평가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기금의 세입으로 환입 받았음.

< 기타경상이전수입 경험보험금 연도별 반납 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연 도	기업수	반납금액	비 고
2013년	40	1,166	
2014년	10	87	6개기업 중복
2015년	7	54	7개기업 중복
2016년	-	-	가지급금 초과지급분 및 회수금 통지 지연에 따른 초과지급분 반환 제외
2017년	-	-	-
2018년	-	-	-
2019년	1	0.1	1개기업 중복
2020년	1	0.4	1개기업 중복
2021년	1	0.6	1개기업 중복
2022년	1	1	1개기업 중복
2023년	1	1.2	1개기업 중복
합 계	44	1,311	연도별 중복 반납기업 제외

자료: 통일부

그리고 2013년 보험금을 지급받고 사업 재개 이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피해기업에게 지원해야 할 피해지원금에서 이를 갈음하는 형식으로 지원한 바 있음. 따라서 개성공단 사업이 다시 재개되지 아니하는 한 보험금 환입 대상 기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개성공단 재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경험보험금 미반납 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보험금 지급		보험금 회수		사업 포기		보험금 미회수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59	1,761	44 ^{주)}	1,311	5	59	14 ^{주)}	391

자료: 통일부(2023년 말 기준, 보험금 일부반납기업 4개사 포함)

마.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은 교역보험 및 경제협력사업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 수입,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자 연수비 및 숙박비 등으로, ‘23년 계획액은 30억 9,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00만원으로 수납률은 0.9%임.

< 2023년도 기타잡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3,090	-	3,090	28	28	-	0.9

자료: 통일부

세부내역을 보면,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2017년 이후 교역·경험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수입은 계속 없었고, 통신관로 임차료 수입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KT간 체결한 「남북철도시설이용에 관한 계약」(2018. 1. 20.)에 따라 KT로부터 통신관로 사용료를 약 700만원 수납하였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비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엔데믹 전환 후 통일체험연수가 활성화되면서 전년(4백만원) 대비 다소 증가한 약 2,100만원을 징수·수납함.

< 기타잡수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보험료 수입	2,867	-	-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비	223	21	21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신관로 임차료 수입 등	-	7	7	-
합 계	3,090	28	28	-

자료: 통일부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숙박 연수생 유치에 노력할 필요

기타잡수입 계정⁵³⁾에서의 주요 수입액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자 연수비 및 숙박비이며, 2023년에는 2,122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음.

< 기타잡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세부내역
2021년	7	7	o KT통신관로 임차료수입 7백만원 등
2022년	11	11	o 미래센터 체험연수비 및 숙박비 4백만원, KT통신관로 임차료 수입 6백만원 등
2023년	28	28	o 미래센터 체험연수비 및 숙박비 21백만원, KT통신관로 임차료 수입 6백만원 등

자료: 통일부

그간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2020~2022년 제6중앙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어 정상적인 통일체험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으나, 2023년에는 총 체험연수자가 28,891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의 72% 수준으로 연수자 수가 회복되었음.

반면에 이용자 수에 비해 이용료 수입액이 2,100만원으로 2018년의 21%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비숙박 체험연수자 수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숙박 체험연수자 수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임.

53) 기타잡수입 계정에 포함되는 교역보험 및 경제협력사업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 수입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유로 수입액이 없음.

<연도별 체험연수자 수 및 이용료 수입액>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체험연수자 수(명)			이용료 수입액 ⁵⁴⁾ (백만원)
	합계	숙박	비숙박	
2018	39,999	25,731	14,268	99
2019 ⁵⁵⁾	23,289	13,867	9,422	50
2020	5,814	555	5,259	-
2021	1,986	0	1,986	-
2022	9,044	2,959	6,085	4
2023	28,891	9,450	19,441	21

자료: 통일부

또한, 숙박 체험연수자가 감소하면서 한 번에 총 488명의 숙박 체험연수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숙박시설의 이용률도 크게 떨어졌는데, 2018년 연간 이용률은 87%에 달하지만 2023년의 숙박시설 연간 이용률은 57.6%에 불과한 상황임⁵⁶⁾.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숙박시설 현황 >

(단위: 실, 명)

2인실	수용 인원	4인실	수용 인원	8인실	수용 인원	가족 빌리지 등	수용 인원
44	88	56	224	12	96	18	80
총 수용인원 488							

자료: 통일부

54)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프로그램 이용 단가 >

(1인당 이용료, 단위: 원)

구 분		사용료 (VAT 면제)			교사
		초	중	고	
숙박비(1박)		8,000	8,000	8,000	8,000
식비(1식)		5,500	5,800	6,000	7,000
체험연수비	2박3일	10,000	10,000	10,000	-
	1박2일	5,000	5,000	5,000	-
	당일	무료	무료	무료	-

55) 2019년에는 돼지열병 유행에 의해 9.21. 이후 연수 중단

56) ○ 이용률 산출식{(연간 연수 운영일 / 연간 시설 운영일) X 100 = 연간 이용률}

○ 연간 이용률 통계 - 2018년: 235일 / 270일 X 100 = 87.03%

- 2023년: 147일 / 255일 X 100 = 57.64%

숙박 체험연수자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수입액 감소와 숙박 시설 공실률 증가 외에도, 보다 심도깊은 통일체험과 연수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 있음.

통일부는 숙박 체험연수자를 늘릴 수 있도록 교육기관 또는 지자체와 협력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통일의식 고취에 기여하고 기관의 설립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바.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일반회계전입금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으로 2023년도 계획액 1,000억원(재정당국의 엄격한 건전재정 기조 下, 428억원 수납받지 못함) 대비 572억원(57.2%)만 수납하였음. 수납액은 2023년에 도래하는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예수금의 이자 상환분 286억 7,400만원과 남북협력사업비 충당분 285억 2,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이하 “기금예수금”)은 경수로사업 관련 공자기금 원금상환과 남북협력사업 수요의 변동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만으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예수하는 것으로, 2023년도의 경우 당초 계획액은 1조 5,716억 5,300만원 이었으나, 계획액의 27.4%인 4,300억원을 수납하였음.

< 2023년도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	-	100,000	57,200	57,200	-	57.2
공자기금 예수금	1,571,653	-	1,571,653	430,000	430,000	-	27.4

자료: 통일부

기금예수금 4,300억원은 경수로사업 관련 기존 공자기금 예수 원금 중 2023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며, 남북협력사업 관련 계획액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사업 집행률 저조와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예수하지 않음.

3. 남북협력기금 지출 결산 검토

가. 통일정책

‘통일정책’ 프로그램은 접경지대에 남북교류의 공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남북청소년 교류 및 국내외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통일정책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 획	결 산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2,888	3,660	3,357	4,592
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2,888	3,660	3,357	4,592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최대 48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일체험 연수시설이자 남북교류 지원시설로, 2014년 11월 개관하여 2015년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음.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현황 >

-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 총 사업비: 493억원(건축비)
- 사업 기간: 2011년~2014년(2014년 9월 준공, 11월 개관)
- 시설 규모: 부지 273,074㎡(약 82,600평), 건축연면적 17,362㎡(약 5,200평)
 - 주요시설 현황: 운영센터 및 연수관(지상 2층), 체험관, 체육관 및 식당, 생활관(4층), 가족빌리지, 직원숙소,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야외공연장, 한반도 투어링장 등
- 최대 수용인원: 488명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체험연수는 전국 일선 학교(초·중·고)를 대상으로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과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해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화프로그램, 일반인 대상의 통일체험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 상반기 엔데믹 전환 후 ‘대면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118개 학교·단체 등, 연인원 28,891명 대상의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하였음.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의 2023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33억 5,7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현액(36억 6,0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1.7%임.

< 2023년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3,660	0	3,660	3,357	-	303	91.7	91.7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의 집행률이 전년(84.6%)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상반기 엔데믹 전환에 따른 연수 정상화 재개로 대면 통일체험 연수 실시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 장비·시스템 최신화 필요

세부사업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은 청소년 대상 통일미래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미래세대를 양성하고 센터 시설관리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임. 2023년에는 계획액 36억 6,000만원 중 33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3,660	3,660	-	-	3,660	3,357	-	303	4,592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통일체험연수 전문기관으로 체험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과 체험시설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음.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현황 >

-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 총 사업비: 493억원(건축비)
- 사업 기간: 2011년~2014년(2014년 9월 준공, 11월 개관)
- 시설 규모: 부지 273,074m²(약 82,600평), 건축연면적 17,362m²(약 5,200평)
 - 주요시설 현황: 운영센터 및 연수관(지상 2층), 체험관, 체육관 및 식당, 생활관(4층), 가족 빌리지, 직원 숙소,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야외 공연장, 한반도 투어링장 등
- 최대 수용인원: 488명

자료: 통일부

한편,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2014년에 개관하여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있는데, 특히 체험연수에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체험시설·시스템·장비 등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노후화 되어 보완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주요 목록은 아래 표와 같음.

< 노후화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체험시설 현황 >

연번	설치시스템	설치연도	개선보완 사유
1	시스템 전원관리 기기	2014	-기기 노후화로 전반적인 전원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2	(자원영역) 광물 AR 체험기기	2014	-초창기 기술로 청소년 흥미유발 한계 -최신AR 기술 도입 필요
3	(관광영역) 여행성향 체험기기	2014	-청소년 흥미유발 한계 -신규 콘텐츠 도입 필요
4	(물류영역) 퀴즈대결 체험기기	2014	-기기 노후화로 수시 고장 발생 -초창기 기술로 흥미유발 한계 -흥미유발을 위한 체험기기 변경 및 콘텐츠 개선 필요
5	(문화영역) 아나운서 체험기기	2014	-기기 노후화로 수시 고장 발생 -초창기 기술로 흥미유발 한계 -실감형 시스템으로 개선 필요
6	KTX-통일호 VR 체험기기	2018	-VR 초기버전 기기로 인해 해상도 등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필요 -몰입감 향상을 위한 실감형 영상시스템 및 콘텐츠 변경 필요
7	(물류영역) 주행(아시안하이웨이) 체험기기	2018	-당시 기술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술 -유지보수가 곤란, 최신기술 기기 도입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필요
8	(문화영역) 통일한국 신문제작 체험기기	2018	-복잡한 사용방법으로 흥미유발 한계 -단순한 사용방법과 실감형 시스템으로 개선 필요

자료: 통일부

체험시설은 체험연수자들이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과 도구를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함. 효과적인 체험시설은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자의 감정 이입과 공감

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험시설의 최신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선호도가 높은 체험코스 중 하나인 KTX-통일호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체험은 남북 분단과 통일노력에 대한 에피소드를 VR 기술을 통해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치된 VR 기계가 노후되어 해상도가 낮아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고 체험자의 몰입감을 떨어뜨리고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노후화된 체험시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산출·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체험시설을 최신화시켜 통일 관련 체험효과 극대화를 통해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남북사회문화교류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은 남북간 주민 왕래 및 사회문화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호 호혜적 관계 구축 및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은 예산구조 개편을 거쳐 2016년부터 ‘남북사회문화교류’라는 1개의 단위사업 아래에 ‘사회문화교류 지원’이라는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되었음.

< 2023년도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 획	결산	
1. 남북사회문화교류	3,353	21,520	3,456	15,951
가. 사회문화교류지원	3,353	21,520	3,456	15,951

자료: 통일부

1) 남북사회문화교류

가) 사회문화교류지원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은 남북한 주민 왕래 및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사회문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통해 사회문화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극복과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⁵⁷⁾에 근거하여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액 215억 2,000만원의 16.1%인 34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180억 6,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21,520	-	21,520	3,456	-	18,064	16.1	16.1

자료: 통일부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학술협력사업은 계획액 26억 9,500만원 중 87.5%인 23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인적왕래·기타협력사업은 계획액 188억 2,500만원 중 5.8%인 10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음.

57)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3.~8. (생략)

< 2023년도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2023년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 교육·학술협력사업	2,695	-	2,695	2,358	-	337
· 인적왕래·기타협력사업	18,825	-	18,825	1,098	-	17,727
합 계	21,520	-	21,520	3,456	-	18,064

자료: 통일부

기타 협력사업으로 집행된 10억 9,800만원의 내역은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5억 700만원,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및 활용 4억 8,700만원, 개성만월대 디지털 기록관 운영 1억 400만원임.

< 2023년도 기타협력사업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승인액	집행액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507	507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및 활용	487	487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운영	104	104
합 계	1,098	1,098

자료: 통일부

다. 인도적 문제해결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교류를 촉진하고,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재해 등 복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① 이산가족교류지원, ② 대북인도적 지원의 총 2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2023년도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 획	결산	
□ 이산가족교류지원	1,022	18,027	993	17,877
○ 이산가족교류지원	1,022	18,027	993	17,877
□ 대북인도적지원	3,371	711,977	752	571,621
○ 구호지원	-	107,008	-	96,307
○ 민생협력지원	3,371	604,969	752	475,314

자료: 통일부

1) 이산가족교류지원

가) 이산가족교류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은 남북 당국 간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산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계획액 180억 2,700만원 중 9억 9,3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5.5%임.

< 2023년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18,027	-	18,027	993	-	17,034	5.5	5.5

자료: 통일부

세부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산가족교류활성화기반조성 사업에 9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산가족상봉행사 사업과 이산가족면회소운영 사업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 획	결 산	
○ 이산가족교류지원	1,022	18,027	993	17,877
· 이산가족상봉행사	58	12,211	-	12,211
· 이산가족교류활성화기반조성	964	1,453	993	1,303
· 이산가족면회소운영	-	4,363	-	4,363

자료: 통일부

2) 대북인도적지원

‘대북인도적지원’ 사업은 북한의 식량·경제·재해 등 인도적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과 농축산 협력 및 산림복구, 환경,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북인도적지원 1개의 단위사업 아래 구호지원 및 민생협력지원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3년도 대북인도적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 획	결산	
○ 대북인도적지원	3,371	711,977	752	571,621
· 구호지원	-	107,008	-	96,307
· 민생협력지원	3,371	604,969	752	475,314

자료: 통일부

가) 구호지원

‘구호지원’ 사업은 북한 지역의 자연재해 및 전염병, 식량난 등 인도적 위
기상황 발생 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북한주민의 고통 경감 및 기본적
생존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은 1,070억 800만원이었으나 당국간 지원 합의가 없어
전액 미집행 되었음.

< 2023년도 구호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107,008	-	107,008	-	-	107,008	-

자료: 통일부

나) 민생협력지원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통해 통일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축산 협력 및 산림 복구, 환경,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⁵⁸⁾

2023년 계획액 6,049억 6,900만원 중 7억 5,200만원이 집행되고, 6,042억 1,700만원이 불용됨으로써 집행률은 계획액 대비 0.1%임.

< 2023년도 민생협력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604,969	-	604,969	752	-	604,217	0.1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인도적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사업은 계획액 15억 2,500만원 중 49.3%인 7억 5,200만원이 대북지원협력사업 통합관리체계구축 사업 등에 집행되었음.

내역사업 중 북한영유아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협력,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및 남북관계 경색 등 사업 추진 여건 악화로 전액 불용되었음.

58) 2016년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개발협력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5년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세부사업을 ‘중점 인도적 지원’에 통합하고 명칭을 ‘민생협력지원’으로 변경하여, 예산구조를 주체와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체계에서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기존 ‘중점인도적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북한영유아 등 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 2023년도 민생협력지원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북한영유아 지원	87,134	87,134	-	87,134	-	-	87,134
·보건의료협력	124,244	124,244	-	124,244	-	-	124,244
·농축산산림환경협력	391,566	391,566	-	391,566	-	-	391,566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	1,525	1,525	-	1,525	752	-	773
·협력적 북한안련 증진 지원	500	500	-	500	-	-	500
합 계	604,969	604,969	-	604,969	752	-	604,217

자료: 통일부

□ 성과지표 ‘대북 인도적 지원(반출승인) 실적’ 개선 필요

통일부는 세부사업 ‘민생협력 지원’에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 2022년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사업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반출을 승인한 건수를 의미함.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경 개방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2023년의 경우 5건을 목표로 하고 반출승인 신청 5건에 대해 모두 승인하여 성과보고서 상에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 2023년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 >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대북 인도적 지원 (반출승인) 실적(건)	목표	신규	25	5	5	남북관계 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인도적 협력사업의 적정성 검토 후 사업의 요건을 갖춘 신청 건에 대한 반출승인 건수	통일부 및 유관기관 자체조사
	실적	신규	12	5	-			
	달성도	-	48	100	-			

자료: 통일부

2023년도의 실제 승인 내역을 보면, 신규 승인이 아니라 기존의 반출 승인 건에 대한 기간연장 승인, 즉 자체사업(민간 법인 등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3건 반출에 대해 기간연장 승인, 그리고 정부기금사업(2020년 이전에 남북협력기금 사업으로 승인) 2건 반출에 대한 기간연장을 승인한 것임.

< 2023년도 반출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5건) 내역 >

(단위: 백만원)

승인일자	단체명	반출 품목	금액		승인내역	비 고 (실제반출여부)
1.10.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목재 합판 등	350	기금 사업	기간연장 승인	반출
2. 6.	(사)전○○○○○○○○	방역물품	183	자체 사업		승인 후 취소
3.30.	(사)어○○○○○○○○	의약품	150			반출
3.22.	선○○○	탈지 분유	250			반출
11.13.	(사)하나누리	아동방한용품	72	기금 사업		반출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반출 승인 후 코로나19 및 북한의 국경 봉쇄, 남북관계 경색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로는 반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반출 ‘승인’과 실제 반출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23년도 반출 승인된 총 5건 중 4건은 반출이 완료되었으나 1건은 반출되지 못하고 사업 단체가 취소하였다고 설명함.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는 물론 국제기구의 인도적 물자 지원의 북한 반입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에 도달한 지원물자의 수량보다는 정부의 지원 의지를 나타내는 과정지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반출 승인 실적(건)으로는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목표인 ‘인도적 문제해결’에 대한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실제 반출한 건수를 반영하는 등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라.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 기반을 조성하고, 개성공단 내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 및 공단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현장에서 공단을 관리·운영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단위사업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에 경제교류협력보험, 경험기반(무상), 경험기반(유자), 경제교류협력대출(유자), DMZ 평화적 이용 5개의 세부사업과 단위사업 개성공단 조성에 개성공단 운영대출(유자) 및 개성공단 기반조성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3년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 획	결 산	
□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32,521	437,593	6,736	248,421
○ 경제교류협력보험	-	4,275	-	3,847
○ 경험기반(무상)	11,563	231,266	3,908	127,152
○ 경험기반(유자)	-	180,025	-	99,014
○ 경제교류협력대출(유자)	9,264	10,000	-	9,000
○ DMZ 평화적 이용	11,694	12,027	2,828	9,408
□ 개성공단 조성	34,716	17,341	7,140	13,773
○ 개성공단 운영대출(유자)	17,411	8,282	2,027	6,626
○ 개성공단 기반조성	17,350	9,059	5,113	7,147

자료: 통일부

1)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가) 경제교류협력보험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대북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에는 보험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 계획액 42억 7,500만원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3년도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4,275	-	4,275	-	-	4,275	-	-

자료: 통일부

나) 경협기반(무상)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등 남북 당국 간 합의 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경협기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무상지원을 통해 남북의 경제적 격차와 통일비용을 줄이고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계획현액은 2,312억 6,600만원으로, 이 중 39억 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계획현액 대비 1.7%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4,200만원임.

< 2023년도 경협기반(무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231,266	-	231,266	3,908	3,242	224,116	1.7	1.7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사업에 32억 200만원,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에 4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사업 2,500만원,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사업에 2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경협기반(무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남북공유하천공동이용	18,026	18,026	-	18,026	-	-	18,026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3,486	3,486	-	3,486	3,202	-	284
·기타경제협력사업(비 공개)	161,548	161,548	-	161,548	-	-	161,548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43,810	43,810	-	43,810	410	-	43,400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311	311	-	311	25	-	286
·남북관리구역통행체계 개선	4,085	4,085	-	4,085	270	3,242	573
합 계	231,266	231,266	-	231,266	3,908	3,242	224,117

자료: 통일부

□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개선 사업 공사비 등 사고이월 관련 체계적
집행 관리 필요

내역사업인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사업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
구역 내 10년 이상 노후화된 CCTV 등 시설 및 장비 교체를 통하여 남북통
행 재개 시 출입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계획
액 40억 8,500만원 중 2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
으며 5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 · 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4,085	4,085	-	-	4,085	270	3,242	573	200

자료: 통일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시설·장비는 2011년에 설치된 이후로 10년 이
상 미교체 상태로 잦은 고장과 화질·성능의 부족으로 인해 통행 안전 관리
에 부족함이 있었음.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방부는 남북관리구역의 시설·장비에 대한 협의를
통해 운영은 국방부가 담당하고 설치는 통일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상호 역
할을 정리하고 CCTV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음.

<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개선 사업 개요 >

- 당초 사업기간 : '23.1.~'23.12.
- 총공사비 : 3,483백만원(△계약금액 3,190백만원)
- 사업내용 : CCTV 28개 교체, 전원·통신케이블 포설 5.7km, 통합관제시스템 2개소 구축 등
- 참여업체 : 시공·감리 9개 업체(감리1, 시공8)
 - * 서해지구 3개사(시공3), 동해지구 3개사(시공3), 동·서해지구 통합 3개사(감리1, 시공2)

자료: 통일부

<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개선 사업 일정 변경 내역 >

당초	변경
(2023. 2.) 사업계약 조달의뢰	(2023. 2.) 설계용역 조달의뢰
(2023. 6.) 사업계약 체결	(2023. 8.) 설계용역 완료
	(2023. 8.) 공사계약 조달의뢰
	(2023. 12.) 공사계약 체결
(2023. 7. ~ 10.) 본공사	(2023. 12. ~ 2024. 3.) 본공사

자료: 통일부

이 사업은 본래 2023년에 공사완료为目标였으나, 2023년 공사비 예산 34억 8,300만원 중 7백만원을 집행하고 31억 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바, 그 사유는 설계용역의 기술평가에 국방부가 참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도 조달청의 지역별·공사별 분리발주⁵⁹⁾ 요청에 따른 계약지연이 발생하였기 때문임⁶⁰⁾.

당초 계획은 전체 사업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일괄 조달계약 체결 후

⁵⁹⁾ 지역분리(서울, 강원), 공종분리(건축·전기·통신공사 등 6개 공종)

⁶⁰⁾ 보안성 검토(국방부 및 국정원) 지연(의뢰 7월 → 완료 11월)

공사 시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으나, 변경된 계획에서 공사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설계용역 계약과 공사용역 계약으로 나누어 시행해야 했고 국방부와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 지연까지 겹쳐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음.

한편,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에 통합상황실 설치와 5.7Km 구간의 전원·통신 케이블 포설 작업 등 공사비 필요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자산취득비로 일괄 편성한 결과, 공사비와 감리비 마련을 위해 자산취득비와 시설장비유지비를 대상으로 계획변경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음.

< 계획변경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목	내역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협의 변경* (‘23.10.12.) * 기재부승인	430-01 (자산취득비)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3,483	조달청 계약변경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재원 마련
	420-03 (공사비)		3,483	
	210-09 (시설장비유지비)		△70	
	430-04 (감리비)		70	
합 계			±3,553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예산 편성과 초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세부내용과 절차에 대한 이해와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사고이월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통일부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세부절차의 혼선과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경협기반(융자)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사업의 공공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선사업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남북한간 경제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교류협력기반 조성에 기여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에는 계획액 1,800억 2,500만원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3년도 경협기반(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180,025	-	180,025	-	-	180,025	-	-

자료: 통일부

라)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은 해외 수출입 및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 위험도가 높고 일반 금융기관의 지원이 취약한 북측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에는 경제교류협력 자금대출 신규 대출수요 미발생에 따라 계획액 100억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3년도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10,000	-	10,000	-	-	10,000	-	-

자료: 통일부

마) DMZ 평화적 이용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은 DMZ 평화적이용에 대한 실현을 위해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남북공동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현액은 120억 2,700만원임. 이 중 28억 2,800만원이 집행되고 91억 4,1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계획현액 대비 23.5%임.

< 2023년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12,027	-	12,027	2,828	58	9,141	23.5	23.5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DMZ 국제포럼은 계획현액 3억원 전액 불용되었고,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계획현액 14억 6,100만원 중 10억 8,300만원 집행되고, 3억 2,000만원은 불용되었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계획현액 75억 1,700만원 전액 불용되었으며, 접경지역 공동위원회도 계획현액 4,000만원 전액 불용되었음.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 사업의 경우 계획현액 20억 7,900만원 중 13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4,800만원은 불용하였으며,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계획현액 6억 3,000만원 중 4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6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3년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DMZ 국제포럼	300	300	-	300	-	-	300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	1,461	1,461	-	1,461	1,083	58	320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7,517	7,517	-	7,517	-	-	7,517
·접경지역 공동위원회	40	40	-	40	-	-	40
·관문점 견학 통합 운영	2,079	2,079	-	2,079	1,331	-	748
·DMZ 평화통일문화 공간 조성	630	630	-	630	414	-	216
합 계	12,027	12,027	-	12,027	2,828	58	9,141

자료: 통일부

2) 개성공단 조성

‘개성공단 조성’ 단위사업은 ①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가동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건립·운영, ② 현장에서 공단을 관리·운영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비 지원, ③ 개성공단 기업·근로자 지원 등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및 개성공단 기반조성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3년도 개성공단 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 획		결 산	
		당 초	변 경		
□ 개성공단 조성	34,761	17,341	17,341	7,140	13,773
○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17,411	8,282	8,282	2,027	6,626
○ 개성공단 기반조성	17,350	9,059	9,059	5,113	7,147

자료: 통일부

가) 개성공단 운영대출(용자)

‘개성공단 운영대출(용자)’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통해 기반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기업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82억 8,200만원 중 20억 2,7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24.5%임.

< 2023년도 개성공단 운영대출(용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8,282	-	8,282	2,027	-	6,255	24.5	24.5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집행내역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대출금으로 20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상황 지속으로 공단 기반시설 지원 계획액 62억 2,40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3년도 개성공단 운영대출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개성공업지구지원 재단 지원(유상)	2,058	-	2,058	2,027	-	31
공단 기반시설 지원(용자)	6,224	-	6,224	-	-	6,224
합 계	8,282	-	8,282	2,027	-	6,255

자료: 통일부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부채 상환을 위한 장단기 방침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

세부사업인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사업’은 개성공업지구의 행정·지원을 위해 설립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 및 개성공업지구 기반시설 복구·운영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⁶¹⁾으로, 2023년 계획액 82억 8,200만원 중 20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62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8,282	8,282	-	-	8,282	2,027	-	6,255	6,626

자료: 통일부

동 재단은 2023년 12월말 기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중단 장기화 등으로 ‘개성공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재단의 기본임무와 역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판단됨⁶²⁾.

남북협력기금에서 재단에 운영자금으로 대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재단 운영비 등으로 937억원을 대출하였는데, 이 중 170억원(원금 149억원 및 이자 21억원)이 상환되어, 2023년 12월말 기준 미상

61)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개성공단 기반조성(3041-405) 사업에서 무상지원하고 있음.

62) 통일부는 2024.1.4. 동 재단의 해산 결정을 발표하고, 2024년 3월 동 재단의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하였음. 이후 청산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에 한정하여 사무를 집행하고 있음.

환 대출금은 788억원임. 그밖에 외화 대출도 \$1,577,050⁶³⁾ 남아있는 상황임.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대출	상환	대출 잔액
대출 원금 (2004~2023)	93,719	14,945	78,774
발생이자	10,966	2,046	8,920
합 계	104,685	16,991	87,694

자료: 통일부(2023.12말 기준, 외화 대출 잔액 \$1,577,050 별도 계상)

동 재단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매각·양도를 고려해야 하지만, 주요 자산이 북한 개성공단에 소재하고 있어 평가액 산정과 현금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주요자산 목록 및 소재지 >

시설명	자산 종류	용도	소재지
아파트형공장	토지이용권, 건물	공장, 공동주택시설	개성공업지구 1단계
기술교육센터	토지이용권, 건물	교육시설	개성공업지구 1단계
폐기물처리장	토지이용권, 건물	폐기물처리	개성공업지구 1단계
정배수장	토지이용권, 건물	용수공급시설	개성공업지구 1단계 외곽
폐수처리장	건물	폐수처리시설	개성공업지구 1단계
탁아소	토지이용권, 건물	보육시설	개성공업지구 1단계 외곽
단지내시설	건물	공원, 도로 등	개성공업지구 1단계
응급의료시설	건물	의료시설	개성공업지구 1단계
소방서	토지이용권, 건물	업무시설	개성공업지구 1단계
제2차폐기물처리시설	건물	폐기물처리	개성공업지구 1단계

63) 정부는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시 입주기업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입주기업들이 북측에 미납한 임금 및 세금 등 1,300만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재단이 관리기관에 재대출)하여 대납하였음. 개성공단 재가동 후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납부했어야 할 북측 임금 등을 상환하였으나 북측과 기업의 주장이 달라 발생한 차이금액 등으로 인해 일부 잔액(\$1,577,050)이 남아있는 상태임.

시설명	자산 종류	용도	소재지
출퇴근버스 주차장	토지이용권, 건물	자동차 관련 시설	개성공업지구 1단계

자료: 통일부(토지이용권 기한은 2054.4.12.까지임.)

이와 같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더욱이 상환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대출 잔액 788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동 재단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면밀한 방침 마련이 필요함. 예를 들어 부채의 경우 자산의 처분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자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동 재단의 부채 상환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남북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복잡한 사안임. 따라서 통일부는 부채 상환에 대한 장단기 방침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고정적인 이자 부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성공단 기반조성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은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가동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및 지원 시설을 건립·운영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피해 기업 경영정상화 및 근로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90억 5,900만원 중 51억 1,3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56.4%임.

< 2023년도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9,059	-	9,059	5,113	-	3,946	56.4	56.4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에 51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상황 지속으로 인해 공단기반 시설 건설 지원과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협의이행 현장지원의 경우 전액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지 원(무상)	5,219	-	5,219	5,113	-	106
· 공단 기반시설 건설 지원	3,740	-	3,740	-	-	3,740
· 공단 관련 당국간 협의이행 현장지원	100	-	100	-	-	100
합 계	9,059	-	9,059	5,113	-	3,946

자료: 통일부

마.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프로그램은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 및 사업관리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수출입은행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액 23억 5,600만원 중 22억 5,6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5.8%임.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프로그램 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 획	결 산	
1.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2,285	2,356	2,256	2,239
가. 기금관리비	56	72	42	65
나. 위탁수수료	2,170	2,182	2,182	2,101
다. 사업관리비	59	102	31	73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기금관리비가 계획액 7,200만원 대비 58.3%인 4,200만원 집행되었고, 위탁수수료는 21억 8,200만원, 사업관리비는 계획액 1억 200만원의 30.4%인 3,100만원이 집행되었음.

바. 기금간 거래

남북협력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함)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 상환 현황을 보면,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은 공자기금 예수원금 4,300억원, 예수이자 448억 7,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748억 7,300만원을 상환하였는데, 공자기금 예수원금 4,300억원은 공자기금을 차입하여 상환하였고, 예수이자 448억 7,300만원은 일반회계전입금(정부출연금)으로 상환하였음.

< 2023년도 기금간 거래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 획	결 산	
1. 기금간 거래	148,587	503,914	474,873	596,209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원금상환	105,500	430,000	430,000	520,000
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	43,087	73,914	44,873	76,209

자료: 통일부

공자기금 예수금은 1999년부터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임.

< 경수로사업 추진경과 및 청산현황 >

☐ 추진경과

- '94.10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서 체결
 - 1,000MWe급 경수로 2기(46억\$) 제공 등
- '95.12 :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2기 건설 계획
- '97. 8 : 부지정지공사 착공식(협상단계→시행단계 진입)
- '02.10 : 북한의 핵개발(고농축 우라늄 이용) 의혹 제기
 - 경수로 사업 속도조절 결정('03. 2)→ 사업중단(suspension) 결정('03.11)

○ '06. 5 : KEDO집행이사회, 사업종료 공식 결의

※ 사업공정률 : 34.5% ('03.11), 공사비 투입액 : 15.75억달러(한국 11.46억달러, 1.37조)

□ 청산현황

○ KEDO-한전간 사업종결협약(Termination Agreement '06.12) 체결

- KEDO 소유의 북한 외부 기자재를 한전에 양도하고 한전은 청산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

○ 한전의 청산 결과

- KEDO의 對 한전 미지급금(원자로 터빈 등 주기기 제작 투입 비용) : 약 6,100만달러

- 한전 하청업체 클레임 처리 : 약 2,600만달러

- 경수로 기자재 : 보관비용 약 6,440만달러, 수익 약 7,900만달러

○ 남은 기자재는 △한수원 예비품, △교육·연구·전시용, △해체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리

※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북미 제네바 합의('94.10)」 이후 한·미·일 3국은 '95.3.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합의

- 기능 및 역할: 1,000WMe급 원전 2기 대북 제공 및 재원 마련

1호기 완성까지 대체에너지 공급 및 기타 제네바합의 이행 조치 수행

- KEDO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와 실무기구인 '사무국'으로 구성

· 집행이사회: 한국(의장국), 미국, 일본, EU('97.9. 합류)

· 일반회원국: 뉴질랜드, 캐나다,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체코, 아르헨티나, 칠레, 우즈베키스탄 등 9개국

자료: 통일부

당초 정부는 대북 경수로사업의 사업실시기관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라 함)와의 차관공여협정(1999. 7. 2.)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경수로 계정을 설정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된 공공자금관리금 예수금을 차입하여 KEDO에 공사비 총 1조 3,744억원을 지출하였음.

그러나, 2006년 경수로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북한-KEDO 간 채권채무 관계의 청산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협력기금은 공자기금에 대해 매년 기일이 도래하는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통일부는 경수로사업 이후 2011년도까지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공사비 원금(1조 3,744억원)과 이자를 공자기금을 재차입⁶⁴⁾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였음.

이 과정에서 발생 이자가 원금이 되어⁶⁵⁾ 공자기금 차입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일부는 2012년부터 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중 매년 기일이 도래하는 예수원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재차입하여 상환하고, 매년 발생하는 공자기금예수금 이자는 일반회계전입금(정부출연금)을 통해 상환하고 있으며, 공자기금 차입금 규모는 2조 2,995⁶⁶⁾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차입 및 상환 현황 ('99~23년) >

(단위: 억원)

연 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차 입(①)		1,498	2,549	3,100	5,050	8,230	3,100	4,100	9,400	5,216	1,475	810	8,750	1,044
상 환	원금(②)	-	-	-	1,498	2,549	3,100	2,820	7,730	5,330	500	100	7,700	-
	이자	-	190	391	626	701	795	838	967	984	963	1,002	1,048	1,051
	소계	-	190	391	2,124	3,250	3,895	3,658	8,697	6,314	1,463	1,102	8,748	1,051
잔 액(①-②)		1,498	4,047	7,147	10,699	16,380	16,380	17,660	19,330	19,216	20,191	20,901	21,951	22,995

연 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 계
차 입(①)		4,000	5,300	2,286	905	2,070	7,650	2,784	2,030	5,486	2,370	1,055	4,300	94,558
상 환	원금(②)	4,000	5,300	2,286	905	2,070	7,650	2,784	2,030	5,486	2,370	1,055	4,300	71,563
	이자	1,126	1,054	932	931	912	820	636	580	570	461	431	449	18,458
	소계	5,126	6,354	3,218	1,836	2,982	8,470	3,420	2,610	6,056	2,831	1,486	4,749	90,021
잔 액(①-②)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자료: 통일부

64)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을 갚기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함.

65) 예를 들면, 1999년 12월 8일 예수금의 경우 원금 1,498억원과, 이자 626억원(이자율 8.66%) 총 2,124억원을 만기일인 2002년 12월 6일 상환하기 위해 공자기금에서 2,124억원을 다시 차입함에 따라 이자 626억원이 원금이 됨.

66) 2011년 이후 잔액 2조 2,995억원은 대출원금 1조 3,744억원과 원금화된 이자 9,251억원의 합임.

사. 여유자금 운용

‘여유자금 운용’ 프로그램은 남북협력기금 조성액 중 사업비·기금관리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자산운용 수익을 얻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액 840억원은 통화금융기관예치분 301억 8,600만원과 비통화금융기관예치분 538억 1,400만원의 합으로, 이 중 통화금융기관예치 집행액은 계획액 대비 0.5%인 1억 4,0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집행액은 계획액 대비 303.3%인 1,632억 2,100만원임.

< 2023년도 여유자금 운용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 산	2023년			2024년 계 획
		계 획		결 산	
		당 초	변 경		
여유자금 운용	162,545	84,000	84,000	163,361	113,431
통화금융기관예치	189	30,186	30,186	140	4,855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62,356	53,814	53,814	163,221	108,576

자료: 통일부

IV.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1. 재정상태 분석

<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3(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산합계(a)	3,568,824	3,591,094	△22,270	△0.6
1. 유동자산	239,252	233,596	5,656	2.4
2. 투자자산	2,808,732	2,799,176	9,556	0.3
3. 일반유형자산	405,263	449,728	△44,465	△9.9
4. 무형자산	16,014	11,188	4,826	43.1
5. 기타비유동자산	99,562	97,407	2,155	2.2
부채합계(b)	2,306,947	2,305,612	1,335	0.1
1. 유동부채	527,159	435,979	91,180	20.9
2. 장기차입부채	1,779,500	1,869,500	△90,000	△4.8
3. 장기충당부채	-	-	-	-
4. 기타비유동부채	288	134	154	114.9
순자산(a-b)	1,261,877	1,285,482	△23,605	△1.8

자료: 통일부

< 회계별 재정상태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자산	356,229	3,212,594	3,568,824
부채	1,103	2,305,844	2,306,947
순자산	355,126	906,750	1,261,877

자료: 통일부

가. 자 산

자산은 3조 5,688억원으로 일반회계 3,562억원, 남북협력기금 3조 2,12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0.6%인 223억원이 감소하였음.

세부적으로 남북협력기금 단기자산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유동자산이 57억원, 환율 상승에 따른 장기대여금 증가 등으로 인해 투자자산이 96억원, 신규 소프트웨어 취득으로 무형자산이 48억원, 장기미수채권 증가로 기타비유동자산이 22억원 증가 하였으나, 자산 감액 및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일반유형자산이 445억원 감소하였음.

일반회계의 자산은 3,562억원으로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자산(3,392억원)이 전체 자산의 95.2%를 차지함.

< 일반회계 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유동자산	753	미수채권, 단기임차보증금 등
2. 일반유형자산	339,163	
o 토지	130,640	통일교육원, 남북회담본부 청사 부지 등
o 건물	167,76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건물 등
o 구축물	14,777	동해선 공동야드 정거장시설 등
o 기계장치 등	18,181	사무용 기계 및 비품 등
o 건설중인유형자산	7,802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관련 건설중인 토지 및 건물
3. 무형자산	16,014	개발소프트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
4. 기타비유동자산	299	장기임차보증금 등
합 계	356,229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자산은 3조 2,126억원으로 투자자산(2조 8,087억원)이 전체 자산의 87.4%를 차지함.

< 남북협력기금 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유동자산	238,499	
o 현금및현금성자산	76,591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등
o 단기투자증권	25,849	지분증권
o 미수채권	20,678	미수이자수익, 미수보험금
o 단기대여금	115,381	단기융자금
2. 투자자산	2,808,732	장기지분증권, 장기융자금
3. 일반유형자산	66,099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토지, 건물 등
4. 기타비유동자산	99,263	장기미수대여금이자수익
합 계	3,212,594	

자료: 통일부

나. 부 채

부채는 2조 3,069억원으로 일반회계 11억원, 남북협력기금 2조 3,058억원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13억원이 증가됨.

일반회계의 부채는 11억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등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됨.

< 일반회계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유동부채	8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미지급금 ('24년 지급 예정),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2. 기타비유동부채	28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미지급금 ('25년 이후 지급 예정)
합 계	1,103	-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부채는 2조 3,058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로 구성됨.

< 남북협력기금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유동부채	526,344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23년 만기도래), 미지급이자
2. 장기차입부채	1,779,500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24년 이후 만기도래)
합 계	2,305,844	-

자료: 통일부

다. 순자산

순자산은 1조 2,6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236억 원 감소하였음.

2.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1. 프로그램순원가	174,511	112,205	62,306	55.5
2. 관리운영비	72,796	71,752	1,044	1.5
3. 비배분비용	46,125	43,358	2,767	6.4
4. 비배분수익	5,666	4,187	1,479	35.3
5. 재정운영순원가 (1+2+3-4)	287,766	223,127	64,639	29.0
6. 비교환수익 등	-	1,881	△1,881	△100.0
7. 재정운영결과(5-6)	287,766	221,246	66,520	30.1

자료: 통일부

재정운영결과는 일반회계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성되고, 남북협력기금은 차입금 이자비용(비배분 비용) 및 비배분수익 등으로 구성됨.

< 회계별 재정운영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1. 프로그램순원가	175,392	△881	174,511
2. 관리운영비	72,754	42	72,796
3. 비배분비용	11	46,114	46,125
4. 비배분수익	2,093	3,573	5,666
5. 재정운영순원가	246,064	41,702	287,766
6. 비교환수익 등	-	-	-
7. 재정운영결과	246,064	41,702	287,766

자료: 통일부

가.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는 국가의 정책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총원가(사업비)에서 프로그램관련수익을 차감한 금액임.

프로그램순원가는 1,74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5%인 623억원이 증가하였음.

프로그램별로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남북회담, 통일정책 등이 증가하고, 통일교육, 인도적 문제해결 등은 프로그램순원가가 감소하였음.

< 프로그램순원가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1. 프로그램순원가	174,511	112,205	62,306	55.5
o 통일정책	20,534	17,115	3,419	20.0
o 북한정세분석	6,395	3,963	2,432	61.4
o 남북사회문화교류	3,745	3,320	425	12.8
o 인도적 문제해결	7,338	8,739	△1,401	△16.0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75,867	73,570	2,297	3.1
o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1,623	△22,374	20,751	△92.7
o 남북회담	38,930	3,084	35,846	1162.3
o 통일교육	23,325	24,788	△1,463	△5.9

자료: 통일부

나.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의미함.

관리운영비는 7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인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등 기타경비 증가에 기인함.

다.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원가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용을 의미함.

비배분비용은 461억원으로 전년 대비 6.4%인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비용 및 자산처분손실 등 기타비용 증가에 기인함.

라.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수익을 의미함.

비배분수익은 57억원으로 전년 대비 35.3%인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 수익 증가에 기인함

3. 순자산변동 분석

< 순자산변동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1. 기초순자산	1,285,482	1,213,337	72,145	5.9
2. 재정운영결과	287,766	221,246	66,520	30.1
3.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63,709	300,758	△37,049	△12.3
4. 조정항목	451	△7,367	7,818	106.1
5. 기말순자산(1-2+3+4)	1,261,877	1,285,482	△23,605	△1.8

자료: 통일부

가.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 말 순자산 금액으로 1조 2,855억원임.

나.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2,878억원으로 일반회계 2,461억원 및 남북협력기금 417억원으로 구성되며, 재정운영결과로 인해 순자산은 감소하였음.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2,637억원으로 재원의 조달 2,660억원 및 재원의 이전 23억원으로 구성되며, 재원의 조달로 순자산이 증가하고 재원의 이전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음.

재원의 조달은 국고수입 및 인사혁신처 등이 통일부를 대신하여 부담한 공무원연금 국가부담금 등이며, 재원의 이전은 국고이전지출 등임.

라. 조정 항목

조정항목은 4.5억원으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변동 등으로 순자산이 증가함.

V.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조치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시 통일부는 18건의 주의, 2건의 시정과 29건의 제도개선 등 총 49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조치 결과 현황 >

조치 결과	구분			소계
	주의	시정	제도개선	
조치 완료	18	1	20	39
조치 중	-	1	9	10
소 계	18	2	29	49

* 시정요구유형의 중복(시정·주의 : 1건)은 시정에 반영함.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조치완료 39건 및 조치 중 10건이라는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1)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산 편성 제고 필요	○[지적사항]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용액 발생 관련, 일부 사유는 충분한 현황 분석을 통해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중복하여 발생함 - 이는 예산 편성 시 각 상황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라는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안의 국회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제도개선	○ 탈북민 국내 입국 추이에 대한 면밀한 예측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큰 폭의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다만,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21년과 '22년에 비해 교육생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등 정착금은 탈북민이 우리사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못했다고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 여건과 각 상황에서의 사업 집행 경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 사업이 2년 이상 동일한 사유로 불용·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도 고려 필요 - 보수적 예측으로 과소 편성 시, 탈북민 입국이 증가할 경우 탈북민의 안정적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24년 정부 예산은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23년 탈북민 입국인원 증가 추세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편성할 계획임 - ‘24년 하나원 예상 수료인원 500명(‘22년 770명, ‘550명)을 기준으로 정착금 예산은 ‘23년 대비 32.2억(209.8억→177.6억), 교육훈련 예산은 5.5억(128.5억→123억) 감액 편성함 ○ 조치중 : ‘24년 12월 31일	
(2)건물 대여료 및 기타관유물 대여료 관련 국유재산 사용허가 절차준수 필요	○[지적사항] 건물대여료 세입(수납액 6,100만원) 및 기타 관유물대여료 세입(수납액 5,100만원)과 관련하여, 도라산 물류센터의 기존 5년 사용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운 낙찰자가 선정되기 까지 계약기간 공백이 발생함(2021.9.20.~2022.3.31.). 이 기간 동안 기존 업체가 점유하여 건물 및 기타관유물을 사용허가에 대한 계약 사실이 없이 임시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상의 사용료 선납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주의	○ 도라산물류센터 계약기간 종료(‘16.9.20.~‘21.9.19.) 이후 신규업체 선정 절차가 계속 유찰(6차)되면서 기존 업체가 임시사용(‘21.9.20.~‘22.3.31.)하게 됨. - 이후 신규업체 선정·계약이 체결되면서 임시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수납하였음.(‘22.1월, ‘22.3월) ○ ‘22년 신규계약(‘22.4.1.~‘27.3.31.)후에는 매년 사용료 선납규정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법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국유재산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른 사용허가와 계약 관리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수할 것		령에 따라 국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겠음. ○ 조치완료일 : '22년 4월 1일	
(3)성과지표 중 통일·대북 정책 고객만족도 조사방법 개선 필요	○[지적사항] 통일부는 성과 지표 중 하나인 통일·대북 정책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2021년까지는 국내 정책고객 300여명과 국제회의 등 참석자 중 30명 내외의 외국인사를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를 조사함 - 2022년에 조사대상을 변경하여 당해연도에 신설한 20~30대 통통국민참여단 50명으로 한정해서 조사하여 표본 집단의 일관성을 상실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정책 만족도 조사가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제도개선	○ 조사의 신뢰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23년 '통일·대북 정책 고객만족도 조사'의 대상을 2030세대로 한정하지 않고, 2021년과 동일하게 정책 고객 전체로 집계하였음 ○ 조치 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4)정책연구 영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비공개 보고서 공개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 통일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사업정책연구비 예산(4억 1,800만원 집행)은 남북 통일·통합 관련 정책·법제 개발 및 해외사례 연구와 북핵·평화체제 조성 관련 연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주의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통일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는 등 사실상 일반경쟁계약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해왔음 - 또한, 당초 나라장터를 통한 일반경쟁계약을 추진했음에도 유찰 등으로 인해 결국 수의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총 41건의 정책연구과제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수행하여 국가계약법의 일반 경쟁계약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책연구보고서의 비공개 비율은 20%를 상회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정책연구과제의 과도한 수의 계약을 지양하고, 비공개 보고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주요 내용 공개와 부분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균형을 유지할 것		계약 전환이 이뤄진 사례도 있음 - 다만, 일반경쟁계약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음 ○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범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를 지속해 왔음 - 공개 비율 확대 노력의 결과는 수치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북·통일 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그 비율이 낮은 수준은 아님 * 공개 비율 : ’20년 56.2% → ’21년 75% → ’22년 76.9% - 앞으로도 국민들께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조치 완료일 : ’23년 12월 31일	
(5)예산 과소계상 에 따른 반복적 세목조정 지양	○[지적사항]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매체 및 광고 등을 활용하여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관련 소식을 국민에게 전파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인터넷 통일방송 출연자에 대한 부족한 출연료 지급을 위하여	주의	○ ’23년 통일부는 통일방송 콘텐츠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증액하는 등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23년도 예산은 시설장비 유지비를 감액(5,000만원)하고, 제작비인 일반수용비를 증액(5,000만원)하고, 편성하였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2021년 뿐만 아니라 2022년에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일반수용비로 2,7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연례적인 동일 목적의 세목 조정을 지양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것		○ 조치완료일 : ’22년 12월 24일	
(6)국회가 승인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지적사항] ‘뉴미디어 모니터링 위탁’사업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 유통을 감시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심사과정에서 2022년 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함. 통일부는 국회가 사업예산을 편성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함 * 사업내용변경: 북한 관련 가짜뉴스 유통감시 및 대응 → 통일·북한 관련 온라인 여론을 파악하여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관련 정책기획 및 소통의 참고자료로 활용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국회에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향후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현저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통해 집행할 것	주의	○ 해당 사업은 ‘뉴미디어 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북한 관련 가짜뉴스 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된 사업임. -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언론 통제 우려 등 지적을 고려하여 사업내용 확정, 앞으로는 국회 예산증액 사업 등의 경우, 국회 소통에 유의하며 사업을 추진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7)메타 버스 관련 사업예산 철저 관리 필요	○[지적사항] 뉴미디어 소통 강화사업으로 총 3개 맵의 메타버스 개발에 2,160만 원을 집행함. 개발된 메 타버스 맵은 ’22. 4~’23. 8월 현재까지 누적 14,000회, 월 평균 777회의 방문을 기 록하였음. ’23. 8.22. 기준 3개 맵별 최근 방문객 수는 각각 28명, 2명, 2명에 불과함. - 메타버스 예산사업은 투입 대비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현재 사업 담 당관 1명이 기초적인 사후 관리만 시행 중으로 메타 버스 플랫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어 통일부 는 ’23년 및 ’24년 예산 (안)에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단편성 사업으로 그쳤음 ○[시정요구사항]통일부는 단편성 홍보사업을 지양 하고 장기적인 뉴미디어 활용 홍보대책을 마련하며,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명확한 정의 및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제도개선	○ 메타버스 제페토 월드맵 사 업은 「2022년 통일부 정책 홍보 온라인 위탁」 사업 예산의 일부(6.8%, 21,600천원)로 추진. - DMZ 관련 3개의 메타버스 월드맵을 제작하였으며, 해당 월드맵 모두는 ’네이버 제페토’ 메인 페이지의 ’인기 크리 에이터 맵’ 등에 등재된 바 있음 - 다만,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 드는 경향에 따라, ’23년도 에는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지 않음 ○ 장기적인 시각에서 뉴미디어 활용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필요 할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 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9일	조치완료
(8)통일+ 센터 관련 연구용역의 체계적인 수행 필요	○[지적사항] 통일+센터 설치 관련 연구용역 사업(2억 9,0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수행한 표준조 례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실제 통일+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제도개선	○ 통일부는 통일+센터 설치 관련 연구용역 사업 결과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여, 2023년 하반기 이후 개관 예정인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조치함. - 센터별 개관(예정) 일정 : △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 이를 위해 연구용역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 단체의 실제 운영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통일+센터 설치 관련 연구용역 사업 결과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할 것		호남 ’23.9. △강원 ’24.10. △경기 ’25.6. △충청 ’25.9. ○ 조치완료일 : ’23년 8월 31일	
(9)재외동포 통일문화 지원예산 집행 비목 부적절	○[지적사항]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 사업 내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 지원사업(1억 2천만원 집행)은 국외 재외동포 관련 단체 등의 통일문화 행사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반수용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기타 소규모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및 회의참석사례금 등 각종 수수료를 위한 비목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해외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다른 단체에 행사 진행 등을 맡기는 경우에는 민간 경상보조 또는 일반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	주의	○ 2023년 재외동포 통일문화 지원 사업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여 추진함. ○ 조치완료일 : ’22년 12월 23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10)북한· 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지원 사업의 책임성 강화 필요	○[지적사항]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 지원 사업(1억 9,800만원이 집행)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훈령으로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자격 포기, 상실 및 기간연장 등 중요사항의 결정을 수탁 업체에 위임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보다 책임있게 결정하는 방향으로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 시작 3개월 경과 후 펠로우십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에 기존에 받은 지원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지원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참가자 선발, 상실 및 기간 연장 등 참가자의 중요 이익과 관련한 사항의 결정 절차와 중도 포기시 지원금 반납규정을 보완할 것	제도개선	○ 훈령 개정 추진 중 - 펠로우십 참가자 선발, 상실 및 기간연장 등 참가자의 중요 이익과 관련한 사항의 결정 절차, 중도 포기시 지원금 반납규정 보완 ※ 펠로우십 참여 계약서에 중도 포기시 지원금 반납 명확하게 적시(2024.1.31.) ○ 조치예정일 : '24년 6월 30일	조치중
(11)예산 비목의 목적 벗어난 예산집행 지양	○[지적사항] 동 사업은 북한 이탈주민과 1:1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데, 탈북민 수가 감소함(2019년 1,047명→2022년 67명)에 따라 2022년에는 조사 비중을 줄이고, 통계자료의 연구·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 - 동 사업은 일반연구비	제도개선	○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은 2024년 폐지됨.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260-01)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통계자료 연구·분석 및 북한사회 테마별 분석 등의 연구는 정책연구비(260-02)에 해당하므로 예산비목의 목적을 벗어난 예산집행임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자료수집과 자료에 대한 연구·분석을 각각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12)남북 피해자문 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지적사항]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2억 3,500만원 집행)은 전후남북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복지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2021년도에는 예산액 4억 6,000만원 중 3억 400만원을 집행(집행률 66.1%)하였고, 2022년도에는 예산액 4억 6,000만원 중 2억 3,500만원을 집행(집행률 51.1%)하여 과소집행으로 인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의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23년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 집행률은 96.3%로 '22년 (51.1%)에 비해 집행률을 대폭 제고하였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1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유물 구매 및 전시 주제 선정 개선 필요	○[지적사항]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유물 구매 사업(97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구매 유물의 선정에는 상설전시와 매년 새롭게 기획하는 특별 전시 주제가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구매 유물 중에는 시대가 맞지 않거나 일상생활 등 문화 일반에 관련되어 그 성격이 전시납북자 보다 전쟁·통일 일반에 관련되는 사례들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유물 구매 및 전시 주제 선정에 있어서 기념관 설립 취지에 따라 전시납북자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	제도개선	○ ’23년 유물구매 시 납북자 및 전쟁참상 등 인권 관련 유물 250여점 중점 구입함 * ’23년 구매 유물 : 납북자 △「박열평전-투혼의 별은 살아있다」 △신정언(야담가)의 저서 「사비수」 △최영수의 만화 ‘전역망 일대기’의 예고 기사가 수록된 신문 (1933.10.3.자 동아일보) 등 ○ 조치완료일 : ’23년 5월 31일	조치완료
(14)남북통합문화센터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지적사항] ‘통합문화 콘텐츠 창작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창작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에 총 15건의 공연·전시 등을 지원함 - 총 15건의 공연·전시 등이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발표되는 등 센터가 가진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북한이탈주민 창작자들이 개발한 콘텐츠가 센터에서 공연 또는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센터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 ’22년도 결산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23년도 ‘통합문화 콘텐츠 창작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 16건의 작품 중 5건을 센터에서 공연·전시하였음. ○ 센터에서 지원한 창작 콘텐츠의 공연·전시가 센터가 아닌 장소에서 발표된 이유는 센터의 △접근성(강서구 마곡 소재) △시설규모(공연장·전시공간) 등에 제약이 있기 때문임. - 센터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1층 강당은 공연장이 아닌 소규모 강당(좌석 105석)으로 설계되어 있음. - 전시공간(특별전시관, 약 15평 규모)의 경우, 전문작가들은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전시공간도 작품의 일부로 인식하고, 독립된 전시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지속적인 리모델링 등을 통해 향후에는 보다 많은 작품들이 센터에서 공연·전시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15)민간 공모 사업에 국가보조금에 준하는 관리 필요	○[지적사항] 재단은 통일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남북주민의 소통 및 화합 등을 위한 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에 총 22개 단체를 선정하여 총 3억 6,600만원을 지원함. - 출연금을 지원받아 민간 공모사업을 진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민간 재정지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약화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출연금을 받아 재단이 추진하는 민간 공모사업에 대하여 국고 보조금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도개선	○ 국회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여 2023년부터 재단의 민간 공모 사업은 국고보조금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음 - (선발) 기존 개별심사 방식을 1차 신청자격 검증 → 2차 심사위원 개별심사 (내·외부 전문가 6~8명) → 3차 심사위원회 심의로 대폭 강화하였음 - (정산)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과오 집행액과 이자 및 포인트 등을 환수 조치 - (관리) 정기적으로 사무검사와 회계감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단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음 ○ 조치예정일 : ’24년 3월 31일	조치완료
(16)취업연계 직업훈련사업의	○[지적사항]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은 취업의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연계 직업훈련’ 사업을	제도개선	○ 직업훈련사업의 수료율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2024년부터는 취업처가 확보된 기업(기관)중심의 기업연계형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성과제고	실시하고 있음 취업연계 직업훈련사업의 교육인원(84명) 대비 수료인원(67명) 비율은 79.7%이고,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38명) 비율은 56.7%에 불과함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취업연계 직업훈련사업의 수료율 및 취업률 등의 사업성과를 제고할 것		훈련과정을 단기연수사업(유형2)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단기연수사업: 미취업 북한 이탈주민에게 취업현장 연수를 통해 기술 습득 및 직업 적응 능력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 기업주에게는 예비 고용 후 검증된 인재 채용의 기회 제공 - 유형1(직장체험형): 조건 충족 연수기업과 연수자에게 연수비 지급 - 유형2(기업연계형): 취업처가 확보된 기관에 교육비, 훈련수당 → 수료 후 취업 연계 (유형1과 동일하게 연수비 지급) ○ 조치완료일 : ’24년 12월 31일	
(17)경영 개선자금 사업의 신규 지원자 지원 강화	○ [지적사항] 재단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북한이탈주민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원자 비율을 살펴보면, 2회 이상 기지원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신규지원자에 대한 지원 비율은 2018년도 99.1%에서 2022년도 50.6%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경영개선자금사업에서 신규지원자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2024년부터는 신규 지원자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심사 시 신규와 기존 신청자를 분리하여 선정하고 있음 ○ 또한 신규지원자 지원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에 한하여 기존지원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4년 3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18)자립· 자활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지적사항] 재단은 북한 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자활 사업단을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22년 현재 운영되는 4개 자활사업단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참여율은 모두 40% 미만으로 당초 목표로 한 6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자활사업단의 북한이탈주민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지원사업을 다른 북한이탈주민 소득지원 사업과 통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사업단 참여는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모집되어야 하나, 최근 입국자 감소로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탈북민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재단은 기존 사업방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자립·자활 지원 사업을 탈북민 고용사업체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기업을 모집·선정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3년 5월 31일	조치완료
(19)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비목 계상 필요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제2하나원 교육훈련’사업은 힐링프로그램 참여인원에 구호 및 교정비(320-06)를 집행함. - 힐링프로그램은 하나원을 퇴소하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급식비용을 급식비(210-04)가 아닌 구호 및 교정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함 * 통일부는 2023년 예산부터 힐링프로그램에	제도개선	○ ’23년 예산부터 『힐링프로그램의』 식대와 간식비를 급식비(210-04) 목으로 조정·편성하여 운영 중임 ○ 조치완료일 : ’22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식대를 구호 및 교정비(320-06)목이 아닌 급식비(210-04)목으로 편성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철저한 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비목을 계상할 것			
(20)DMZ 평화의 길 걷기 체험 사업 개편 필요	○[지적사항] DMZ 평화의 길 활성화 사업 중 평화의 길 걷기 체험사업(3억원 집행)은 12박13일로 진행되는 횡단코스 3회와 경기구간과 강원구간을 걷는 3박4일 코스 등 총 5회의 사업에 251명이 참여함 - 사업평가에 따르면 DMZ 평화의 길은 관계기관과 출입절차 협의를 거쳐야만 방문이 가능한 점, 장·단기간의 숙박일정으로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참여가 어려운 점,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평화의 길 걷기체험 사업을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방침임. - ’24년 예산이 60백만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으나, 시정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4년 4월 22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21)특정 세목의 연례적 조정 집행 지양 필요	○[지적사항]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 경비 사업의 시설장비유지 보수비(1억 3,100만원 집행)와 관련하여,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성격의 비용임에도 최근 3년간 매년 증액 조정을 통해 초과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시설장비유지보수비 필요 금액을 면밀하게 산정 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예산조정을 최소화 할 것	제도개선	○ 국립통일교육원은 ’91년 건립 이후 시설 노후화로 최근 3년간 시설 개보수 공사가 많았으나, ’23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더 이상 세목조정을 하지 않았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22)일반 용역비의 과도한 조정 및 편성목적과 다른 신규사업 추진 지양	○[지적사항] 통일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43억 5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세목조정을 통해 일반수용비 등을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편성된 일반용역비 중 일부 금액을 신규사업을 위해 집행하는 등 일반용역비에 대한 예산 조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일반 용역비의 과도한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	주의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에 일반용역비를 증액하는 등 ’24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부내역을 조정하였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23)메타 버스 관련 사업 중복 방지 및 평가지표	○[지적사항]통일교육 자료 개발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개발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내통일기반 조성 세부사업(1031-301)	제도개선	○ ’24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 미추진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마련 필요	중 뉴미디어 소통 강화(3억 8,200만원)의 일환으로 편성된 메타버스 사업과 유사함 - 또한,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명확한 평가 지표가 부재하며, 이용객 수뿐만 아니라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마련 필요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각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명확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등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			
(24)대학생 통일 특강 및 강좌 수강생 확보 위해 차등화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지적사항] 통일교육원 대학생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6억 8,400만원 집행)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형식과 1학기 동안의 학점 과정인 통일 강좌로 나눠 지원하는 사업임 - 일부 특강의 특강 횟수가 다름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거나, 일부 강좌의 경우 수강생의 수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이 균등하게 책정되어 학생 수 확보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통일 특강 및 강좌의 경우에	제도개선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4년 사업부터 개선 시행하고 있음 - 대학생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사업 참여대학에 수강생 최저 인원(20명)을 고지하고, 실적 미달 학교는 다음 학기 참여여부 평가 시 감점 적용 - 참여대학 모집 공고 시 모집 최저인원에 미달할 경우 총점에서 1점을 감점한다고 명시 ○ 조치완료일 : ’23월 12월 19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수강 학생 수의 최저한도를 두는 등 차등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25)일반회계전입금 집행시 기금집행 실적에 따른 전입규모 조정 필요	○[지적사항] 남북협력기금 수입 중 일반회계전입금(계획액 1,000억원)의 주요 용도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이고, 잔여액은 사업비로 충당됨 - 최근 남북협력사업의 부진으로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은 430억원 집행(집행률 47.3%)되었고, 기금 전체 사업비의 경우 779억원(집행률 6.1%)집행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전입금은 계획액 전액(1,000억원)이 수납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일반회계전입금 수납규모를 공자기금 예수이자 및 사업비 집행 규모에 상응하여 수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	제도개선	○ 대북 경수로사업 관련 공자기금 연간 이자 상환액과 남북관계 상황 변화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전입금 유지 필요 - 공자기금 이자상환과 사업비 충당 감안 시, 연평균 1,416억원(’18년~’22년)이 집행되고 있는 바, 일반회계전입금 1,000억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전입금’의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25년 적정규모 예산편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25년 예산편성 완료시까지)	조치중
(26)내역사업 변경 집행시 기금운용 계획변경 절차 거칠 필요	○[지적사항]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28억 8,8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피복비·사업추진비 등에 대하여 내역사업간 조정 절차 없이 혼용하여 집행하고 있음 -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의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3년 내역사업간 조정 절차 없이 혼용하여 집행된 내역은 반납 조치 하였음. - 향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1월 30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법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따라야 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기금의 내역사업 변경 집행 시 기금운용계획변 경절차를 거칠 것			
(27)이산 가족 상봉·기록 사업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개발 등 개편 방안 마련할 필요	○[지적사항] 2022년도 이산 가족교류지원 사업 계획액 202억 3,000만원 중 10억 2,200만원이 집행되고(집 행률 5.1%) 192억 800만 원이 불용(불용률 94.9%) 되었음 -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통일부가 수 립한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 적인 이산가족 상봉 정책이 필요함 - 과도한 불용 예산을 활용 하여 기존의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 검사 등 기록사업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과 기록사업을 강화 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 개편 노력을 강화할 것	제도개선	○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 검사 사업 적극 추진 - 이산가족 통합시스템 내 정보오류 대상자 등 정보 현행화 추진 중 ○ ’23.6.~11. 처음으로 해외 이 산가족 실태조사 실시(북미지 역) ○ 이산가족 생애기록 등의 체 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산가족법 개정, ’24.2.6.) ○ ’24년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에 따른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조기((기존) 5년 → (변경) 3년으로 개편)) 실시 예정 (’24년 하반기) ○ 이산가족 생애기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 이산가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신규사업 추진 중(’25회계 년도 기금 반영 추진)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28)인도 지원·협력 체계구축 신규사업 집행방식 부적절	○[지적사항] 민생협력지원의 인도지원·협력 체계구축·지원사업(8억 5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 남북 및 국제사회 대북협력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사업(1억원 집행)을 수행함 - 동 사업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으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온라인 웹페이지 구축 등의 신규사업을 계획변경절차 없이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회계연도 중 신규사업 추진 시 적절한 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	주의	○ 당초 남북 및 국제사회 간 인도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통지원을 위해 편성된 목적과 취지를 감안,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당시 코로나19로 국제사회 대면소통이 제약된 상황도 고려함 - 향후 사업성격을 보다 엄밀히 판단하여, 사업목적 및 수행 방식과 부합하는 형식으로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 2023년부터 민간단체의 남북 국제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사업 정상화 ○ 조치완료일 : '23년 1월 31일	조치완료
(29)화살머 리고지 평화기념 관 건립 여건 미충족에 따른 전액 불용 부적절	○[지적사항]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사업(12억원 전액 불용)은 사업주체인 철원군의 사업중단 통보로 설계비 예산 12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철원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타당성 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고(2022.5.6), 기념관 건립 후 관리·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중단을 결정함(2022.6.29) - 통일부는 사업의 사전절차	주의	○ 신규사업 추진 시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추진 여건을 확인한 후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공립박물관 타당성 평가 전에 사업비를 편성함에 따라 기금계획의 비효율적인 편성·집행을 초래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보조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여건을 확인한 후 기금계획에 반영할 것			
(30)DMZ 평화통일 문화 공간 조성·운영 사업 유지여부 검토 필요	○[지적사항] DMZ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운영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Uni마루 등을 활용한 전시 사업이 용역발주 유찰로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계획현액 27억 3,300만원 중 1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4.17%) 26억 1,900만원을 불용함 - 동 사업은 2022년도 사업 집행률 저조, 2023년 예산의 축소(6억 3,000만원) 및 방문객의 접근이 어려운 문화공간의 지리적 위치 등으로 사업 목적의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운영 사업의 유지여부 또는 개편을 검토할 것	주의	○ DMZ 평화통일문화공간은 지리적 특성·역사성·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남북출입사무소 상설 역사관으로 개편·유지하되, ’22년 예산집행부진 등을 감안하여 ’24년도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 (남북출입사무소 상설 역사관) 출입관련 사진, 문서, 영상 등 250점 상설 전시(’23.11.21. 개관) ○ ’24년에는 역사관 운영 관련, 주변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31)통일+센터 설치사업 일정지연 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히 할 필요	○[지적사항]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38억 1,1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강원·충청·경기 지역의 센터 설립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전년도 이월액, 사업 공정을 및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였음 - 강원·충청·경기 통일+센터 신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각 지자체의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통일+센터 설치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며,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	주의	○ 통일부는 통일+센터 설치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며,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함 - 현재, 강원센터는 국고보조금 전체 예산(32.5억) 집행완료함 - 경기센터는 우선시공분 착공(1.29.)을 하였고 12월 준공 예정으로 올해 국고보조금 전체예산(40억) 집행 완료할 예정임 - 충청센터는 지속되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가 증가되어 추가로 도비를 증액(37.4억) 하여 8월 착공 예정으로 국고보조금 전체 예산(40억)을 집행 완료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4년 4월 5일	조치완료
(32)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효율화 필요	○[지적사항] 동 사업은 북한 경제·주민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함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감소에 따라 설문조사 모집단이 축소되었고, 수집된 정보의 대국민 공개가 미흡함	제도개선	○ 동 사업은 ’24년에 폐지되었음 - ’23년 사업의 결과물인 공개보고서에 대한 대내외 홍보는 브리핑 및 관련 강연 등을 통해 2024년 연중 진행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18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설문조사를 위한 북한이탈 주민 인원의 감소에 따른 예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튜브 영상 등 심층정보 수집방안의 다각화를 추진하며, 북한 실상 알리기 차원의 실태보고서 발간 시 대내외 홍보를 병행할 것			
(33)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	○[지적사항] 동 사업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구분하고 각각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추진함. 1단계 사업내용은 기본 인프라 구축 등이고, 2단계 사업내용은 기구축한 인프라 확장, 빅데이터화 확대 등임 - 1단계와 2단계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업체가 2개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계부처들과 동일한 협의절차 반복, 각각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소요기간 등으로 사업지연을 초래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조사를 기반으로 사전에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제도개선	○ 동 사업의 경우 최신 기술 적용 및 이에 따른 사업 방향 설정 등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2개년(1·2차)으로 나누어 추진하여 성공적 완료하였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19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4)체계적 사업관리를 통한 사업지연 방지	○[지적사항] 통일정보자료 센터는 북한전문도서관 기능의 자료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예산현액 32억 4,000만원 중 27억 7,400만원을 집행함 - 동 사업은 2022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초 착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22년 9월에 설계사업자가 선정되어 2023년 3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등 사업 지연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2023년 내 통일정보자료 센터 건립 사업의 공사착수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단계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 설계 착수 전 공공건축계획 사전검토(국토부 산하기관), 공공건축 기획심의(조달청), 고양시의 부지변경 요구 등으로 사업절차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었으나, - 이후 고양시와 부지변경 합의서를 체결(’24.1.12)하여 추가 지연을 막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12일	조치완료
(35)계약 이행 경과에 따른 선금지급 필요	○[지적사항] 2022년도 사업 설계비 예산액 12억 9,200만원 중 8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주의	○ 지적 이후 선금 지급 등 예산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유념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는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에 따르면,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통일부는 설계비 과업 수행기간이 2개월 미만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계약금의 70%를 선금으로 과다 지급함 ※ 설계용역 계약 후 2022년 11월 15일에 계약금액의 70%에 해당하는 7억 6,940만 원을 선금으로 집행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6)탈북민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원 역할 재정립 필요	○[지적사항] 북한이탈주민이 급감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2300) 사업예산 948억원 중 77.5%인 734억원만 집행되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8년 1,137명, ’19년 1,047명, ’20년 229명, ’21년 63명, ’22년 67명, ’23년(6월) 99명	제도개선	○ 최근 코로나19 종료에 따라 ’21년과 ’22년에 비해 교육생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정착금은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4년 정부 예산은 ’23년 탈북민 입국인원 증가 추세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 통일부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시사한 바 있으나, 교육생과 기 배출된 탈북민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하나원의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제2하나원에서 입국 후 처음 받는 교육인 기초교육의 교육생 수가 2022년 24명에 불과하여 교육생보다 직원이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2022년 제2하나원 직원 수: 49명, 전체 교육생 수: 431명(기초교육: 24명, 직무교육: 189명, 탈북민 힐링 프로그램: 175명, 탈북민 인식개선 교육: 43명) ※ 안성 하나원은 여성, 제2하나원은 남성을 교육생으로 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하나원이 탈북민의 초기 정착지원 역할과 함께 취업교육이나 직업역량 강화사업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늘리는 형태로 개편할 것 - 통일부는 제2하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24년 하나원 예상 수료인원 500명(’22년 770명, ’23년 550명)을 기준으로 정착금 예산은 ’23년 대비 22.2억원(209.8억원→187.6억원), 교육훈련 예산은 5.5억원(128.5억원→123.0억원) 감액 편성 - ’23년 입국인원은 196명으로 전년 동기(67명)대비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24년에도 같은 흐름이 유지될 경우 탈북민 입국인원은 500명으로 예상됨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37)남북 통합 문화센터 민간위탁 의 법령상 근거 마련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남북 통합문화센터 운영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참여기회를 확산하고, 남북 주민간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동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함 - 「정부조직법」제6조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데,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사업은 법령상 민간위탁의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감사원의 2021년도 정기감사(2022. 2.)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	제도개선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3.12.8. 국회 의결, ’24.1.9. 공포) 하였음 -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 민간위탁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개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시행령 시행일 ’24.7.8. 예정) ○ 조치 예정일 : ’24년 7월 8일	조치중
(38)지역 협의회 회의 활성화 및 북한이탈 주민 위원 참여제고 방안 마련	○[지적사항]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착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실행행액은 4억 200만원임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도개선	○ (지역협의회 활성화) 지역협의회 운영 매뉴얼(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회의 개최 시 논의 안건, 회의 시나리오 예시 등을 추가 반영하여 협의회 활성화를 제고 - 하나센터 대상으로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생계비 지원, 취업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에서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37개 지역협의회 중 약 19%가 규정에 따른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 ※ 2022년 현재 137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 1,528명 중 북한이탈주민 위원은 32명으로 2.1%에 불과함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 회의를 활성화하고, 북한이탈주민 위원의 참여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지원, 신변보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등)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지자체에 공유함으로써 지역협의회 개최 시 정착지원 현장의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 ○ (북한이탈주민 위원 참여) 북한이탈주민 신규 위원 위촉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인근 지자체 또는 광역 시도에서 위촉한 북한이탈주민 위원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청취를 하는 방안을 광역지자체와 협의(‘24.2.6., 지역협의회 워크숍) ※ (참고) ‘23년말 기준으로 138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 1,547명 중 북한이탈주민 위원은 68명(4.4%)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 → 북한이탈주민 위원 참여 등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매뉴얼’ 배포(‘24.3.27.) ○ 조치완료 : ‘24년 3월 27일	
(39)재단 결산잉여금의 차년도 수입 반영 필요	○ [지적사항] 2022년 결산잉여금 28억 600만원 중 4억 2,400만원만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23억 8,100만원은 2024년도로 이월되는 등 3년 평균 15억 4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차차기로 이월되고 있음	제도개선	○ 향후 출연금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예산관리를 강화하여 결산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결산잉여금의 차년도 수입 반영·사용은 그동안의 운용기준과 달라지는 점을 고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적사항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 결산잉여금이 차차년도로 이월될 경우 결산잉여금 발생 시점부터 수입계상 시점까지 여유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차차년도로 이월되는 재단의 결산잉여금을 차년도 수입으로 즉시 반영하고, 재단 출연금을 감액 조정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음. * 정부지침에 ‘결산잉여금을 미리 예측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	
(40)계약 업무 추진 시 면밀한 사업준비 필요	○[지적사항] 통일부는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통해 하나원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특수경비용역 계약의 기초가격 산정을 위한 시중노임 단가를 확인하지 않아 조달요청이 반려되는 등 2022년 용역 계약을 제때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기존 용역 계약업체와 수의계약(2개월)을 체결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향후 계약업무 추진 시 사전절차 및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업준비를 면밀히 할 것	주의	○ 향후 계약업무 추진 시 사전절차 및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업준비를 면밀히 추진하겠음 ○ 조치완료일 : ’22년 12월 19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41)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전검토 필요	○[지적사항] ‘제2하나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공사비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불용하였음.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사비에서 실시설계비 3,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함 - ‘제2하나원 리모델링 사업’예산에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를 미편성하여 세목조정을 통해 사업을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임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	주의	○ 향후 예산편성 시 세심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미반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8월 31일	조치완료
(42)연구 용역 추진시 수의계약 최소화 필요	○[지적사항] 민생협력지원의 보건의료협력사업(2억원 집행)은 보건의료협력 관련 연구용역사업 5건을 모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집행함 - 연구용역 수의계약은 연구자를 기관 임의로 선정하게 되어 경쟁을 통한 연구수행자 선정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주의	○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 풀이 제한적이며, 질병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향후 국가계약법, 용역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계약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겠음. - 또한, 연구자 선정 시 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특정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연구수탁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연구용역비 집행 시 주의 계약을 최소화하고, 일반 경쟁계약으로 집행할 것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43)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지적사항] 경협기반(무상) 사업, 경제교류협력대출 (융자)사업, 개성공단 운영 대출(융자)사업, 개성공단 기반조성(융자)사업과 관련 하여, 회계연도 초인 2022년 2월 14일 기금운용계획변 경(총 574억원)을 통하여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 조치, 개성공단 운영중단 피해기업 지원사업을 신규 로 추진하였음 - 남북경협·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지원요구가 계속된 상황 으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소요로 보기 어렵고, 장기적인 피해 보상 계획 수립 및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반복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양 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주의) - 통일부는 경협기업, 개성 공단 입주기업 등에 대한 적정한 피해보상의 규모, 기준 등을 포함한 중	시정, 주의	○ 국회 공식요구, 코로나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 경협 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 하기 위해 긴급하게 지원 (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음. - ’23년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이 계획대로 예산 집행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장기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할 것(시정)			
(44)DMZ 평화적 이용 사업 면밀한 검토 필요	○[지적사항] DMZ 평화적 이용사업(116억 9,400만원 집행)은 DMZ 그린평화 지대화 실현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남북공동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DMZ 평화적 이용 및 접경지역 활성화, 국민 체감형 평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남북관계상황과 사업추진 지연으로 불용(176억 4,000만원)과 이월(교부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도 65억 1,400만원 이월)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통일부는 신규 예산 편성 전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주의	○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감액(전년대비 1,565백만원 감액)하여 북한과의 합의 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 △남북관계 경색, △DMZ 지역의 특수성(생태보호지역, 군사지역 등), △다기관(지자체, 국방부 등) 협의, △코로나, ASF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면밀히 살피고, 사업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관리해 나감으로써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45)북한 이탈 주민의 수 과다 예측에 따른 예산 불용 재발 방지	○[지적사항] 북한이탈주민 수가 급감하면서 2020년 이후 큰 폭의 예산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은 약 500명 수준의 북한이	제도개선	○ 최근 코로나19 종료에 따라 ’21년과 ’22년에 비해 교육생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정착금은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탈주민을 예측하여 책정하였으나 실제로는 67명이 입국하여 예측과 크게 어긋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를 보수적으로 예측하여 큰 폭의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24년 정부 예산은 ’23년 탈북민 입국인원 증가 추세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24년 하나원 예상 수료인원 500명(’22년 770명, ’23년 550명)을 기준으로 정착금 예산은 ’23년 대비 22.2억 원(209.8억 원→187.6억 원), 교육훈련 예산은 5.5억 원(128.5억 원→123.0억 원) 감액 편성 - ’23년 입국인원은 196명으로 전년 동기(67명)대비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24년에도 같은 흐름이 유지될 경우 탈북민 입국인원은 500명으로 예상됨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46)정책연구 구 용역 사업의 중복 개선 필요	○[지적사항] 통일부는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용역(R&D)’과 ‘통일정책추진’ 2개 세부사업에서 중복 집행하고 있어, ‘통일정책추진’의 연구용역 사업은 폐지가 필요함 - 2022년 통일부는 ‘정책연구용역(R&D)’ 사업에서 12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통일정책추진’ 사업의 ‘중장기 통일정책 관련 연구용역’으로 9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함	제도개선	○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정책추진 및 정책연구용역(R&D) 사업을 ’25년도 예산안에 개편하여 반영할 계획임. ○ 조치 예정일 : ’24년 12월 31일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 2022년 ‘통일정책추진’ 사업 중 장기 통일정책 관련 연구용역 목록(중장기 통일정책 관련 연 구용역 집행액: 3억 2,900만원) <table><tr><th>연번</th><th>연구용역명</th></tr><tr><td>1</td><td>북한 사회변동과 일상생활: 공장 과 도시의 변화를 중심으로</td></tr><tr><td>2</td><td>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미래 통일담론 연구</td></tr><tr><td>3</td><td>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주요 이슈 전망 및 한반도 시사점</td></tr><tr><td>4</td><td>남북산업협력의 친환경 모델 구축방안 연구</td></tr><tr><td>5</td><td>체제전환국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및 남북관계 시사점</td></tr><tr><td>6</td><td>북한 경제 분석을 위한 대체 데 이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td></tr><tr><td>7</td><td>사례연구를 통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방향 구체화</td></tr><tr><td>8</td><td>기능주의 대북 접근법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td></tr><tr><td>9</td><td>냉전시기 서독의 대소련 외교 정책 평가 및 시사점</td></tr></table> ※ 2022년 ‘정책연구용역(R&D)’ 사 업 연구용역 목록 (정책연구용역(R&D) 사업 연구 용역 집행액: 3억 4,800만원) <table><tr><th>연번</th><th>연구용역명</th></tr><tr><td>1</td><td><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타당 성 및 운영방안> 연구</td></tr><tr><td>2</td><td>「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협력 공감대 확산 방안 연구</td></tr><tr><td>3</td><td>안보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남북회담 의제 개발(비공개)</td></tr><tr><td>4</td><td>주요지표를 활용한 북한경제 평가</td></tr><tr><td>5</td><td>ICT 기반 남북 교류협력 플랫 폼 구축방안 연구(비공개)</td></tr><tr><td>6</td><td>북한자료(특수자료) 국민 접근 성 제고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비공개)</td></tr><tr><td>7</td><td>통일업무 성과 제고를 위한 개 선 방안 연구</td></tr><tr><td>8</td><td>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중국 대외전략 연구</td></tr><tr><td>9</td><td>남북협력기금 평가 및 발전방안</td></tr><tr><td>10</td><td>북한이탈주민의 통일사업장 장기근속 요인분석(비공개)</td></tr><tr><td>11</td><td>6.25전쟁 남북 관련 자료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체계화 및 관리방안 연구</td></tr><tr><td>12</td><td>조직진단을 통한 북한이탈주 민 정착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비공개)</td></tr></table>	연번	연구용역명	1	북한 사회변동과 일상생활: 공장 과 도시의 변화를 중심으로	2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미래 통일담론 연구	3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주요 이슈 전망 및 한반도 시사점	4	남북산업협력의 친환경 모델 구축방안 연구	5	체제전환국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및 남북관계 시사점	6	북한 경제 분석을 위한 대체 데 이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7	사례연구를 통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방향 구체화	8	기능주의 대북 접근법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9	냉전시기 서독의 대소련 외교 정책 평가 및 시사점	연번	연구용역명	1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타당 성 및 운영방안> 연구	2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협력 공감대 확산 방안 연구	3	안보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남북회담 의제 개발(비공개)	4	주요지표를 활용한 북한경제 평가	5	ICT 기반 남북 교류협력 플랫 폼 구축방안 연구(비공개)	6	북한자료(특수자료) 국민 접근 성 제고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비공개)	7	통일업무 성과 제고를 위한 개 선 방안 연구	8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중국 대외전략 연구	9	남북협력기금 평가 및 발전방안	10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사업장 장기근속 요인분석(비공개)	11	6.25전쟁 남북 관련 자료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체계화 및 관리방안 연구	12	조직진단을 통한 북한이탈주 민 정착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비공개)			
연번	연구용역명																																																	
1	북한 사회변동과 일상생활: 공장 과 도시의 변화를 중심으로																																																	
2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미래 통일담론 연구																																																	
3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주요 이슈 전망 및 한반도 시사점																																																	
4	남북산업협력의 친환경 모델 구축방안 연구																																																	
5	체제전환국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및 남북관계 시사점																																																	
6	북한 경제 분석을 위한 대체 데 이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7	사례연구를 통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방향 구체화																																																	
8	기능주의 대북 접근법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9	냉전시기 서독의 대소련 외교 정책 평가 및 시사점																																																	
연번	연구용역명																																																	
1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타당 성 및 운영방안> 연구																																																	
2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협력 공감대 확산 방안 연구																																																	
3	안보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남북회담 의제 개발(비공개)																																																	
4	주요지표를 활용한 북한경제 평가																																																	
5	ICT 기반 남북 교류협력 플랫 폼 구축방안 연구(비공개)																																																	
6	북한자료(특수자료) 국민 접근 성 제고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비공개)																																																	
7	통일업무 성과 제고를 위한 개 선 방안 연구																																																	
8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중국 대외전략 연구																																																	
9	남북협력기금 평가 및 발전방안																																																	
10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사업장 장기근속 요인분석(비공개)																																																	
11	6.25전쟁 남북 관련 자료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체계화 및 관리방안 연구																																																	
12	조직진단을 통한 북한이탈주 민 정착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비공개)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세부 사업 ‘정책연구용역(R&D) (7031-300)’으로 단일화 하여 추진할 것			
(47)민간 단체 지원방식 개선 필요	○[지적사항] 통일부는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3개의 민간단체에만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민족통일협의회는 ’82년(’01~’08년 제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03년, 통일교육협의회는 ’02년부터 관행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2) 1,420백만원 → (’23) 전년동 (민통 267, 민화협 630, 통일교육협의회 523)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할 것	제도개선	○ ’24년 예산은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공모 방식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음. - 쏘 민간단체 대상으로 공모 추진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1일	조치완료
(48)북한 인권재단 의 조속한 출범 필요	○[지적사항]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이 매년 전액 불용되고 있음 -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으나, 재단 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제도개선	○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의 추천을 받지 못하고 있음. * ’16~’23.8월,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총 12회 발송(가장 최근 ’23.8.30.)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자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또한 통일부장관 추천 재단 이사 2명 인선을 발표(’22.9.)한 바 있음. * ’22.9월, 통일부장관 추천 재단 이사 2명 인선 발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 NK 대표) ○ 정부는 국회와 보다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에서 재단 이사 추천 시 조속한 시일 내 재단을 출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 ’21~’24년, 북한인권재단 출범 관련 예산 4.75억원 편성(연내 출범 시 예비비 편성) - 재단 출범 전까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운영 활성화(△’23년 ’3.10.·4.13.·6.30.·9.22·11.21. 5회 개최 △’24년 3.12. 1회 개최, 2기 출범) △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24년 예산 18억원 편성, 19개 단체 지원 중) 추진 ○ 조치예정일 : ’24년 2월 이후 (재단이사 구성 완료시)	
(49)남북협력기금 운용 방식 개선 필요	○[지적사항] 2022년 1조 5,571억원으로 계획된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25.1%로 매우 저조하나, 2023년 계획액은 1조 8,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함 - ‘북한영유아 등 지원’예산은 매년 871억 3,400만원이	시정	○ [북한영유아 등 지원] 코로나 19에 따른 북중 국경 차단, 남한 지원거부 등 상황 지속 - 북중 국경개방 및 국제기구 직원들의 평양 복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인도주의 대북지원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4.30)
	편성되고 있으나, 집행률은 2022년 기준 2.7%에 불과함 ※ 집행률: ’18년 0%, ’19년 12.2%, ’20년 13.6%, ’21년 0.8%, ’22년 2.7% - ‘이산가족 영상편지’사업은 2005년 시작되어 2023년 현재까지 약 25,000편을 제작·보관하고 있으나, 북한으로 전달된 것은 2008년 단 1차례로 전달 편수도 20편에 불과함 ※ 영상편지 1건당 제작 단가는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매년 많게는 4억원, 적게는 2억 6,900만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음 -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은 2017년 이후 5년간 총 48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이 0원이며, 2022년 ‘DMZ 평화의 길’ 조성을 위한 예산 116억 9,200만원 중 54억 7,700만원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기계적·타성적으로 편성과 불용을 반복해 온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할 것		○ [이산가족 영상편지 사업] 2024년 영상편지 사업은 기존 사업방식(찾아가는 방식)과 시범 사업방식(개인 촬영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접근성 등 효율성 제고(’24.4. 현재 사업공고 중) ○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은 예산집행 부진 등을 감안하여 24년도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 ○ [DMZ평화의 길 사업]은 DMZ 지역의 특수성(안보상황 변화, 사업지역의 출입제한 등) 등으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 - 향후 DMZ 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 하겠음 ○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	

